

소득·자산·부채 결합분포 분석 및 정책적 함의 연구

2011. 12

성명재

서 언

우리 경제는 1990년대 말 외환 및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구조적으로 커다란 변혁을 맞이하였다. 대내적으로는 기업 및 금융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재무구조의 건전화와 금융기관의 부실 제거 및 합병 등을 추진하여 대형화·체질 강화 등 경제체질이 이전 기간과 확연히 구분되는 변화가 일어났다. 대외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대외개방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무한경쟁체제로 돌입하였다.

이와 같은 경제구조의 변혁은 경제위기 이후 현재까지 10년이 조금 넘는 짧은 기간 동안 우리의 생활환경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 특히 전방위적으로 경쟁이 격화되면서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들과 뒤처진 사람들 사이에 경제적 격차, 즉 소득분배격차가 빠르게 확대되었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결과로 평균수명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저출산 기조의 확산과 더불어 인구구조 또한 급격히 고령화되고 있다. 인구 고령화는 비경제 활동인구를 급속히 증가하면서 소득불평등도를 더욱 확대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1990년 말 이후 소득불평등도가 빠르게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소득 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부의 조세·재정정책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학계와 연구계를 막론하고 분배구조에 대한 현상분석과 추이분석, 분배 불평등도 확대에 대응한 정책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연구가 줄을 이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학술연구 및 정책연구의 바탕 위에서 분배구조 개선 및 빈곤문제 완화·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수립·집행되어 분배구조 개선에 크게 기여하였다. 다만 아쉬운 것은 분배구조와 정부정책의 효과성 분석 및 정책방향의 수립·점검 등을 위한 연구가 매우 많지만, 장기분배구조 및 정책효과에 대해서는 분석에 필요

한 정보가 충분하지 못하여 그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이에 한국조세연구원에서는 정책연구의 보다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2007년 준비 작업을 거쳐 '재정패널' 자료라는 명칭하에 일반 가계를 대상으로 소득·소비지출 구조 및 정부의 각종 조세·재정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한 정보를 담은 서베이 자료를 조사·생산하고 있다. 2011년 현재 2007~2009년 기간을 대상으로 3개 연도의 자료가 구축되어 정책연구를 위해 일반에게 제공되고 있다.

본 연구는 재정패널자료의 구축이라는 성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분배문제와 관련하여 장기 연구를 위해 수행되었다. 지금까지의 분배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 연간 단위의 소득·소비 및 세부담을 주대상으로 하였다면, 본 연구는 연단위뿐만 아니라 3년 단위의 소득·소비·자산 및 관련 세무와 재정지출의 부담·수취구조 분석과 정부정책의 재분배 효과, 생애주기 소득경로 분석을 통한 정책시사점 도출 등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차별화될 뿐만 아니라 정책적 시사점도 큰 것으로 판단된다. 아무쪼록 본 연구결과가 연구로만 끝나지 않고 정책적으로도 정책 수립·집행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본 보고서는 본원의 선임연구위원인 성명재 박사가 집필하여 완성하였다. 저자는 본 보고서를 수행함에 있어 자료정리·분석 등에 큰 도움을 준 본원의 박소희 연구원과 장정순 연구행정원께 감사를 표하고 있다. 아울러 보고서 중간보고 단계에서 연구방향을 잡는 데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충북대학교 임병인 교수님, 숭실대학교 김현숙 교수님, 기획재정부 김문건 사무관께 충심으로 감사하고 있다. 또한 보고서의 최종 심사단계에서 귀중한 조언을 해주신 익명의 두 분 심사자들과 원내세미나 과정에서 귀중한 말씀을 나눠주신 동료 박사님들께도 감사하고 있다.

본 보고서를 완성하여 성공적으로 출간하기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지면으로나마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분석내용은 저자의 개인적 신념과 의견에 기초한 것이며,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님에 유념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11년 12월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조원동

요약 및 정책시사점

1. 문제의 제기

본 연구는 재정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소득·자산계층 및 가구주 연령별로 소득·자산·부채의 분배구조에 대한 결합분포를 추정하고 관련 제세부담 비교 및 모의실험을 통해 조세정책적 함의 도출 및 관련 세제개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한다. 소득·자산·부채의 결합분포 추정을 통해 분배구조의 실상을 파악하고 자산·부채 분포구조 및 각종 관련 세목의 세부담 분포를 토대로 분배·재분배 효과를 살펴보면서 분배·재분배 구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조세정책적 관점에서 향후 세원분포의 구조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정책시사점과 대응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소득계층별 소득·소비·자산·부채·세부담 및 수혜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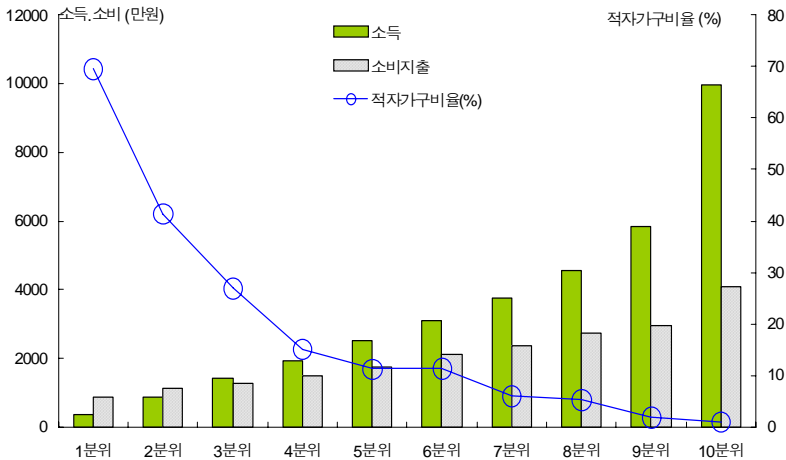
가. 결합분포 구조 및 소득·자산·부채의 변화

65세 이상의 노인 가구를 제외할 경우, 재정패널자료의 가구주 연령대별 가구 분포는 역U자 형태를 나타낸다. 이런 패턴은 2007~2009년을 통틀어 유사하다.

가구당 총소득(평균)은 2007년 3,307만원에서 2008~2009년에 각각 3,256만원과 3,427만원으로 소폭 감소하였다가 다시 소폭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소비지출은 2008년에는 소폭 증가하였다가 2009년에는 소폭(약 1%) 감소하였다.

2007~2009년 적자가구의 비중은 각각 15.4%, 22.1%, 19.0%로, 2008년에 크게 상승하였다가 이듬해 소폭 감소하였다. 적자가구의 비율은 저소득층일수록 높고, 고소득층일수록 작아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최하위 10% 계층인 소득1분위의 경우에는 적자가구의 비율이 63~76% 정도에 이른다. 중간소득층인 5~6분위의 경우 적자가구 비율은 6~15% 수준이고 최고소득층인 최상위 10%(소득10분위)에서도 약 1% 내외 수준이다. 최고소득층에서도 적자가구가 나타나는 이유는, 고가의 내구소비재(예: 승용자동차 등) 구입에 따라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에 의한 것으로 추측되며, 소득 부족에 의한 생계에 위협을 받는 상황과는 거리가 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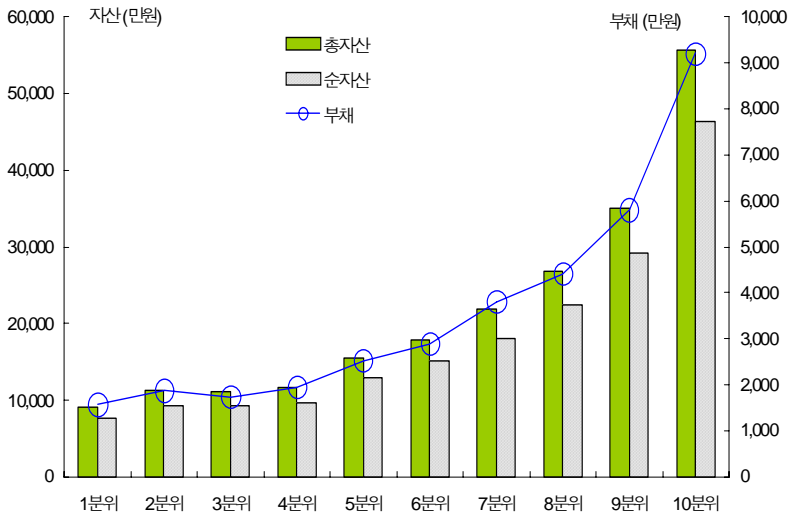
[그림 1] 소득·소비지출 및 적자가구 비율 분포
(2009년 재정패널, 횡단면기준)



총자산의 가구당 평균은 2007년 2억 1,084만원에서 2008년 2억 894만원으로 소폭 감소(-0.9%)하였다가 2009년 2억 1,561만원으로 다소 증가(3.2%)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부채는 2008년과 2009년 모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경우에는 증감률은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총자산의 경우와 동일한 방향으로 변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총자산과 부채는 소득계층별로 정(+)¹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도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규모가 증가하는 분포를 보인다.

[그림 2] 자산·부채 분포(2009년 재정패널, 횡단면기준)



흐름(flow)으로서의 소득과 스톡(stock)으로서의 자산 사이에는 정(+)¹의 상관관계가 있지만 분포구조는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총자산, 부채, 순자산 모두 공통적으로 저소득층에서의 점유비중이 소득점유비중보다 크다. 반면에 고소득층에서는 대체로 이와 반대되는 현상이 관찰된다. 저소득가구 중 상당수는 은퇴가구이다. 은퇴 등으로 인해 당해연도의 소득수준은 상당히 낮아 당해연도의 저소득분위에 속하더라도 그 이전 기간 동안 상당히 많은 자산을 축적한 가구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반면에 당해연도에 고소득가구라고 하더라도 연령이 낮고 노동시장에 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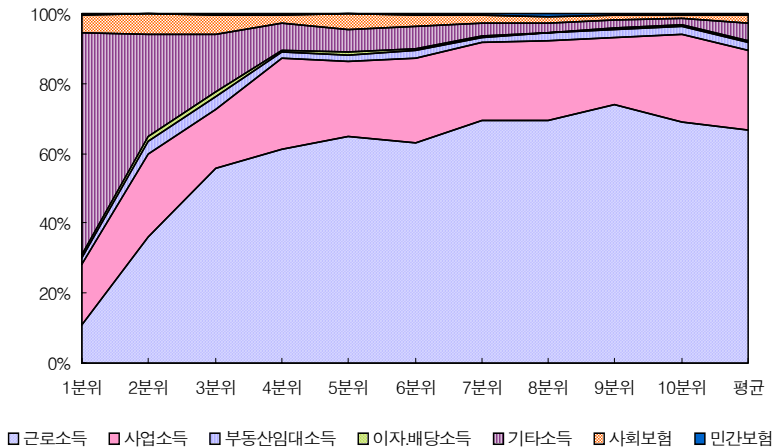
의 경우에는 자산규모가 매우 적은 가구도 상당수에 이른다. 바로 이런 연유로 인해 소득계층별 소득점유비중의 상대적 격차보다 자산이나 부채의 점유비중 상대격차가 더 작게 나타난다.

나. 소득, 자산, 세부담의 구성 분포: 횡단면 기준 분포

총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다만 소득계층별로는 소득구성패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1~2분위의 최저소득층에서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구성비가 낮은 반면 기타소득의 비중이 매우 높다. 평균적으로 총소득의 약 4분의 3을 차지하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구성비가 크게 증가하여 5분위 이상의 중·고소득분위에서는 근로소득의 구성비가 전체의 3분의 2를 상회할 정도로 구성비가 압도적으로 높다.

[그림 3] 소득분위별 소득구성항목별 비중 분포(2009년 재정패널, 횡단면기준)

(단위: %)



1~2분위에서는 근로소득의 비중이 매우 낮다. 이는 인적 구성상

이들 소득분위가 은퇴가구로 대변되는 노인가구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과 관련이 깊다. 사회보험의 경우에는 저소득층에서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소득구성비중이 작아지는 역진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는 사회보험의 특성상 주된 수혜대상이 노인층과 경제력이 미약한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과 관계가 깊다. 특히 노인층은 상당수가 은퇴 등의 사유로 저소득분위에 속해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순)자산 규모가 증가하여 소득과 정(+)의 상관관계가 있지만, 소득상대비(10분위배수 30.2, 2007년 기준)에 비해 자산상대비(10분위배수 6.4, 2007년 기준 총소득의 경우에는 6.5)가 작고, 자산소득(부동산임대소득, 이자·배당소득 등)의 비중이 매우 작다. 이는 고소득층이라고 해서 반드시 자산소득 비중이 중·저소득층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지 않음을 의미한다.

2007년 현재 가구당 평균 총자산은 2억 1,084만원으로 추정된다. 10분위/1분위의 상대비는 6.54(=59,343만원÷9,067만원)로 총소득의 31.7(=9,502만원÷315만원)보다 훨씬 작다. 이런 추이는 2008~2009년도에도 대동소이하다. 주택자산은 전체 자산 가운데 가액 기준으로 약 3분의 2를 차지하며 부동산자산, 금융자산, 전세보증금의 순서로 비중이 높고 회원권 등은 비중이 미미하다. 주택자산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구당 평균 자산액이 떨어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반면에 부동산자산과 전세보증금은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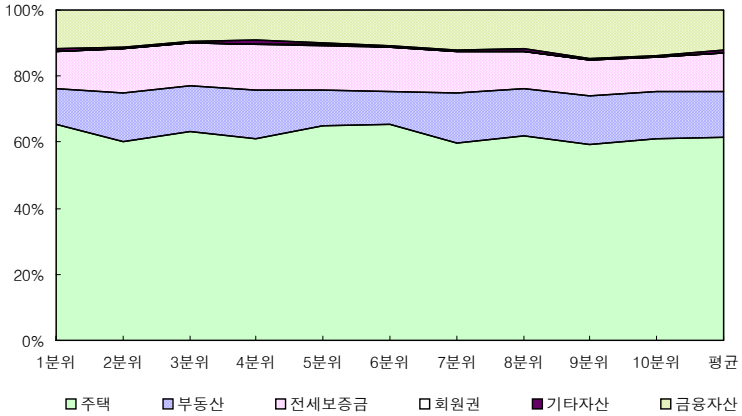
주택자산, 부동산자산, 전세보증금, 금융자산 등의 비중이 골고루 높다. 소득분위별 비중의 차이는 크지 않다.

대부분의 가계부채는 금융부채이다. 2007년 현재 가구당 평균 금융부채 규모는 2,102만원으로, 총부채(3,433만원)의 61.2%에 이른다. 총부채의 10분위 배수는 2007년 현재 7.4(2008~2009년에는 4.9~5.8)였다. 금융부채는 8.5로 좀 더 크다. 전세보증금의 10분위 배수는 9.8(2007년 기준)로 좀 더 높다. 이는 주택이나 기타자산을 보유

한 상태에서 이를 임대하면서 보증금으로 수취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상환의무가 있는 전세보증금의 분포는 임대자산의 소유분포와도 관계가 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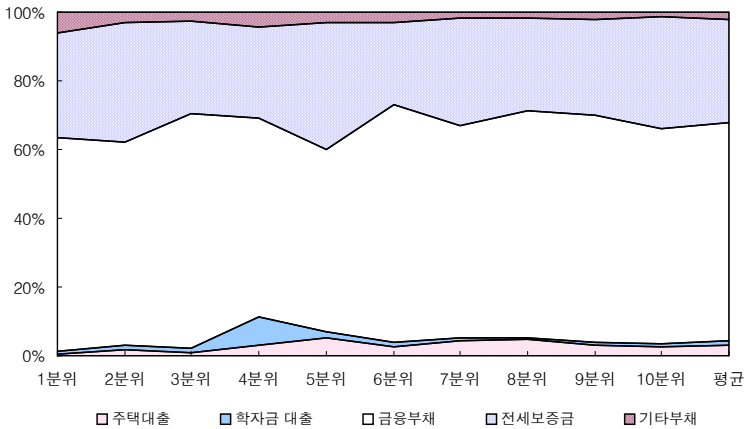
[그림 4] 소득분위별 자산구성항목별 비중 분포(2009년 재정패널, 횡단면기준)

(단위: %)



[그림 5] 소득분위별 부채구성항목별 비중 분포(2009년 재정패널, 횡단면기준)

(단위: %)



전체적으로 소득분위에 관계없이 금융부채와 전세보증금의 부채 구성비가 다른 종류의 부채를 압도한다. 다소의 등락이 있기는 하지만, 각 부채의 분포 비중은 소득분위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재정패널자료에서 가구당 평균 근로소득세 부담액은 48만원으로 보고되었다. 2007년 가구당 세부담 평균 48만원에 추계가구 수(1,642만 가구)를 곱한 근로·종합소득세의 총세수는 7조 9천억원에 이른다. 국세통계연보에 나타난 근로·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이 25조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가구당 평균 세부담은 실제의 약 3분의 1 정도만 보고된 것으로 추정된다. 가구당 부가가치세 부담은 111만원(2007년)~126만원(2009년)으로 추정된다. 이는 부가가치세 세수의 약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나머지 부분은 비가계 부문에서의 최종소비에 의한 부가가치세 부담으로 볼 수 있다. 교통세, 주세, 담배세의 가구당 부담액은 각각 17만~19만원, 7만~9만원, 17만~19만원으로 추정된다. 이들 모두 해당 세목(부가세 포함)의 세수규모에 비해 상당히 과소하다. 비가계부문에서 소비된 부분이 상당히 크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소득 1분위를 제외하면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의 실효세부담률은 고소득 분위로 갈수록 상승한다. 이는 이들 소득세의 세부담 분포가 매우 누진적임을 시사한다. 반면에 각종 소비세의 세부담은 역진적이다.

다. 패널기준 분포

2007년 소득순위를 기준으로 2008~2009년의 소득분위를 고정시켜 놓고 분포 특성을 분석하였다. 총소득의 경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저소득층의 평균소득은 상승하는 반면 고소득층의 평균소득은 두드러지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2007~2008년 사이에 총소득은 1~6분위에서 증가한 반면 7~10분위에서는 감소하였다. 이는

평균지향효과(mean reversion effect)가 나타났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횡단면분석에 비해 패널기준의 경우에 소득과 자산의 평균값 증가율이 대체로 더 높다. 이는 패널 특성에 따른 고령화 효과가 크게 작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2007~2008년 사이에 적자가구의 비율이 최저소득층인 1분위에서 감소한 반면 그 외의 분위에서는 증가한 것과, 2008~2009년 사이에 대다수의 가구에서 적자가구 비율이 감소하는 가운데 최고소득층인 10분위에서 적자가구 비율이 소폭이나마 상승한 것도 일종의 '평균지향 효과'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자산이나 부채의 경우에는 소득계층을 2007년 기준으로 고정시켜 놓음에 따라, 변화 추이가 매우 불규칙적으로 나타나며, 평균지향효과도 찾기 어려웠다.

라. 소득·자산의 결합분포

자산과 소득은 분포구조상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자산분배구조의 결정요인과 소득분배구조의 결정요인은 서로 상이한 것이 보통이다.

저소득층 가운데에는 고자산분위에 속하는 가구도 상당수에 이른다. 저소득층 중 생산성이 낮거나 실직·질병 등의 이유로 인해 저소득층에 속하게 된 경우도 있지만, 생애주기상 은퇴 후의 연령기에 속한 가구들도 상당수 저소득층에 포함되어 있다. 총소득 1~2분위 가구 가운데 고령자 가구의 비중이 다른 분위보다 현저하게 높은 것이 이를 방증한다. 은퇴 이전에 고소득을 획득하고 자산도 많이 축적하였던 가구 중에서는 은퇴로 인해 경상소득만 급격히 줄어든 가구 수도 상당하다.

마. 소득이동성

소득이동성은 Shorrocks(1978)가 제안한 소득이행행렬의 추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소득1분위의 경우 2007년에 이어 2008년에도 1분위에 잔존할 확률은 0.55로 추정된다. 고소득분위로 갈수록 해당 소득분위에 잔존할 확률은 점차 하락한다. 이런 추이는 5분위(0.25)에 이를 때까지 지속된다. 그 이상의 소득분위에서는 다시 잔존확률이 상승한다. 10분위의 경우에는 잔존확률이 0.66에 이르러 전체 가구 중 약 3분의 2가 10분위에 머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정한 소득분위에서 인접한 소득분위로 이행하는 확률은 소득분위의 변화가 없는 경우의 이행확률보다는 작지만, 거리가 먼 소득분위로 이행하는 경우보다는 높다.

소득이행확률의 추정결과는 2008/2009년에도 대동소이하다. 다만 대각원소를 나타내는 각 소득분위별 잔존확률은 전년(2007/2008년)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다. 이는 소득분위의 이동이 이전기간보다 적어졌음을 시사한다. 이런 결과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소득이동성이 구조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기존 연구(예: Sung, 2011)의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3. 상관관계 및 소득재분배 효과

가. 불평등도

총소득 지니계수는 0.4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추정된다. 가계동향 조사자료(0.35 내외)보다는 다소 큰 값을 가진다. 소비지출이나 자산, 부채의 지니계수는 소득지니보다 상당히 작은 값을 가진다. 그러나 이는 소득순위를 기준으로 추정된 것인 만큼 별다른 의미를 지니지는 않는다.

자기 순위를 기준으로 지니계수를 재추정해 본 결과, 총자산의 지니계수는 0.6 초반대, 부채는 0.8 내외, 순자산은 0.66~0.70 정도로 나타났다. 자산이나 부채의 분포불평등도가 소득이나 소비지출보다 크게 높은 이유는, 주로 자산이나 부채의 소유 여부 편중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소유자의 소유 비중의 편중도도 높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총자산분포를 총소득 순위를 기준으로 재배열했을 때 나타나는 분포 불평등도(지니계수)는 0.33 수준으로 총소득 지니(0.43 내외)에 비해 훨씬 작다. 이는 비록 총자산 자체의 순위를 기준으로 한 자산분포의 집중도가 매우 높지만, 소득기준으로 재배열하면 소득계층 간 자산분배구조의 상대격차가 상대소득격차보다 작아짐을 의미한다. 이는 상당 부분 은퇴자들 중에서 고자산가가 존재하고 이들은 대부분 은퇴로 인해 소득수준이 낮다는 점이, 소득순위 기준의 자산격차가 줄어드는 데 기인한다.

나. 상관관계

각 연도별 소득 상호 간의 상관계수는 0.73~0.80으로 매우 높다. 이는 각 가구별로 직종이나 학력, 생산성, 건강상태, 가구규모 등과 같은 인적 특성의 차이가 장기적으로도 지속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일반적으로 자산변동과 저축 사이에는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양자 사이의 상관관계는 별로 높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저축을 통한 자산가치의 변동보다는 자산가격의 변화에 의한 자본이득/손실이나 상속·증여 등 자산 규모 자체의 변동에 의한 영향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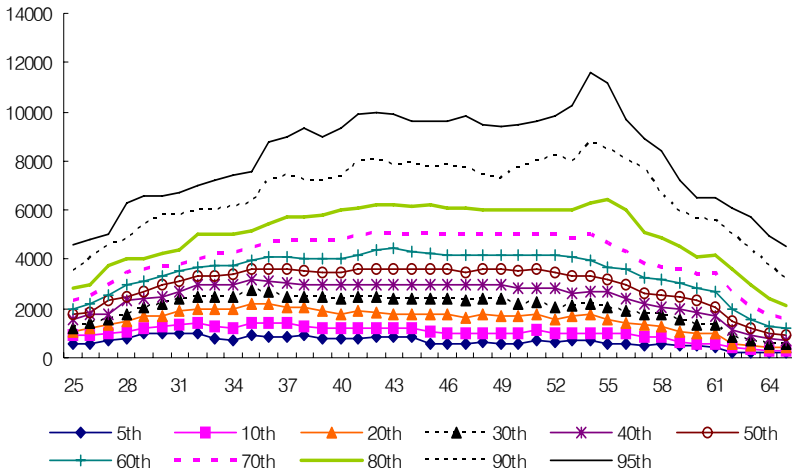
다. 인정소득의 소득불평등 영향 및 생애소득 경로

총소득 지니계수는 0.42로 추정된다. 주택자산과 부동산자산 등의 유형고정자산에 한정하여 인정소득(imputed rent)을 추정하여 합산하였다. 그 결과 인정소득을 포함할 경우 소득불평등도는 소폭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횡축의 변수를 연령으로 할 때, 거의 모든 소득백분위수의 생애소득 경로의 궤적은 역U자의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연령이 증가하여 중년층(대체로 40~50대 전후)으로 이행할수록 소득백분위곡선이 우상향하였다가 50대를 넘어서면서부터 하락추세로 반전된다.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소득확장기가 길어지는 한편 소득하강기가 짧아지는 특징을 보였다.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이와 반대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이는 장기소득의 불평등도가 연간단위로 관찰되는 연간소득 기준의 불평등도보다 더 커지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6] 연령별 총소득 백분위수(재정패널조사자료 2009년 기준)

(단위: 만원)



라. 장기소득불평등도

3개연도 패널자료를 소비자물가지수로 할인하여 2007년 가격으로 합산하여 장기소득에 대한 불평등도를 분석하였다. 가구 총소득의 10분위배수는 연소득 기준의 28.3~38.1보다 훨씬 작은 2.7로 대폭 축소되었다. 이는 평균지향효과로 인해 장기소득의 상대적 불평등도가 연간소득의 경우보다 훨씬 작아졌음을 시사해준다. 소득계층별 생애소득 경로의 비대칭성, 즉 소득계층별로 소득확장기와 소득수축기의 상대적 길이가 비대칭적으로 나타남으로써 장기소득불평등도가 단기소득불평등도보다 커지게 되는 요인과, 전반적으로 소득이동성이 저하됨에 따라 나타나는 장기소득불평등도의 상승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횡단면에서 나타나는 생애주기의 연령적 차이로 인한 부분이 3개연도 자료를 합산하는 과정에서 상당부분 희석됨에 따른 장기소득의 불평등도 하락요인이 훨씬 더 큰 것으로 추정된다.

총소득, 소비지출, 총자산, 부채, 순자산의 다섯 가지에 대해 3개년 합산치의 지니계수를 추정하였다. 다섯 가지 변수 모두에서 지니계수가 연간치보다 훨씬 낮은 수치를 보였다.

〈표 1〉 소비자물가로 할인한 3개년 합산자료 기준의 지니계수 추정결과(재정패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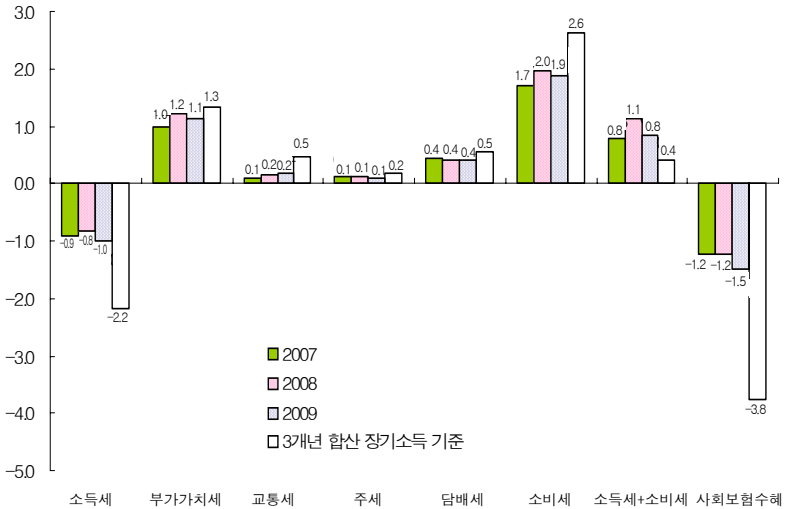
	지니계수
총소득	0.14505
소비지출	0.07577
총자산	0.09999
부채	0.01497
순자산	0.11869

마. 소득재분배 효과

소득세에 의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0.8~1.0%로 추정되었다. 재정패널자료에 보고된 근로·종합소득세 부담이 실제보다 약 3분의 1 불과한 정도이므로 소득세 부담의 과소보고에 따른 편의를 교정하면 실제의 효과는 약 3배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사회보험수입(또는 사회보험수혜; 공공부문으로부터의 현금수혜)에 의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2007~2008년 1.2%, 2009년에는 1.5%로 추정된다. 부가가치세, 교통세, 주세, 담배세 등의 소비세는 모두 부(-)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총소득으로부터 이들 소비세를 모두 차감할 경우 세후소득지니계수는 1.7%(2007년)~2.0%(2008년) 정도 상대소득격차를 확대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림 7] 소득세·소비세·사회보험수혜의 소득재분배 효과(세전·세후소득 지니계수 변화율)

(단위: %)



소득세·소비세 부담과 사회보험수혜를 아우른 공공부문에 의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모두 합산하면, 미미하게나마 정(+)의 소득재분배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007년의 경우 재분배 전 소득의 지니계수는 0.42857(총소득-사회보험수혜)이고 재분배 후 소득 지니계수는 0.42666으로 앞의 경우보다 작다. 재분배를 통해 지니계수가 0.00191지니p 감소하였다. 2008년과 2009년에도 각각 0.0245지니p(0.44241 → 0.44196)와 0.00285지니p(0.43184 → 0.42899)에 이르러 모두 정(+)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내었다.

3개연도 소득과 각종 세목의 세부담을 합산한 장기효과를 추정해본 결과, 소비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다소 약화되고 소득세와 사회보험수혜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크게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개연도 합산소득 및 합산소득세를 기준으로 하면 지니계수 변화율이 약 2.2%로 연간소득에 의한 1.0% 내외 수준을 두 배 이상 상회한다. 사회보험수혜의 경우에도 연간소득을 기준으로 한 경우의 소득재분배 효과(1.2~1.5%)보다 훨씬 큰 3.8%에 이른다. 소비세는 연간소득에 비해 3년 장기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부(-)의 소득재분배 효과(즉, 지니계수 증가율)가 조금 더 커진다. 장기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소득세와 사회보험수혜의 정(+)의 소득재분배 효과 증가폭이 소비세의 부(-)의 소득재분배 효과의 증가폭보다 더 크다. 따라서 연간소득에 비해 장기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소득재분배 효과는 조금 더 커진다.

4. 정책시사점

가. 분배론적 관점에서의 시사점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한 소득불평등도보다는 잠재적인 경제적 능력을 구성하는 자산, 특히 유형고정자산으로부터의 인정소득

(imputed rent)을 고려하면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값이 축소되어 불평등도가 다소 완화된다. 생애소득경로에 대한 소득계층별 변화패턴의 비대칭성과, 시계열적 소득이동성의 저하 가능성(Sung, 2011) 등은 그와 반대로 생애소득 불평등도를 가속화하는 효과가 있다. 이들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장·단기소득의 불평등도의 대소관계가 상반되게 나타날 수 있다.

재정패널자료를 사용하여 3개연도 자료를 합산해본 결과 3개년 소득의 불평등도가 연간소득의 불평등도에 비해 현저하게 작아졌다. 이는 생애소득 경로에 대한 소득계층별 변화패턴의 비대칭성과, 시계열적 소득이동성의 저하 가능성에 따른 장기소득 불평등도의 상승효과보다 횡단면에서의 생애주기의 연령적 차이로 인한 장기소득의 불평등도 하락효과가 훨씬 더 크게 작용하였음을 시사한다.

나. 조세정책적 관점에서의 시사점

근로·종합소득세와 사회보험수혜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나 사회보험수혜의 규모를 증가시킬 경우 소득재분배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근로·종합소득세 부담을 가상적으로 증대시켰을 경우 소득재분배 효과가 확대된다. 소비세의 역진성에도 불구하고 조세 전체적으로 소득재분배 효과는 양(+)의 값을 가짐을 보여준다.

선진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부담의 역진성이 뚜렷하다. 재정패널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세부담 구조가 다소 역진적이며, 따라서 부(-)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낸다. 흔히 소비세 부담의 역진성을 들어 증세의 수단으로 소비세는 적절하지 않으며, 복지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추가재원으로 부가가치세는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을 접하게 된다. 그런데 복지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서유럽국가들이 복지재원 확충 등을 위해 부가가치세율을 인상

하였던 것을 보면 위의 주장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소득세는 누진세율체계 등으로 인해 자원배분 왜곡적인 세목이기 때문에, 소득세를 과도하게 증세할 경우 부작용(예: 사중손실, 노동공급 왜곡 등)이 순작용(예: 소득재분배 효과 등)을 초과하게 되므로 소득세 증세에는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 더욱이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급격히 진전되는 가운데 소득과세에 지나치게 치중하면 세율이 빠르게 좁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세 부담이 과중해짐으로써 오히려 국민경제적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다.

현재 소득세 실효부담이 낮은 만큼 소득세 부담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소득세 부담이 지나치게 과도해짐에 따른 부작용이 압도하지 않도록 부가가치세 세율인상 등을 통한 재원확충 방법도 함께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비록 부가가치세 부담이 역진적이지만, 부(-)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지 않고 부가가치세율도 10%로 선진국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 따라서 세율인상 초기에 다소의 물가상승이 우려되지만 세율인상의 여력이 있으며, 또한 복지 확대에 의한 재분배 효과를 논함에 있어 부가가치세 부담 확대에 의한 부(-)의 효과와 복지지출 확대에 의한 정(+)의 효과를 합산한 총체적 의미에서의 재분배 효과를 보아야만 올바르게 정책판단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복지재원 확충을 위한 세목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향후 재원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될 때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또는 기타 세목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소득과세와 더불어 재산과세도 정(+)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하기 쉽다. 그러나 일반적인 기대·인식과 달리 재산과세는 부(-)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자산과 소득 사이에 정(+)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라도 그것이 반드시 정(+)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 정(+)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소득계층별 소득의 증가속도보다 세부담의 증가속도가 더 높아야 하기 때문이다. 비록 재산세 세율구조가 누진세율 체계를 구성하고 있지만 과세기준이 부동산 자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만큼 소득기준의 누진도와는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총소득의 10분위 배율이 28.2~38.1로 상당히 큰 반면 소득순위를 기준으로 재배열한 총자산의 10분위 배율이 6.0~6.5(순자산의 경우에는 6.1~6.4)로 소득격차보다 작다는 점이, 재산세 세율체계의 누진구조에도 불구하고 재산세가 정(+)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내지 못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목 차

I. 서론	31
II. 기존 연구 고찰 및 분석자료·분석방법	34
1. 기존연구 고찰: 문헌연구	34
2. 연구방법과 분석자료	36
가. 연구내용	36
나. 연구자료	38
다. 연구방법	40
III. 소득계층별 분포 분석결과	42
1. 소득계층의 구성: 소득계층별 가구주 연령분포	42
2. 소득·자산·부채 및 주요 세목별 세부담 결합분포	46
가. 소득·자산·부채 결합분포: 횡단면 기준	46
나. 소득·자산·부채 결합분포(2007년 소득계층 기준, 패널기준)	73
3. 연령별 분포: 횡단면 기준	88
4. 자산분위·소득분위의 결합분포	97
5. 소득이동성	101
가. 소득이동성에 대한 기존 연구	101
나. 추정결과	102
IV. 상관분석·소득재분배 효과 및 정책시사점	105
1. 집중도·불평등도·상관계수	105

가. 집중도 · 불평등도	105
나. 상관관계 분석: 상관계수	109
2. 인정소득을 고려한 경우의 소득불평등도	112
3. 생애소득 경로	113
4. 3개년 합산 기준의 분포	116
5. 소득재분배 효과	119
6. 모의실험: 소득세를 중심으로	125
7. 정책시사점	128
가. 배분론적 관점에서의 시사점	128
나. 조세정책적 관점에서의 시사점	129
V. 요약 및 맺음말	138
참고문헌	141
부록: 표	148

표 목 차

〈표 II-1〉 재정패널자료의 기술통계(2009년 기준)	39
〈표 II-2〉 재정패널자료의 기술통계: 가구구성 특성	40
〈표 III-1〉 소득10분위별·연령별 재정패널자료 구성 분포 (횡단면 기준)	44
〈표 III-2〉 총소득계층별 소득·소비·적자가구·자산·부채 분포 (재정패널자료 횡단면 기준)	49
〈표 III-3〉 총소득계층별 소득·소비·적자가구·자산·부채 점유비중(재정패널자료 횡단면 기준)	52
〈표 III-4〉 총소득계층별 소득·소비·적자가구·자산·부채 변화·차(재정패널자료 횡단면 기준)	54
〈표 III-5〉 총소득계층별 소득·자산·부채 전년대비 증감률 (재정패널자료 횡단면 기준)	55
〈표 III-6〉 주요 소득종류별 분포 및 증감·차 (재정패널자료 횡단면 기준)	57
〈표 III-7〉 주요 자산종류별 분포 및 증감 (재정패널자료 횡단면 기준)	63
〈표 III-8〉 주요 부채종류별 분포 및 증감 (재정패널자료 횡단면 기준)	67
〈표 III-9〉 주요 세목별 분포 및 증감 (재정패널자료 횡단면 기준)	70
〈표 III-10〉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의 분포 및 실효세부담 (재정패널자료 횡단면 기준)	72

〈표 Ⅲ-11〉 총소득계층별 소득·소비·적자가구·자산·부채 분포(재정패널자료 패널 기준)	74
〈표 Ⅲ-12〉 총소득계층별 소득·소비·적자가구·자산·부채 점유비중 (재정패널자료 패널 기준)	76
〈표 Ⅲ-13〉 총소득계층별 소득·소비·적자가구·자산·부채 변화(차)(재정패널자료 패널 기준)	77
〈표 Ⅲ-14〉 총소득계층별 소득·자산·부채 전년대비 증감률 (재정패널자료 패널 기준)	78
〈표 Ⅲ-15〉 주요 소득종류별 분포와 차(재정패널자료 패널 기준) ...	79
〈표 Ⅲ-16〉 주요 자산종류별 분포와 차(재정패널자료 패널 기준) ...	81
〈표 Ⅲ-17〉 주요 부채종류별 분포와 차(재정패널자료 패널 기준) ...	83
〈표 Ⅲ-18〉 주요 세목별 분포와 차(재정패널자료 패널 기준) ...	85
〈표 Ⅲ-19〉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의 분포 및 실효세부담 (재정패널자료 패널 기준)	87
〈표 Ⅲ-20〉 가구주 연령별 소득·소비지출·자산·부채 분포 (재정패널자료, 횡단면 기준)	89
〈표 Ⅲ-21〉 가구주 연령별 주요 소득항목의 분포 (재정패널자료, 횡단면 기준)	91
〈표 Ⅲ-22〉 가구주 연령별 주요 자산 항목의 분포 (재정패널자료, 횡단면 기준)	93
〈표 Ⅲ-23〉 가구주 연령별 주요 부채 항목의 분포 (재정패널자료, 횡단면 기준)	94
〈표 Ⅲ-24〉 가구주 연령별 주요 세목의 세부담 분포 (재정패널자료, 횡단면 기준)	95
〈표 Ⅲ-25〉 가구주 연령별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의 상세 분포(재정패널자료, 횡단면 기준)	96
〈표 Ⅲ-26〉 소득 10분위별·총자산 10분위의 구성 분포 (재정패널자료, 횡단면 기준)	99

〈표 Ⅲ-27〉 소득 10분위별 · 순자산 10분위의 구성 분포 (재정패널자료, 횡단면 기준)	100
〈표 Ⅲ-28〉 소득 10분위별 소득이행확률의 추정결과 (재정패널자료 기준)	104
〈표 Ⅳ-1〉 소득 · 지출 · 자산 · 부채의 불평등지수 (재정패널자료, 지니계수 기준)	107
〈표 Ⅳ-2〉 소득 · 지출 · 자산 · 부채의 상관계수(재정패널자료) ···	110
〈표 Ⅳ-3〉 저축과 자산 · 부채의 상관계수(재정패널자료)	111
〈표 Ⅳ-4〉 저축과 자산 · 부채 증감의 상관계수(재정패널자료) ···	111
〈표 Ⅳ-5〉 인정소득을 고려한 지니계수(재정패널자료)	113
〈표 Ⅳ-6〉 소비자물가로 할인한 3개년 합산자료의 분포 (재정패널자료)	117
〈표 Ⅳ-7〉 소비자물가로 할인한 3개년 합산자료 기준의 지니계수 추정결과(재정패널자료)	119
〈표 Ⅳ-8〉 소득 · 자산 · 부채의 지니계수 및 소득세 · 소비세의 소득재분배 효과(재정패널자료)	122
〈표 Ⅳ-9〉 소득 · 자산 · 부채의 지니계수 및 소득세 · 소비세의 소득재분배 효과(3년치 합산 장기소득 및 세부담 기준, 재정패널자료)	124
〈표 Ⅳ-10〉 모의실험을 통한 근로 · 종합소득세 부담 조정 시 소득 재분배 효과의 변화(재정패널자료 횡단면 기준) ···	127
〈부표 1〉 가계조사자료를 이용한 소득분위별 부가가치세 · 총소득 · 소비지출 분포(2009년 가계동향조사자료 기준)	148
〈부표 2〉 가계조사자료를 이용한 주요 소비지출 항목별 부가가치세 및 지출 분포(2009년 가계동향조사자료 기준)	148

〈부표 3〉	가계조사자료를 이용한 개별소비세 주요 과세대상별 세부담 및 지출분포(2009년 가계동향조사자료 기준) …	149
〈부표 4〉	가계조사자료를 이용한 주세 주요 과세대상별 세부담 및 지출분포(2009년 가계동향조사자료 기준) …	149
〈부표 5〉	가계조사자료를 이용한 교통세 주요 과세대상별 세부담 및 지출분포(2009년 가계동향조사자료 기준) …	150

그림 목차

[그림 III-1] 가구주 연령대별 표본비중(재정패널자료, 횡단면 기준)	45
[그림 III-2] 가구주 연령대별 점유비가 가장 높은 소득분위의 분포(재정패널자료, 횡단면 기준)	45
[그림 III-3] 소득·소비지출 및 적자가구 비율 분포(2009년 재정패널, 횡단면 기준)	50
[그림 III-4] 자산·부채 분포(2009년 재정패널, 횡단면 기준) ...	50
[그림 III-5] 소득분위별 소득구성항목별 비중 분포(2009년 재정패널, 횡단면 기준)	60
[그림 III-6] 소득분위별 자산구성항목별 비중 분포(2009년 재정패널, 횡단면 기준)	65
[그림 III-7] 소득분위별 부채구성항목별 비중 분포(2009년 재정패널, 횡단면 기준)	68
[그림 III-8] 가구 연령별 총소득·소비지출 분포(재정패널자료 2009년 기준)	88
[그림 III-9] 가구 연령별 적자가구비율 분포(재정패널자료)	90
[그림 III-10] 가구 연령별 총자산·부채·순자산 분포(재정패널자료 2009년 기준)	90
[그림 IV-1] 소득기준 소득과 자산의 로렌즈 곡선	108
[그림 IV-2] 연령별 총소득 백분위수(재정패널조사자료 2007년 기준) ·	115
[그림 IV-3] 연령별 총소득 백분위수(재정패널조사자료 2008년 기준) ·	115
[그림 IV-4] 연령별 총소득 백분위수(재정패널조사자료 2009년 기준) ·	116

[그림 IV-5] 소득세·소비세·사회보험수혜의 소득재분배 효과 (세전·세후소득 지니계수 변화율)	124
[그림 IV-6] 모의실험을 통한 근로·종합소득세 부담 조정 시 소득 재분배 효과의 변화(재정패널자료 횡단면 기준) ..	127
[그림 IV-7] 소득기준 소득·자산 로렌즈 곡선 및 재산세부담 집중곡선	133

I. 서론

1990년대 중·후반 이후 상대소득격차 및 자산분배격차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분배 및 재분배 문제의 중요성이 매우 빠르게 부각되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의 실증분석은 주로 소득분배 문제에 집중된 반면, 자산분배 구조 또는 자산·소득의 결합분포에 대한 실증 연구 및 정책대안 개발을 위한 연구가 크게 부족한 편이다. 근본원인은 소득·자산의 결합분포를 유추할 수 있는 기본통계자료가 부족하다는 데 있다. 최근 노영훈·김현숙(2005), 성명재·김현숙(2006), 김경아·강성호(2008) 등의 연구가 일부 존재하지만 포괄범위가 좁고 내용의 구체성이 다소 부족하여 정책시사점의 도출이 미약한 편이다.

자산 소유구조는 소득보다 집중도가 훨씬 크다. 따라서 분배구조의 불평등도도 훨씬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하여 그 동안 관련 조세정책의 소득 및 자산재분배 효과에 대한 분석이 제한적이다.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하여 장래의 세원분포가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적정소득·재산과세 조합에 대한 정책적 요구가 증대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기초 연구가 부족하였다.

본 연구는 재정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소득·자산계층 및 가구주 연령별로 소득·자산·부채의 분배구조에 대한 결합분포를 추정하고 관련 제세부담 비교 및 모의실험을 통해 조세정책적 함의 도출 및 관련 세제개편 방향을 제시함을 기본 목적으로 한다. 재정패널자료는 구축 단계에서부터 소득·자산·부채 및 세부담 결합분포의 추정이 중요하다. 즉, 본 연구는 소득·자산·부채의 결합분포 추정을 통해 분배구조의 실상을 파악하고 자산·부채 분포구조 및 각종 관련 세목의 세부담

분포를 토대로 분배·재분배 효과를 살펴보면서 분배·재분배 구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조세정책적 관점에서 향후 세원분포의 구조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정책시사점과 대응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통계분석(기초통계량, 결합분포 도출 등), 모의실험, 문헌조사, 조세의 분배·재분배 효과 분석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재정패널자료에 나타난 소득·자산·부채 및 소비지출 구조에 대한 결합분포를 가구유형별·주요항목별·가구주연령별로 구분하여 추정한다. 관련 세목의 세부담 분포를 추정하고, 조세의 재분배 효과를 분석(세부담의 누진구조 및 세전·세후 불평등도의 비교 등)한다. 모의실험을 통해 세원분포 변화 및 세계개편에 따라 예상되는 효과를 도출함으로써 정책대응 방향 및 정책시사점을 도출한다.

기존의 조세정책 연구는 대부분 소득분배, 자산분포를 별개로 연구하였으나, 본 연구는 소득·자산·부채를 모두 고려하여 분배구조에 대한 결합분포 분석과 조세의 재분배 효과에 대해 논의한다. 이를 통해 고소득·저자산계층 또는 저소득·고자산계층에 대한 세부담의 불합리성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분배구조 및 세부담 귀착 분석 등과 관련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서 시사점을 도출한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도출하고자 하는 분석결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분석자료와 분석방법에 대해서도 간략히 논의한다. 제Ⅲ장에서는 재정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소득·소비지출·자산·부채 및 관련 세목의 세부담 등에 대한 결합분포를 추정한다. 결합분포는 각 연도별 횡단면 분포와 재정패널자료가 처음 구축된 연도인 2007년의 소득순위(또는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패널기준의 분포도 함께 추정한다. 아울러 주요 세목별 세부담 분포와 소득분위별 가구구성 분포, 소득이동성도 함께 분석한다. 제Ⅳ장에서는 소득·소비·재산·부채의 결합분포 및 각종 조세부담 귀착을 토대로 재분배 효과를 분석하고 다양한 경제변

수 간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조세정책적 측면에서의 재분배 효과를 비교하면서 정책시사점을 도출한다. 제 V장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서 정책시사점을 정리해보고, 향후 보완과제를 간략히 논의한다.

II. 기존 연구 고찰 및 분석자료·분석방법

1. 기존연구 고찰: 문헌연구

소득·자산·부채 등에 대한 분포 및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의 양과 깊이는 자료·정보의 이용가능성에 크게 의존한다. 소득과 관련된 분포 정보는 다양한 소득·소비 서베이자료가 있기 때문에 소득분배 연구는 매우 풍부하다. 반면에 자산·부채 관련 연구는 축적된 자료가 태부족하기 때문에 소득분배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풍부하지 않은 편이다. 또한 자료의 단절·중단 또는 간헐성 등으로 인해 시계열적으로 긴 기간을 대상으로 축적되어 일관된 연구를 가능하게 해 주는 자산·부채 관련 정보를 담은 서베이자료나 관련 세목의 납세신고자료 등이 드물다는 점도 자산·부채분포 연구를 어렵게 하는 또 다른 요인이다.

자산·부채에 대한 기존 연구는 주로 대우패널자료와 가구소비실태 조사자료 등 현재에는 단종된 서베이자료를 대상으로 한 것과 국부조사 등의 간헐적 자료 원천을 바탕으로 한 것, 그리고 현재 계속 조사가 진행 중인 한국노동패널자료를 대상으로 한 것 등이 대표적이다. 그 밖에 연구목적상 제한적으로 자료가 제공되었던 재산과세 납세신고자료, 그리고 통계청의 가계자산조사 또는 가계금융조사자료 등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연구가 최근 일부 수행되었다. 최근에는 3차연도까지 자료가 구축되고 현재 4차연도 자료가 수집중인 재정패널자료가 구축되었다. 소득·소비·부채 및 관련 조세에 대한 정보를 비교적 상세하게 담고 있어 소득·자산·부채를 아우른 분포연구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산·부채 등과 관련한 기존 분포연구를 종류별·특성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득·자산의 결합분포에 대한 기존 연구로는 주학중(1980), 성명재·김현숙(2006), 김경아·강성호(2008), 이성림(2005), 김현숙(2005) 등이 있으나, 분석자료의 정보 부족으로 인한 분석의 한계, 소득·자산 결합 시 통계적 매칭 등에 따른 오차 등으로 인해 유용성이 제한적이다. 또한 대부분 부채 관련 정보 등이 제외되어 있어 순자산 분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정책시사점 도출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다.

먼저 주학중(1980)은 자산·소득 결합분포를 형성하고 가계자산 소유로부터 파생되는 서비스 흐름을 기초로 환가소득을 추정하여 가계자산이 소득분배 구조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1977년 국부조사의 가계자산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계층별·가구주 연령별 자산분포를 10분위별로 분석하고 분배불평등도(지니계수)를 추정하였다. 환가소득을 고려한 소득계층별·가구주 연령별 소득·소비지출 분포분석을 통해 미시적 분배구조의 특징을 분석하고, 자산소유를 통한 재분배 효과를 추정하였다.

강석훈(1998)은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 임경목(2002)은 대우패널자료 등을 이용하여 가계 금융자산의 분포적 특성을 고찰하였다.

김정호(2004)와 김우영·김현정(2010) 등은 가계부채규모의 결정요인을 연구하였고, 성영애·양세정(1995), 양세정(2000), 김학주(2004, 2005), 이성림(2005), 성영애(2010) 등은 가계부채부담 및 분포를 연구하였다.

양세정·이영호(1996)는 가계금융이용실태조사자료를 이용하여 가계저축규모를 추정하였다. 이정우·이성림(2001)은 대우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가계자산 불평등도를 추정하였다. 남상호(2007, 2008) 역시 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가계자산 분포를 연구하였다. 남상섭(2009)은 통계청의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와 가계자산조사자료를 이용하여 가계 자산분배구조의 불평등도를 분석하였다. 여윤경·주소현(2009)은 통계청의 가계자산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순자산 분포를 연구하였다.

성명재·김현숙(2006)은 재산세 과세자료와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결합하여 결합분포의 특성, 즉 소득·자산의 분포집중도 및 불평등도, 관련 세제의 세부담 분포 등을 분석하고 조세정책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인정소득(imputed rent) 추정을 통해 실질총소득 분포를 추정하였다. 소득·부동산자산 결합분포 분석을 통해 양자간의 상관관계를 종류별로 추정하였다. 또한 소득·재산 관련세의 집중도 및 재분배 효과 분석을 통해 조세의 형평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소득보다 자산분포의 집중도가 훨씬 크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규명·확인하였다. 결합분포 및 조세의 재분배 효과에 대한 추정결과에 기초하여 형평성에 입각한 조세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김경아·강성호(2008)는 한국노동패널자료(KLIPS)를 이용하여 중·고령자 가구의 자산·소득분포를 분석하고 각각에 대한 불평등 분해 결과를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노후소득 지원정책에 대한 정책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중·고령층의 자산 및 소득분포를 파악하고, 가구 유형별·중사상지위별·거주지역별·자산 및 소득분위별 불평등도 분해를 시행하였다. 불평등도 분해 결과를 토대로 집단내·집단간 불평등 기여도를 분석하고 특징적 요소로부터 노후보장을 위한 정책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 연구방법과 분석자료

가.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는 재정패널 1~3차연도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계층별·자산계층별 소득·자산·부채 및 각종 세목별 세부담의 결합분포를 추정·분석한다. 자산·부채 결합분포를 통해 순자산 분포의 추정이 가능하다. 기존 연구에서는 부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인정지대(imputed rent) 또는 인정소득에 대한 분포의 추정이 제한적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순자산 보유(소유)를 통한 서비스 흐름(또는 실질적 구매력 증가분) 등을 토대로 소득 및 지불능력을 아우른 총체적 실질소득 분포의 추정이 가능하다.

자산분포의 경우 가액에 대한 주관적 가치평가요소가 일정부분 불가피한만큼 설문조사 과정상 편의가 일부 존재할 수 있다. 이는 여타의 조사자료에서도 동일하며, 심지어 재산 관련세 과세자료의 경우에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대부분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가구 특성 및 분배구조 특성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소득·재산 과세의 적정조합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소득세 부담의 실질총소득 대비 실효세부담률 분포와 소득재분배 효과, 소득-자산의 결합분포와 상대분포격차 비교 등을 통해 소득·재산과세의 부담 적정성 및 소득·자산 재분배 효과를 분석한다. 재정패널자료가 3개연도로 부족하지만 패널자료 비교를 통한 소득·자산·부채의 시계열적 변화효과를 요소별로 분해하여 고찰함으로써 결합분포 변화추이 고찰 및 특징 도출과 함께 정책시사점을 도출한다. 모의실험을 통해 소득세 변화 시의 분배구조 및 세부담 구조 변화효과 추정을 통해 정책대응방향을 모색하고 정책시사점을 도출한다. 장기소득 분포를 추정하고 인정소득 합산시의 분배효과도 함께 분석한다.

재정패널자료에는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만 비교적 상세한 세부담 정보가 집계·제공되고 있고, 재산세나 소비세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없다. 근로·종합소득세 이외의 세목 가운데 주어진 정보를 이용하여 세부담을 추정(imputation)할 수 있는 소비세의 경우에는 세부담을 추정하여 사용한다. 소비세의 경우에는 주류, 담배,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소비지출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여 역산하는 방법으로 세부담을 추정한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재산세의 경우 재정패널에 직접 정보가 없기 때문에 재산과세의 효과는 소득-자산의 결합분포 등으로부터 유추하여 간접적으로 소득재분배 효과를 추정하여 논의한다.

나. 연구자료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료는 재정패널자료 1~3차연도 자료이다.

재정패널자료는 기본적으로 전국가구(단, 제주도 제외)를 대상으로 하며, 원칙적으로 모든 가구 유형을 자료의 포괄대상으로 한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주된 모집단의 성격은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자료(HIES: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와 맥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패널자료로서 유사성을 지니고 있는 한국노동패널자료(KLIPS: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의 경우 주로 근로자를 중심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보면 재정패널자료는 확연히 구분된다.

재정패널자료는 소득, 소비, 자산, 부채에 대해 모두 설문항목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비교연구 및 결합분포의 추정이 용이하다. 비교적 이와 유사한 정보를 담고 있는 가계동향조사자료의 경우에는 주로 소득과 소비지출을 대상으로 질문지가 구성되어 있으며 자산이나 부채 잔고에 대한 정보는 전무하다.

통계청의 가계자산조사자료는 2006년 기간을 대상으로 자산과 관련된 설문자료를 추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자료에는 소득 관련 자료가 없어 소득·자산의 결합분포 추정·분석이 불가능하다. 2010년에는 가계금융조사자료가 발간되어 소득·자산·부채 등에 대한 결합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상당히 진일보된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이들 자료는 횡단면자료이기 때문에 소득·자산의 변동에 따른 추적연구는 어렵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재정패널자료는 크게 가구 설문자료와 가구원 설문자료로 구성된다. 가구원 설문조사는 소득이 양(+인) 가구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소득은 가구 설문과 가구원 설문에 모두 존재한다. 가구 설문은 소득금액 자체보다는 월평균 소득수준을 구간으로 질문하기 때문에 가구소득을 추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 소득이 있

는 가구원의 소득을 합산하는 방법으로 가구소득을 추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서베이자료에서는 소득을 과소보고하는 경향이 있다.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을수록 과소보고의 경향이 커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재정패널자료에 의하면 각 가구원의 개별적인 소득정보를 이용하여 합산한 소득이 가구소득이라고 별도로 조사한 내용보다 큰 값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 재정패널자료에서 가구소득은 소득구간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소득값을 알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구원 소득을 합산한 것을 가구소득으로 간주하여 사용한다.

〈표 II-1〉 재정패널자료의 기술통계(2009년 기준)

(단위: 만원)

	평균	표준편차	최대	최소
총소득	3,427	3,372	97,791	0
사회보험	76	352	4,452	0
민간보험	15	187	9,000	0
근로소득	2,282	3,110	97,791	0
사업소득	783	2,084	40,000	0
부동산임대소득	74	451	15,000	0
이자·배당소득	20	197	10,000	0
기타소득	176	441	10,000	0
소비지출	2,072	1,495	27,600	0
총자산	21,561	37,248	938,000	0
금융자산	2,648	5,763	105,000	0
주택자산	13,292	23,387	400,000	0
부동산자산	2,946	20,529	800,000	0
전세보증금	2,536	6,259	145,000	0
회원권	7	179	10,000	0
기타자산	133	1,433	48,000	0
부채	3,580	8,054	130,000	0
가구주 연령(세)	49.06	14.26	93	0
가구원 수(명)	2.92	1.28	9	1
취업인 수(명)	1.22	0.71	5	0

자산은 자산유형별로 대분류하여 보유규모에 대한 정보를 지니고 있다. 부채도 대동소이하다. 증빙서류 등에 대한 확인 없이 피조사자의 기억이나 자발적 확인 등에 의거하여 자산이나 부채금액을 조사하는 만큼 상당한 정도 측정오차(measurement errors)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II-1〉과 〈표 II-2〉는 2009년도 재정패널자료의 기술통계(descriptive statistics)를 보여준다.

〈표 II-2〉 재정패널자료의 기술통계: 가구구성 특성

(단위: 가구, %)

	2007년	2008년	2009년
표본가구수	5,014	5,096	4,884
가구주 성별			
남	77.74	77.8	77.74
여	22.26	22.2	22.26
가구주 연령분포			
~24	1.67	1.48	0.76
25~29	5.94	5.39	4.68
30~34	10.02	10.21	10.08
35~39	13.94	13.51	14.84
40~44	13.48	13.57	12.72
45~49	13.53	12.92	12.64
50~54	11.24	12.26	12.64
55~59	7.73	8.11	8.33
60~64	6.16	5.84	6.26
65~	16.29	16.72	17.05

다.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재정패널 1~3차연도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계층별·자산계층별·(가구주)연령별 소득·자산·부채 및 소득·재산세 부

담 분포구조의 결합분포를 추정·도출한다. 인정소득(imputed rent), 소득·자산·세부담 집중도 및 분배·재분배 효과를 분석한다.

소득·자산·부채 및 세부담 구조의 요인별·요소별 분해 및 시계열적 요인·요소 변화에 따른 분배구조 및 소득재분배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개별적으로 분석·추정하여 조세정책적 관점에서의 시사점을 모색한다.

본 연구에서는 소득·소비·자산·부채의 결합분포를 살펴보고 관련 세목에 대한 세부담 분포와 소득재분배 효과를 살펴본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재정패널자료에는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에 대해서만 조사되어 있으며 여타의 소비세나 재산세 등은 보고되어 있지 않다. 불행히도 재산세는 재분배 효과 분석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분석대상이지만 이용가능한 정보가 없어 분석이 불가능하다. 주어진 정보로 재산세에 대한 추정도 용이하지 않다. 다행히 소비세의 경우에는 보고된 주요 항목별 소비지출정보를 가지고 일정 부분 추정 가능한 부분이 있어 추정치(imputed values)를 사용한다.

교통·에너지·환경세(이하 교통세로 지칭)의 경우에는 재정패널 조사에 나타난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지출액으로부터 세부담을 역산하여 추정한다. 주세와 담배세의 경우에도 주요 주종별 지출액 및 담배 지출액으로부터 세액을 역산하여 추정한다.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직접 추정이 쉽지 않다. 재정패널조사자료에는 주요 소비항목에 대한 소비 지출액에 대한 정보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대한 지출액 규모를 추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성명재(2011)에서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연구결과를 차용하여 각 가구별 부가가치세 부담액을 추정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가계동향조사에서 각 소득분위별 소비지출액 대비 부가가치세 부담액 비용의 평균치가 재정패널자료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가정하였다. 각 소득분위별 가계동향조사의 가구당 소비지출액, 부가가치세 부담액, 실효세부담률(=부가가치세÷소비지출)의 분포에 대한 추정결과는 부록에 수록하였다.

Ⅲ. 소득계층별 분포 분석결과

본장에서는 재정패널자료가 담고 있는 소득계층의 연령별 구성분포, 소득계층별 소득·소비·자산·부채 및 세부담 분포를 추정한 결과를 설명한다. 소득계층별 분포는 각 연도를 횡단면으로 구성하여 분석한 경우(횡단면 기준)와, 2007~2009년의 3개년 모두 조사된 자료가 있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경우(패널 기준)의 두 가지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아울러 분석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순위의 변화, 즉 소득이동성의 변화추이도 소득10분위 계층을 대상으로 소득이행 확률도 추정한다. 조세정책의 재분배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소득세·소비세의 부담 분포와 세전·세후소득 지니계수의 변화율로 측정된 소득재분배 효과도 함께 논의한다.

1. 소득계층의 구성: 소득계층별 가구주 연령 분포

재정패널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가구주 연령을 기준으로 분석한 연령분포에 대한 추정결과는 <표 Ⅲ-1>에서 보는 바와 같다.

2007년을 기준으로 할 때 가구주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경우는 전체 가구 중 약 1.7%이다. 30~34세 가구는 10.0%, 35~39세는 13.9%로 상승하였다가 이후 하락하기 시작하여 50~54세 가구는 11.2%, 60~64세 가구는 6.2%로 낮아진다. 65세 이상의 노인 가구는 전체의 16.3%에 이른다. 이런 모습은 [그림 Ⅲ-1]에서 보듯이, 65세 이상의 노인 가구를 제외할 경우, 연령대별 가구비중은 역U자 형태를 나타낸다. 이런 패턴은 2008~2009년에도 유사하다.

재정패널자료는 패널자료이기 때문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료

자체의 특성이 고연령화(aging)하는 특성을 지닌다. <표 Ⅲ-1>에서도 보듯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구주의 연령이 작을수록 동 연령대의 가구 비율이 감소하는 반면 고연령대로 갈수록 해당 연령대의 가구비율이 상승한다. 표본의 고령화 현상은 우리나라 인구구조 자체의 고령화 추세와 패널자료 자체의 고연령화 현상이 복합되어 나타난다¹⁾.

이와 같이 표본의 고연령화 현상은 [그림 Ⅲ-1]의 역U자형 분포곡선이 30대 중·후반을 중심축으로 하여 시계 반대방향으로 소폭 회전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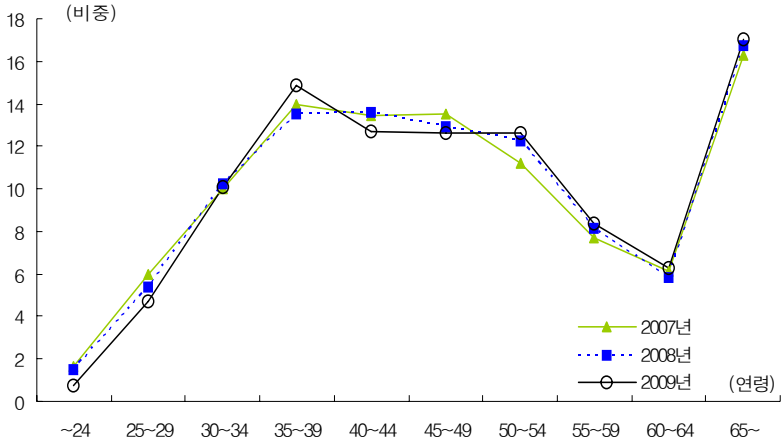
연령분포는 소득계층별로 매우 상이한 특성을 보인다. 가구주 연령이 낮은 가구들은 주로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있는 한편, 연령대가 상승하여 중·장년층에 이를 때까지 각 연령대별 가구 분포가 집중되어 있는 소득분위는 점차 고소득층으로 변화한다. 그러나 노동시장에서 은퇴하기 시작하는 50대 이후의 가구에서는 분포가 집중된 소득분위가 급격히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그림 Ⅲ-1] 참조).

1) 패널자료에서도 자료탈락(attrition) 현상이 있고, 또한 분가가구가 새롭게 형성되기도 하지만, 이와 다른 요인에 의한 신규가구가 표본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표본 자체의 고연령화 현상이 발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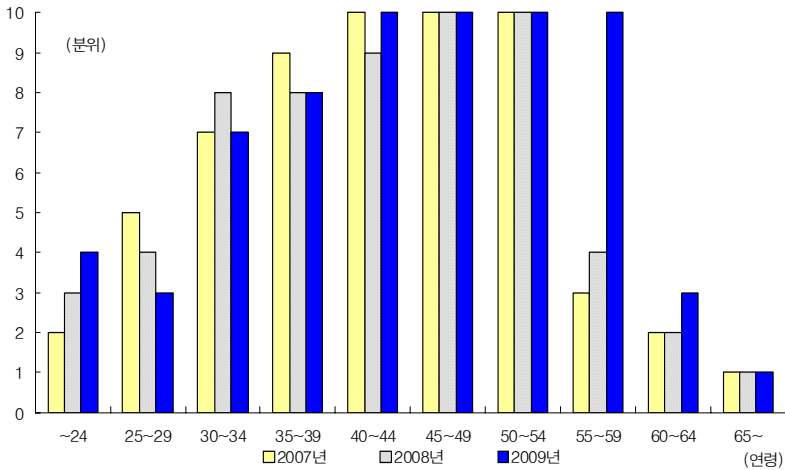
Ⅲ. 소득계층별 분포 분석결과 45

[그림 Ⅲ-1] 가구주 연령대별 표본비중(재정패널자료, 횡단면 기준)

(단위: %)



[그림 Ⅲ-2] 가구주 연령대별 점유비가 가장 높은 소득분위의 분포(재정패널자료, 횡단면 기준)



2. 소득·자산·부채 및 주요 세목별 세부담 결합분포

본절에서는 소득계층별 소득·자산·부채의 결합분포를 살펴봄에 있어 각 연도의 횡단면 소득계층으로 분류한 경우와, 2007년 소득계층을 기준으로 패널자료 관점에서 결합분포를 살펴보는 경우로 나누어 고찰한다²⁾.

가. 소득·자산·부채 결합분포: 횡단면 기준

1) 총액분포

1~3차연도의 재정패널자료를 기준으로 횡단면에 기초한 소득계층별 소득·자산·부채·순자산의 결합분포는 <표 III-1>~<표 III-3>에서 보는 바와 같다.

먼저 가구당 총소득(평균)은 2007년 3,307만원에서 2008~2009년에 각각 3,256만원과 3,427만원으로 소폭 감소하였다가 다시 소폭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2007~2009년의 가계동향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가구당 평균 총소득은 각각 3,860만원, 3,932만원, 3,961만원이다. 2007년에는 재정패널자료와 가계동향조사자료 사이의 차이가 미미하지만 2008년과 2009년에는 절대수준의 차이뿐만 아니라 소득 증감의 변화방향도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패널자료의 특성상 자료 탈락에 의한 편의(attrition bias)로 인해 패널자료의 횡단면 특성이 횡단면자료의 횡단면 특성으로부터 멀어지는 특성이 크게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그 밖에 소득의 과소보고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2008년의 계층별로는 1~8분위에서 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2) 기준연도를 2008년 또는 2009년으로 하더라도 추정 결과는 대동소이하다.

소비지출의 경우에는 총소득의 경우와 달리 2008년에는 소폭 증가하였다가 2009년에는 소폭(약 1%) 감소하였다. 소비지출의 변화패턴은 분위별로 매우 불규칙적이다. 2~3분위, 6분위, 8분위, 10분위에서는 3년 기간 동안 소비지출이 계속 증가하였으나, 나머지 분위는 증가·감소의 패턴을 보였다.

소비지출이 총소득보다 더 크면 해당 가구의 가계수지가 적자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가구를 적자가구라고 정의하자. 적자가구의 비율은 저소득층일수록 높고, 고소득층일수록 작아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2007~2009년 적자가구의 비중은 각각 15.4%, 22.1%, 19.0%로, 2008년에 크게 상승하였다가 이듬해 소폭 감소하였다. 최하위 10% 계층인 소득1분위에는 적자가구의 비율이 63~76% 정도에 이른다. 총소득1분위의 경우 전체 가구 중 약 3분의 2에서 4분의 3이 가구총소득이 소비지출보다 낮다.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적자가구의 비율은 급속히 낮아진다. 중간소득층이라고 할 수 있는 5~6분위는 적자가구의 비율이 6~15% 수준으로 낮아진다. 그런데 적자가구는 최고소득층인 최상위 10%(소득10분위)에서도 약 1% 내외 수준으로 나타난다. 최고소득층에서도 적자가구가 나타나는 이유는, 고가의 내구소비재(예: 승용자동차 등) 구입과 같이 일시적 현상에 의한 일시적 적자 반전의 가구비중이 높은 것으로 추측된다³⁾.

소득·소비지출과 소득에서 소비를 차감한 값이 음(-)의 값을 가지는 적자가구의 점유비율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그림 Ⅲ-3](2009년 기준)과 같다. 그림에서 보듯이 소득과 소비지출은 고소득분위로 갈수록 누적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적자가구의 비율은 1분위의 70% 수준에서

3) 최하위층도 일시적 실직이나 이직 등으로 인해 총소득이 일시적으로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적자를 기록하는 경우도 있으나, 상당수 가구의 경우에는 항상 소득 수준이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빈곤가구의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5분위 11.3%, 10분위 1.0%에 이를 정도로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급격히 낮아지는 모습을 보인다.

총자산의 경우에는 가구당 평균금액이 2007년 2억 1,084만원에서 2008년 2억 894만원으로 소폭 감소(-0.9%)하였다가 2009년 2억 1,561만원으로 다소 증가(3.2%)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부채는 2008년과 2009년 모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경우에는 증감률은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총자산의 경우와 동일한 방향으로 변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만약 자산·부채에 대한 보고오차가 없다면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변동 또는 비가계부문과의 순거래 증감 등에 따른 변화로 인해 그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III-4]는 2009년 현재 자산과 부채의 결합분포를 보여준다. 총자산과 부채는 소득계층별로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각각의 규모가 누적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아울러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경우에도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가속적으로 규모가 증가하는 분포를 보인다.

패널자료를 횡단면으로 잘라 구분하여 표시한 것이기 때문에 무작위추출에 기반한 일반적인 횡단면 분석결과와 다소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총자산과 순자산의 경우 시간이 경과할수록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점유비중이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총자산과 순자산의 점유비중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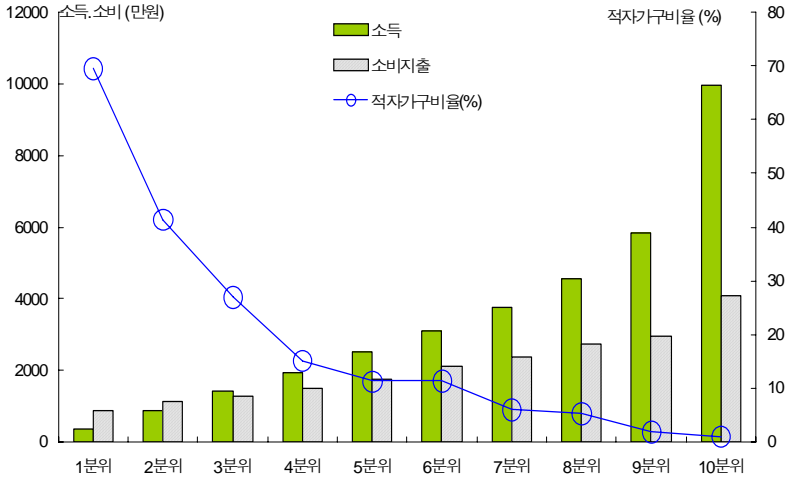
Ⅲ. 소득계층별 분포 분석결과 49

〈표 Ⅲ-2〉 총소득계층별 소득·소비·적자가구·자산·부채 분포
(재정패널자료 횡단면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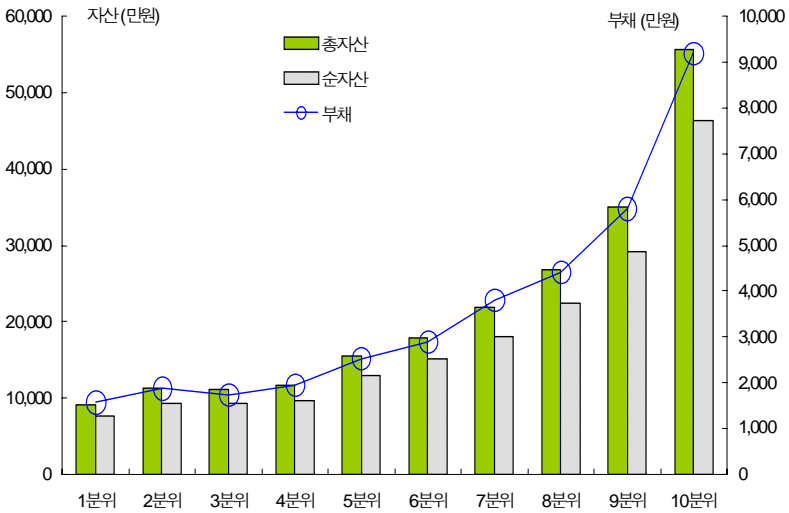
(단위: 만원, %)

소득	1분위 (A)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B)	평균	10분위 배수 (B/A)
2007	315	872	1,374	1,903	2,411	2,941	3,608	4,480	5,660	9,502	3,307	30.2
2008	250	760	1,264	1,822	2,342	2,898	3,586	4,407	5,691	9,535	3,256	38.1
2009	352	887	1,401	1,938	2,498	3,106	3,739	4,576	5,830	9,944	3,427	28.2
소비 지출	1분위 (A)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B)	평균	10분위 배수 (B/A)
2007	719	853	1,162	1,428	1,611	1,858	1,984	2,392	2,617	3,662	1,829	5.1
2008	921	973	1,235	1,521	1,818	2,074	2,372	2,669	3,306	4,047	2,093	4.4
2009	864	1,106	1,284	1,473	1,759	2,123	2,360	2,733	2,943	4,072	2,072	4.7
적자가 구비율 (%)	1분위 (A)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B)	평균	10분위 배수 (B/A)
2007	63.2	31.0	22.0	16.4	8.7	6.3	3.4	1.9	0.9	0.6	15.4	0.009
2008	76.1	46.4	35.0	19.9	14.5	12.1	8.1	4.7	2.3	1.5	22.1	0.020
2009	69.5	41.4	27.0	15.1	11.3	11.4	6.0	5.3	1.9	1.0	19.0	0.014
총자산	1분위 (A)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B)	평균	10분위 배수 (B/A)
2007	9,067	10,871	11,153	10,959	16,765	15,743	21,017	25,412	30,485	59,343	21,084	6.5
2008	9,550	9,008	9,832	13,355	15,173	17,297	20,531	23,348	33,473	57,379	20,894	6.0
2009	9,167	11,234	11,074	11,600	15,493	17,926	21,806	26,814	34,934	55,579	21,561	6.1
부채	1분위 (A)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B)	평균	10분위 배수 (B/A)
2007	1,169	1,513	1,962	2,496	2,628	2,381	3,405	4,672	5,433	8,668	3,433	7.4
2008	1,691	1,429	1,431	2,403	2,584	3,135	4,185	3,717	6,783	8,254	3,561	4.9
2009	1,580	1,877	1,737	1,955	2,531	2,896	3,802	4,415	5,809	9,199	3,580	5.8
순자산	1분위 (A)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B)	평균	10분위 배수 (B/A)
2007	7,897	9,358	9,191	8,462	14,136	13,362	17,612	20,740	25,052	50,674	17,651	6.4
2008	7,859	7,579	8,401	10,952	12,589	14,162	16,346	19,631	26,690	49,125	17,333	6.3
2009	7,587	9,356	9,337	9,645	12,963	15,029	18,004	22,399	29,125	46,380	17,981	6.1

[그림 III-3] 소득·소비지출 및 적자가구 비율 분포
(2009년 재정패널, 횡단면 기준)



[그림 III-4] 자산·부채 분포(2009년 재정패널, 횡단면 기준)



소득을 기준으로 분위를 구분한 경우와 자산 기준으로 분위를 구분한 경우의 분위는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인다. 소득계층은 당해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층을 구분하는 반면에,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뿐만 아니라 이전 기간의 저축이나 자본이득/손실과 상속·증여 등을 통해 축적된 것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흐름(flow)으로서의 소득과 스톡(stock)으로서의 자산 사이에는 상당한 정도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포구조는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이는 소득계층별 소득 점유비중과 자산 점유비중의 차이로부터 쉽게 유추할 수 있다. <표 Ⅲ-3>에서 보듯이 총자산, 부채, 순자산 모두 공통적으로 저소득층에서의 점유비중이 소득 점유비중보다 크다. 반면에 고소득층에서는 대체로 이와 반대되는 현상이 관찰된다. 이를테면 저소득가구 중에서 상당수는 은퇴가구로 구성되어 있다. 은퇴 등으로 인해 당해연도의 소득수준은 상당히 낮아 당해연도의 저소득분위에 속하게 되더라도 그 이전 기간 동안 상당히 많은 자산을 축적한 가구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반면에 당해연도에 고소득가구라고 하더라도 연령이 낮고 노동시장에 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가구의 경우에는 자산규모가 매우 적은 가구도 상당수에 이른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소득계층별 소득 점유비중의 상대적 격차보다 자산이나 부채의 점유비중 상대격차가 더 작게 나타난다.

2007~2009년 사이에 나타난 소득·소비·자산·부채의 증감을 살펴보자. <표 Ⅲ-4>에서 보듯이 2007~2009년 동안 총소득은 가구당 120만원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소비지출은 2배가 조금 넘는 243만원 증가하였다. 소비증가율이 소득증가율을 크게 상회함에 따라 적자가구 비율도 3.5%p 증가하였다. 자산과 부채 역시 모두 증가하였다. 총자산은 가구당 평균 477만원 증가하였으며, 부채는 147만원 증가하였다. 총자산의 증가폭이 부채 증가폭의 3배 이상에 이른다. 이에 따라 순자산도 가구당 330만원 증가하였다.

〈표 Ⅲ-3〉 총소득계층별 소득·소비·적자기구·자산·부채 점유비중
(재정패널자료 횡단면 기준)

(단위: %)

소득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계
2007	0.95	2.64	4.15	5.75	7.29	8.89	10.91	13.55	17.12	28.73	100
2008	0.77	2.33	3.88	5.6	7.2	8.9	11.01	13.54	17.48	29.29	100
2009	1.03	2.59	4.09	5.65	7.29	9.06	10.91	13.35	17.01	29.02	100
소비지출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계
2007	3.93	4.67	6.35	7.81	8.81	10.16	10.85	13.08	14.31	20.02	100
2008	4.4	4.65	5.9	7.27	8.69	9.91	11.33	12.75	15.79	19.33	100
2009	4.17	5.34	6.2	7.11	8.49	10.25	11.39	13.19	14.21	19.66	100
적자기구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계
2007	40.92	20.07	14.26	10.63	5.63	4.09	2.17	1.26	0.6	0.36	100
2008	34.45	21.02	15.87	9.02	6.56	5.49	3.69	2.13	1.06	0.7	100
2009	36.6	21.79	14.23	7.96	5.94	5.98	3.16	2.82	0.99	0.52	100
총자산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계
2007	4.3	5.16	5.29	5.2	7.95	7.47	9.97	12.05	14.46	28.15	100
2008	4.57	4.31	4.71	6.39	7.26	8.28	9.83	11.17	16.02	27.46	100
2009	4.25	5.21	5.14	5.38	7.19	8.31	10.11	12.44	16.2	25.78	100
부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계
2007	3.41	4.41	5.71	7.27	7.66	6.94	9.92	13.61	15.83	25.25	100
2008	4.75	4.01	4.02	6.75	7.26	8.8	11.75	10.44	19.05	23.18	100
2009	4.41	5.24	4.85	5.46	7.07	8.09	10.62	12.33	16.23	25.7	100
순자산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계
2007	4.47	5.3	5.21	4.79	8.01	7.57	9.98	11.75	14.19	28.71	100
2008	4.53	4.37	4.85	6.32	7.26	8.17	9.43	11.33	15.4	28.34	100
2009	4.22	5.2	5.19	5.36	7.21	8.36	10.01	12.46	16.2	25.79	100

순자산의 증감은 해당기의 신규 저축, 즉 소득에서 소비지출을 차감한 금액에 기존 자산·부채의 가치변동분을 합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Ⅲ-2〉에서 소득에서 소비지출을 차감한 금액은 2007년과 2009년의 경우 각각 1,478만원과 1,355만원에 이른다. 이에 비해 순자산의 변화는 이에 크게 못 미치는 330만원 수준이다. 이는 신규 저축금액 중에서 각종 직접조세나 기부금 등의 비소비지출 항목에 지출되는 것을 차감하더라도, 신규저축이 (순)자산을 충분히 많이 증가시키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요인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자산의 물량보다는 미국 발 세계적 경제위기의 여파 등에 의한 자산 가격(가치)의 하락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Ⅲ-4〉를 보면 2007~2008년 동안 순자산은 가구당 평균 318만원 감소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 소득은 51만원 감소하고 소비지출은 265만원 증가하였다. 이는 2007~2008년 동안 가구당 평균 가구 흑자폭이 316만원 감소하였음을 의미한다.

이 규모는 위에서 살펴본 순자산의 감소폭(318만원)과 거의 일치한다. 이는 2007~2008년 동안 가구 흑자규모의 감소규모가 고스란히 순자산의 감소로 이어졌음을 시사한다. 이는 거꾸로, 가계의 흑자분만큼 여타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였음을 시사하는 것으로서, 신규저축이 (순)자산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표 III-4〉 총소득계층별 소득·소비·적자가구·자산·부채 변화·차
(재정패널자료 횡단면 기준)

(단위: 만원, %)

소득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2008-2007	-64	-112	-109	-80	-69	-42	-22	-74	31	32	-51
2009-2008	102	127	137	115	156	208	153	169	139	410	171
2009-2007	38	14	27	35	87	165	131	95	170	442	120
소비지출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2008-2007	202	120	73	94	207	216	387	277	688	385	265
2009-2008	-56	133	48	-48	-60	49	-12	64	-363	25	-22
2009-2007	145	253	122	45	148	265	376	341	325	410	243
적자가구 비율(%)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2008-2007	12.9	15.4	13	3.5	5.8	5.8	4.8	2.7	1.4	1	6.6
2009-2008	-6.6	-5	-8	-4.8	-3.2	-0.8	-2.1	0.7	-0.5	-0.6	-3.1
2009-2007	6.3	10.4	5	-1.3	2.6	5	2.6	3.4	1	0.4	3.5
총자산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2008-2007	483	-1863	-1321	2396	-1592	1554	-485	-2064	2988	-1964	-190
2009-2008	-383	2226	1242	-1755	320	629	1274	3466	1461	-1800	667
2009-2007	100	363	-79	641	-1271	2182	789	1402	4449	-3764	477
부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2008-2007	521	-84	-531	-94	-45	754	780	-955	1350	-414	128
2009-2008	-111	448	306	-448	-53	-239	-384	698	-974	945	19
2009-2007	411	364	-225	-542	-98	515	397	-257	376	531	147
순자산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2008-2007	-39	-1779	-790	2490	-1547	800	-1266	-1109	1639	-1550	-318
2009-2008	-272	1777	935	-1307	373	867	1658	2768	2435	-2745	648
2009-2007	-310	-1	146	1183	-1174	1667	392	1659	4073	-4295	330

Ⅲ. 소득계층별 분포 분석결과 55

〈표 Ⅲ-5〉 총소득계층별 소득·자산·부채 전년대비 증감률
(재정패널자료 횡단면 기준)

(단위: %)

소득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2007	-	-	-	-	-	-	-	-	-	-	-
2008	-20.4	-12.9	-8.0	-4.2	-2.9	-1.4	-0.6	-1.6	0.5	0.3	-1.6
2009	40.7	16.7	10.8	6.3	6.6	7.2	4.3	3.8	2.4	4.3	5.3
소비지출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2007	-	-	-	-	-	-	-	-	-	-	-
2008	28.0	14.0	6.3	6.6	12.9	11.6	19.5	11.6	26.3	10.5	14.5
2009	-6.1	13.7	3.9	-3.2	-3.3	2.4	-0.5	2.4	-11.0	0.6	-1.0
총자산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2007	-	-	-	-	-	-	-	-	-	-	-
2008	5.3	-17.1	-11.8	21.9	-9.5	9.9	-2.3	-8.1	9.8	-3.3	-0.9
2009	-4.0	24.7	12.6	-13.1	2.1	3.6	6.2	14.8	4.4	-3.1	3.2
부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2007	-	-	-	-	-	-	-	-	-	-	-
2008	44.6	-5.6	-27.1	-3.8	-1.7	31.6	22.9	-20.4	24.8	-4.8	3.7
2009	-6.6	31.4	21.4	-18.7	-2.1	-7.6	-9.2	18.8	-14.4	11.4	0.5
순자산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2007	-	-	-	-	-	-	-	-	-	-	-
2008	-0.5	-19.0	-8.6	29.4	-10.9	6.0	-7.2	-5.3	6.5	-3.1	-1.8
2009	-3.5	23.4	11.1	-11.9	3.0	6.1	10.1	14.1	9.1	-5.6	3.7

2) 세부항목별 분포

재정패널자료에서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이자·배당소득, 기타소득의 다섯 가지 시장소득 항목과, 이전소득으로서 사회보험수입과 민간보험수입 등 총 일곱 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표 III-6〉은 주요 소득구성 항목별 분포와 변화추이를 나타낸다. 〈표 III-2〉에서 보듯이 2007년 현재 가구당 평균 총소득은 3,307만원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근로소득은 2,110만원으로 총소득의 63.8%를 차지한다. 사업소득은 870만원으로 26.4%를 차지하며 나머지는 9.8%에 불과하다. 이 중 공공부문에 의한 이전소득(사회보험 수입)은 61만원으로 총소득의 1.8% 정도이다. 이런 비중 추이는 연도별로 유사하다. 사회보험수입의 총소득 대비 비중은 2009년에 2.2%(=76만원 ÷ 3,427만원)로 소폭 상승하였다.

〈표 III-2〉에서 보듯이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순)자산 규모가 증가하여 소득과 정(+)의 상관관계가 있다⁴⁾. 그렇지만 소득상대비(10분위배수, 2007년 기준 30.2)에 비해 자산상대비(10분위배수, 2007년 기준 6.4, 총소득의 경우에는 6.5)가 작고, 자산소득(부동산임대소득, 이자·배당소득 등)의 비중이 매우 작다. 이는 고소득층이라고 해서 반드시 자산소득의 비중이 중·저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정패널자료는 재산세 관련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기 때문에 재산세 과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직접 추정하여 분석하는 것이 곤란하다. 다만 소득계층별 상대자산격차가 상대소득격차보다 작기 때문에 재산과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비록 재산세의 세율구조가 누진체계를 이루고 있고, 소득분포와 자산분포 사이에 정(+)의 상관관계가 있지만, 소득계층별 소득증가율보다 재산세 부담 증가율이 더 높을 것으로 기대하

4) 상관관계에 대한 수치적 분석은 제Ⅳ장 제1절을 참조하기 바란다.

III. 소득계층별 분포 분석결과 57

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재산과세를 통해 정(+의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하는 것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성명재(2011)와 Sung & Park (2011), 재산세·종합토지세 과세자료와 가계동향조사자료를 결합(merge)한 자료를 분석한 성명재·김현숙(2006) 등의 연구에서도 재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매우 미미하여, 재산세의 세부담 구조가 사실상 소득재분배 중립적임을 보여주었던 것과 일맥상 통한다.

〈표 III-6〉 주요 소득종류별 분포 및 증감·차
(재정패널자료 횡단면 기준)

(단위: 만원)

근로소득	1분위 (A)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B)	평균	10분위배 수(B/A)
2007	47	278	762	1218	1471	1961	2467	2998	3965	5935	2110	127.4
2008	34	223	660	1104	1438	1871	2331	3226	4101	6433	2142	186.7
2009	39	318	782	1189	1624	1957	2602	3168	4301	6843	2282	174.0
사업소득	1분위 (A)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B)	평균	10분위배 수(B/A)
2007	39	201	309	421	684	740	870	1198	1378	2862	870	72.8
2008	37	178	288	474	615	736	978	863	1241	2059	747	56.1
2009	61	211	235	503	527	755	829	1055	1139	2513	783	41.3
부동산임 대소득	1분위 (A)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B)	평균	10분위배 수(B/A)
2007	10	32	48	36	53	20	49	62	56	246	61	24.3
2008	9	24	38	39	30	40	48	59	103	246	63	27.5
2009	6	36	49	34	57	66	50	92	120	234	74	39.4
이자·배 당소득	1분위 (A)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B)	평균	10분위배 수(B/A)
2007	4	6	10	6	29	4	18	26	27	85	21	21.8
2008	2	12	11	8	34	15	7	12	31	92	22	56.5
2009	4	9	20	11	17	12	22	17	36	57	20	14.0

〈표 Ⅲ-6〉의 계속

기타소득	1분위 (A)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B)	평균	10분위배 수(B/A)
2007	194	304	188	156	111	139	120	114	184	230	174	1.2
2008	153	272	191	137	126	138	141	117	129	488	189	3.2
2009	222	260	235	145	163	199	129	119	119	167	176	0.8
사회보험	1분위 (A)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B)	평균	10분위배 수(B/A)
2007	20	47	50	63	61	74	74	64	43	110	61	5.6
2008	13	48	75	51	91	84	64	96	70	159	75	12.1
2009	19	51	76	47	107	106	94	90	93	80	76	4.2
민간보험	1분위 (A)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B)	평균	10분위배 수(B/A)
2007	2	6	8	2	2	3	10	17	9	35	9	21.7
2008	3	4	2	8	9	14	17	33	17	58	17	22.2
2009	1	2	5	7	4	10	12	35	23	51	15	51.3
근로소득 (차)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2008-2007	-12	-55	-101	-115	-34	-89	-137	229	136	497	32	
2009-2008	5	95	122	86	186	86	272	-59	200	410	140	
2009-2007	-7	41	20	-29	152	-4	135	170	336	907	172	
사업소득 (차)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2008-2007	-3	-23	-21	53	-68	-4	108	-335	-137	-803	-123	
2009-2008	24	33	-53	29	-88	20	-149	192	-103	454	36	
2009-2007	22	10	-74	82	-156	16	-41	-143	-239	-349	-87	
보동산 입대소득 (차)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2008-2007	-1	-8	-10	3	-24	20	-1	-3	47	0	2	
2009-2008	-3	12	12	-5	27	26	2	33	18	-12	11	
2009-2007	-4	4	1	-2	3	46	2	30	64	-13	13	

<표 Ⅲ-6>의 계속

이자· 배당소득 (차)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2008-2007	-2	5	1	2	4	11	-10	-14	4	7	1	
2009-2008	2	-3	10	3	-17	-3	15	5	5	-35	-2	
2009-2007	0	2	10	5	-13	8	4	-9	9	-28	-1	
기타소득 (차)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2008-2007	-41	-32	3	-18	15	-1	21	3	-55	258	15	
2009-2008	69	-12	44	8	37	61	-12	2	-10	-321	-13	
2009-2007	28	-44	47	-10	52	60	9	4	-64	-63	2	
사회보험 (차)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2008-2007	-6	1	25	-12	30	10	-10	32	27	49	14	
2009-2008	6	4	0	-5	16	22	30	-6	24	-78	1	
2009-2007	-1	5	25	-16	46	32	20	26	50	-29	16	
민간보험 (차)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2008-2007	1	-1	-6	6	8	11	7	16	9	24	7	
2009-2008	-2	-3	3	-1	-6	-4	-5	2	5	-7	-2	
2009-2007	-1	-4	-3	5	2	7	2	18	14	17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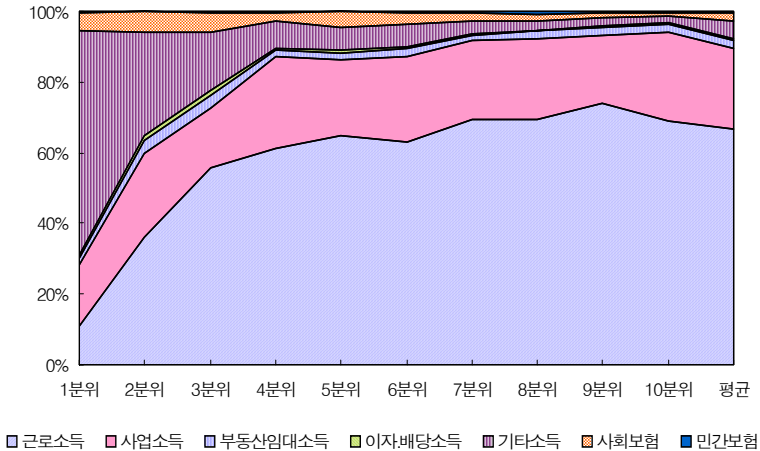
[그림 Ⅲ-5]는 소득분위별로 소득구성항목별 총소득 구성비를 보여 준다. 전체적으로 총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다만 소득계층별로는 소득구성패턴이 상당한 차이를 나타낸다. 1~2분위의 최저소득층에서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구성비가 낮은 반면 기타소득의 비중이 매우 높다. 평균적으로 총소득의 약 4분의 3을 차지하는 근로소득은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구성비가 크게 증가하여 5분위 이상의 중·고소득분위에서는 근로소득의 구성비가 전체의 3분의 2를 상회할 정도로 구성비가 압도적으로 높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1~2분위에서는 근로소득 비중이 매우 낮다. 이는 소득분위의 인적 구성상 이들 분위는 은퇴가구로 대변되는 노인가구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추정된다.

비중이 작지만, 사회보험은 저소득층에서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소득구성 비중이 작아지는 역진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는 사회보험의 특성상 주된 수혜대상이 노인층과 경제력이 미약한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과 관계가 깊다. 특히 노인층의 경우 상당수가 은퇴 등의 사유로 저소득분위에 속해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그림 III-5] 소득분위별 소득구성항목별 비중 분포
(2009년 재정패널, 횡단면 기준)

(단위: %)



〈표 III-7〉은 자산 종류별 분포와 변화추이를 나타낸다.

2007년 현재 가구당 평균 총자산은 2억 1,084만원으로 추정된다. 10분위/1분위의 상대비는 6.54(=59,343만원÷9,067만원)로 총소득의 31.7(=9,502만원÷315만원)보다 훨씬 작다. 이런 추이는 2008~2009년도에도 대동소이하다(이상 〈표 III-2〉 참조).

〈표 Ⅲ-7〉에서 보듯이 재정패널자료에서는 총자산은 크게 주택자산, 부동산자산, 채권으로서의 전세보증금, 각종 회원권, 기타자산, 금융자산의 여섯 가지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주택자산이 전체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며 부동산자산, 금융자산, 전세보증금의 순서로 비중이 높고 회원권 등은 비중이 미미하다. 전반적으로 주택, 부동산, 전세보증금 등 주로 부동산과 관련된 자산이 자산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2007년을 기준으로 할 때 자산종류별 10분위배수는 주택과 부동산 자산이 6.4 내외, 전세보증금은 4.8이다. 전세보증금의 10분위배수가 주택·부동산자산에 비해 낮은 것은 저소득층일수록 자가주택보다는 전세주택 등에 거주하는 비율이 더 높은 반면 고소득층일수록 그런 경향이 작아지기 때문이다. 금융자산의 10분위배수는 7.7로 주택자산·부동산자산이나 전세보증금에 비해 높다. 이는 한계소비성향 체감의 법칙에서 알 수 있듯이 고소득층일수록 가계수지 흑자 규모가 누적적으로 커지며 금융자산은 흑자가 장기에 걸쳐 누적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택 등의 자산에 대한 소유 욕구가 강한 것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된다.

전반적으로 주택자산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구당 평균 자산액이 떨어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반면에 부동산자산과 전세보증금은 증가하였다. 재정패널자료만으로는 각 자산의 가격과 물량 사이에 어떤 변화가 발생하였는지 요인별로 분해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요인을 찾기는 어렵지만,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적 경제위기로 촉발된 주택가격의 하락현상이 일반 가계의 주택자산 가치를 떨어뜨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부동산자산은 경제위기 등과 맞물려 가격상승에 따른 가치 증가를 예상하기 어려운 여건이 있지만 2008~2009년 사이에 가구당 평균 344만원에 이를 정도로 자산가치가 증가하였다. 이 부분은 논리적으로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지만, 설문조사 시 피조사원들의 현장 경험에 의하면 패널조사 기간이 경과하면서 피조사자와 면

접원 사이의 개인적 친밀감이 높아지면서 과거에 과소보고하거나 또는 보고를 누락하였던 부분을 실제와 가깝게 보고하는 빈도가 증가한 것에도 일부 요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세보증금의 자산가치가 증가한 것은, 최근 주택가격이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였으나 제2차 베이비붐 세대들이 결혼적령기에 도달하여 전세주택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고, 주택가격의 하락 현상뿐만 아니라 주택가격의 하향 안정화 추세가 향후에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 등이 뒤섞이면서 전세가격이 급등한 것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추정된다⁵⁾.

[그림 III-6]은 소득계층별 자산 구성 비중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자산을 크게 주택자산·부동산자산·전세보증금·회원권·기타자산·금융자산의 다섯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그림을 보면 주택자산, 부동산자산, 전세보증금, 금융자산 등의 비중이 골고루 높다. 그러나 소득분위별 비중의 차이는 크지 않다.

〈표 III-8〉은 부채 종류별 분포 및 변화추이를 나타낸다. 재정패널자료에서 부채는 주택대출금, 학자금대출금, 금융부채, 상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전세보증금 채무, 기타 부채의 다섯 가지로 분류된다. 대부분의 부채는 금융부채로 2007년 현재 가구당 평균 2,102만원에 이르며 총부채(3,433만원)의 61.2%에 이른다. 총부채의 10분위배수는 2007년 현재 7.4(2008~2009년에는 4.9~5.8)였다. 금융부채는 8.5로 좀 더 크다. 전세보증금의 10분위배수는 9.8(2007년 기준)로 좀 더 높다. 이는 주택이나 기타 자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를 임대하면서 보증금으로 수취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상환의무가 있는 전세보증금의 분포는 임대자산의 소유분포와도 관계가 깊다.

5) 최근 일각에서 이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상당히 설득력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재정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이런 문제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나 재정패널자료의 구축대상기간이 2007~2009년의 3개년에 불과하여 제2차 베이비붐 효과 등을 추론하는 것이 어려워 분석하지 못하였다.

III. 소득계층별 분포 분석결과 63

〈표 III-7〉 주요 자산종류별 분포 및 증감 (재정패널자료 횡단면 기준)

(단위: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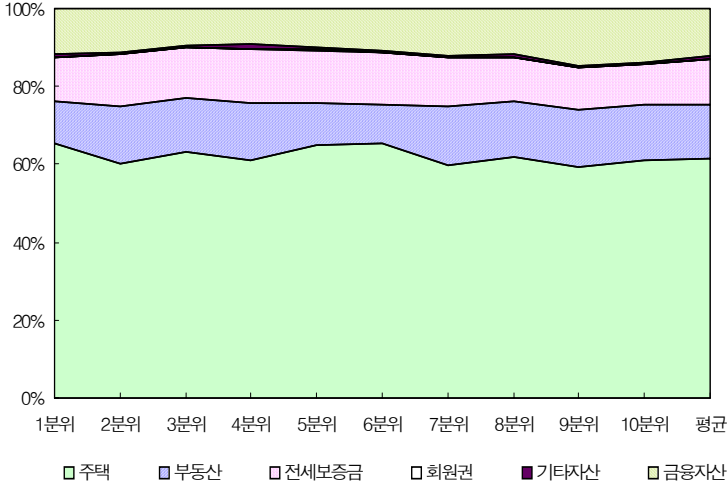
주택	1분위(A)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B)	평균	10분위배수(B/A)
2007	6,036	7,406	7,632	6,674	11,673	9,897	12,770	18,297	20,289	38,251	13,894	6.3
2008	6,118	6,502	6,167	8,485	8,991	11,989	13,545	15,788	21,867	36,230	13,567	5.9
2009	5,988	6,767	6,993	7,088	10,040	11,734	13,040	16,642	20,653	33,983	13,292	5.7
부동산	1분위(A)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B)	평균	10분위배수(B/A)
2007	1,196	1,990	1,494	1,781	1,968	2,126	3,123	1,865	3,025	8,028	2,660	6.7
2008	1,275	840	1,481	2,038	2,375	1,468	2,467	1,938	3,663	8,474	2,602	6.6
2009	1,004	1,658	1,549	1,697	1,683	1,766	3,248	3,785	5,142	7,930	2,946	7.9
전세보증금	1분위(A)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B)	평균	10분위배수(B/A)
2007	820	654	1,168	1,159	1,491	2,124	2,204	2,168	2,999	3,928	1,871	4.8
2008	1,313	853	1,155	1,524	2,083	1,866	2,398	2,895	3,817	4,759	2,266	3.6
2009	1,042	1,486	1,432	1,605	2,125	2,405	2,780	3,062	3,800	5,619	2,536	5.4
회원권	1분위(A)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B)	평균	10분위배수(B/A)
2007	13	0	0	49	1	0	18	7	3	389	48	31.0
2008	0	0	0	3	72	2	1	1	137	140	35	n.a.
2009	0	4	0	7	4	0	0	14	6	36	7	n.a.
기타 자산	1분위(A)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B)	평균	10분위배수(B/A)
2007	56	12	17	101	150	6	557	83	442	1,454	288	25.8
2008	19	45	26	68	141	67	153	114	273	197	110	10.2
2009	43	76	38	143	84	44	85	206	236	372	133	8.7
금융 자산	1분위(A)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B)	평균	10분위배수(B/A)
2007	946	809	841	1,194	1,481	1,590	2,346	2,992	3,726	7,293	2,322	7.7
2008	824	768	1,003	1,237	1,511	1,905	1,968	2,613	3,717	7,579	2,312	9.2
2009	1,090	1,243	1,062	1,059	1,557	1,976	2,653	3,105	5,097	7,638	2,648	7.0
주택(차)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2008-2007	82	-904	-1,465	1,811	-2,682	2,091	775	-2,509	1,577	-2,021	-327	

〈표 Ⅲ-7〉의 계속

주택	1분위 (A)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B)	평균	10분위 배수(B/A)
2009-2008	-130	265	826	-1,397	1,049	-254	-505	854	-1,214	-2,247	-276	
2009-2007	-48	-639	-640	414	-1,633	1,837	270	-1,655	363	-4,268	-603	
부동산(차)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2008-2007	79	-1,150	-13	257	407	-658	-656	73	637	446	-58	
2009-2008	-271	818	68	-342	-692	298	782	1,847	1,479	-544	344	
2009-2007	-192	-331	54	-85	-285	-360	126	1,920	2,116	-98	286	
전세 보증금(차)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2008-2007	493	199	-13	365	592	-258	194	727	819	831	395	
2009-2008	-271	633	277	82	42	539	382	168	-17	861	269	
2009-2007	222	832	264	446	634	281	576	895	802	1,692	664	
회원권(차)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2008-2007	-13	0	0	-47	71	2	-17	-6	134	-249	-13	
2009-2008	0	4	0	4	-68	-2	-1	13	-131	-104	-28	
2009-2007	-13	4	0	-43	3	0	-18	7	3	-353	-41	
기타자산 (차)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2008-2007	-37	33	9	-33	-8	62	-403	31	-169	-1,257	-177	
2009-2008	23	30	12	75	-57	-23	-69	92	-37	175	22	
2009-2007	-14	63	21	42	-66	38	-472	123	-206	-1,083	-155	
금융자산 (차)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2008-2007	-122	-41	162	43	30	315	-378	-379	-10	286	-10	
2009-2008	266	475	59	-178	46	71	685	492	1,381	59	336	
2009-2007	144	434	221	-134	76	386	307	113	1,371	345	326	

[그림 III-6] 소득분위별 자산구성항목별 비중 분포
(2009년 재정패널, 횡단면 기준)

(단위: %)



[그림 III-7]은 소득분위별 부채의 구성 비중을 보여준다. 전체적으로는 소득분위에 관계없이 금융부채와 전세보증금의 부채 구성비가 다른 종류의 부채를 압도한다. 각 부채의 분포 비중은 다소의 등락이 있기는 하지만 소득분위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표 III-9>는 소득세(근로소득세+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 교통세, 주세, 담배세(담배소비세, 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부담금)의 분포와 변화 추이를 나타낸다. 각 개별소비세는 본세의 부가세(surtaxes)를 포함한다.

재정패널자료에서 가구당 평균 근로소득세 부담액은 48만원으로 보고되었다. 2007년의 추계 가구수가 1,642만 가구이므로 가구당 세부담 평균 48만원을 곱하면 근로·종합소득세의 세수는 약 7조 9천억원에 이른다. 그런데 국세통계연보에 나타난 최근의 연간 근로·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이 약 25조원 수준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가구당 평균 세부

담은 실제에 비해 약 3분의 1 정도만 보고되었다고 볼 수 있다⁶⁾. 2007년 현재 재정패널자료에 담긴 5,014가구 가운데 근로·종합소득세 부담이 양(+)의 값을 가지는 가구는 1,678가구에 불과하다는 점도 상당수의 가구에서 근로·종합소득세 부담이 과소하게 보고되거나 보고가 누락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2008~2009년의 가구당 근로·종합소득세 부담액도 40만~44만원에 불과한 것을 볼 때 2008~2009년에도 소득세의 과소보고 경향이 상당히 심함을 알 수 있다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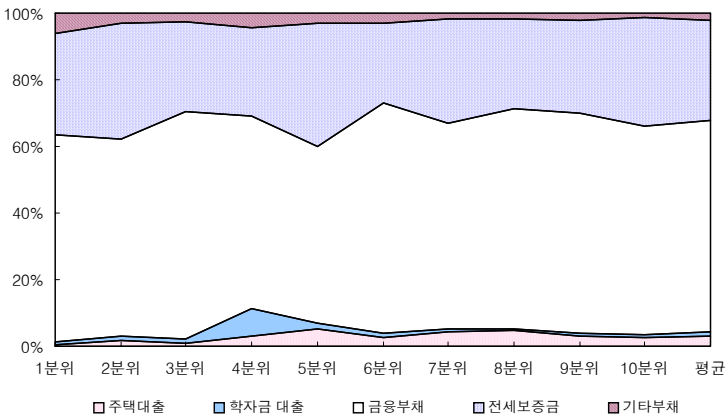
-
- 6) 국제통계연보에 의하면 2007년 귀속분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결정세액(세수)은 각각 14조 1,138억원과 11조 3,893억원으로 총 25조 5,030억원에 달한다. 따라서 재정패널을 토대로 추계한 근로·종합소득세의 2007년 총세수 7.9조원은 전체의 약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재정패널자료에서 소득세 부담액이 과소하게 보고된 것은 주로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하나는 소득세 부담액에 대한 보고 자체를 누락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보고는 하였지만 보고액이 실제보다 작은 경우이다. 소득세 부담의 과소보고는 후자보다는 전자의 경우가 더 지배적인 것으로 추측된다.
- 7) 재정패널자료에서 소득세가 과소보고된 이유를 구분하면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소득세를 부담하였다고 응답하였으나 소득세 부담액을 보고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세부담이 0원으로 계산된 경우이고 둘째는, 소득세 부담액을 보고하였으나 실제보다 과소하게 보고한 경우이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자료는 소득 및 소비지출 관련 정보와 가구의 인적 특성에 대한 정보가 매우 상세하고 비교적 정확하게 보고되어 있어 소득세를 추정(impute)하는 것이 용이하지만, 재정패널자료는 세금에 대한 1회성 서베이를 통해 자료가 작성되는 만큼 소비지출 항목에 대한 정보 등이 부족하여 해당 자료가 담고 있는 정보량이 소득세 부담액을 추정할 수 있는 데 필요한 최소 수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세부담을 추정할 수 없었다. 따라서 과소보고된 소득세를 이용하여 세부담 분포 또는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 등을 논함에 있어서는 불가피하게 편의(bias)가 개입된다. 이 가운데 과소보고에 의한 부분은 소득세 부담액을 확대해 줌으로써 상당한 정도 편의를 교정할 수 있으나, 보고가 누락된 경우에는 여전히 편의가 존재한다. 현재 상태에서 주어진 정보만을 가지고는 편의를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지만, 가상적으로 소득세 부담액을 실제에 가깝도록 조정하면 편의의 정도는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 Ⅲ-8>의 계속

주택대출	1분위 (A)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B)	평균	10분위 배수(B/A)
2009-2008	-33	6	-8	133	-3	0	-27	13	-9	-16	6	
2009-2007	5	11	-4	108	3	16	-3	-1	2	55	19	
금융부채 (차)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2008-2007	99	-44	-263	-374	-8	447	406	-892	465	-912	-108	
2009-2008	206	203	436	-116	-129	143	-71	1,039	98	894	270	
2009-2007	304	159	173	-489	-137	589	336	148	563	-18	162	
전세보증금 (차)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2008-2007	361	-31	116	265	-2	269	323	178	998	319	279	
2009-2008	-125	361	-97	-333	253	-176	18	-11	-697	299	-51	
2009-2007	237	329	19	-68	251	93	341	167	301	618	229	
기타부채 (차)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2008-2007	-129	-97	-241	-15	-73	-61	-37	-252	-151	-104	-116	
2009-2008	47	1	27	-21	7	48	30	25	115	72	35	
2009-2007	-82	-96	-214	-37	-66	-14	-6	-227	-36	-32	-81	

[그림 Ⅲ-7] 소득분위별 부채구성항목별 비중 분포
(2009년 재정패널, 횡단면 기준)

(단위: %)



부가가치세의 가구당 평균 세부담은 111만원(2007년)~126만원(2009년)으로 추정된다. 이를 전체 세수로 환산하면 대략 20조원 수준이다. 부가가치세 세수의 약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나머지 부분은 비가계부문에서의 최종소비에 의한 부가가치세 부담으로 볼 수 있다⁸⁾.

교통세, 주세, 담배세의 가구당 부담액은 각각 17만~19만원, 7만~9만원, 17만~19만원으로 추정된다. 이들 모두 해당 세목(부가세 포함)의 세수규모에 비해 상당히 과소하다. 비가계부문에서 소비된 부분이 상당히 크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주세의 경우 음식점이나 주점 등에서 판매되는 주류에 부과되는 주세가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담배의 경우에는 흡연자들이 흡연을 과소하게 보고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소득세의 10분위 배율은 최소 119배(2007년) 또는 그 이상(2008~2009년)에 이르는 반면 소비세의 경우에는 10분위 배율이 7 내외(부가가치세), 6~12(교통세), 3~6(주세), 2 내외(담배세)에 이를 정도로 소득계층별 세부담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매우 작다. <표 Ⅲ-10>에서 보듯이 소득 1분위를 제외하면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의 실효세부담률은 고소득분위로 갈수록 상승한다. 이는 이들 소득세의 세부담 분포가 매우 누진적임을 시사한다.

<표 Ⅲ-2>에서 보듯이 총소득의 10분위배수는 약 30 수준이다⁹⁾. 이에 비해 각종 소비세의 10분위배수는 이보다 훨씬 작다. 이는 소비세 부담이 역진적임을 시사한다¹⁰⁾.

8) 부가가치세 부담액은 정수실적을 기준으로 환산한 부담액에 비해 가구별 부담추정액이 작게 나타난 이유로, 비가계부문에서의 최종소비 외에도, 소비지출에 대한 측정오차(measurement error)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부분도 있다. 아울러 재정패널자료 조사시에 소비지출 상세 항목에 이를 정도로 세부적인 사항을 조사할 수 없어 소비지출 항목이 면세부문과 과세부문으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음에 따라 나타나는 추정 오차도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9) 가계동향 조사자료 등을 분석한 경우에 비해 10분위 배수가 훨씬 크다. 이는 재정패널자료에서 저소득층의 소득이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표 III-9〉 주요 세목별 분포 및 증감 (재정패널자료 횡단면 기준)

(단위: 만원)

근로·사업소득세	1분위 (A)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B)	평균	10분위 배수(B/A)
2007	2	1	2	5	11	24	38	60	102	238	48	121.9
2008	0	1	1	4	11	10	24	49	78	225	40	914.8
2009	0	1	2	5	7	22	20	31	88	269	44	1,879.7
부가가치세	1분위 (A)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B)	평균	10분위 배수(B/A)
2007	33	44	62	83	97	113	123	150	167	242	111	7.4
2008	42	50	66	89	109	127	147	167	211	268	128	6.4
2009	39	57	68	86	106	130	146	171	188	269	126	6.9
교통세	1분위 (A)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B)	평균	10분위 배수(B/A)
2007	3	4	8	11	16	19	20	24	28	37	17	13.7
2008	4	7	9	13	16	23	23	26	31	39	19	9.9
2009	6	7	9	13	15	22	27	30	28	37	19	6.1
주세	1분위 (A)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B)	평균	10분위 배수(B/A)
2007	3	4	5	9	10	9	11	10	11	17	9	6.2
2008	3	3	4	7	8	9	10	10	10	9	7	2.5
2009	2	4	5	7	7	8	9	10	8	11	7	5
담배세	1분위 (A)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B)	평균	10분위 배수(B/A)
2007	8	13	16	22	23	22	23	22	19	21	19	2.6
2008	7	13	14	19	22	19	23	22	19	17	18	2.6
2009	9	12	15	18	22	19	19	20	17	16	17	1.8

- 10) 저소득층의 소득이 실제보다 크게 과소하게 보고됨에 따라 각종 소비세 부담의 역진성은 실제보다 다소 과장되게 나타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Ⅲ. 소득계층별 분포 분석결과 71

〈표 Ⅲ-9〉의 계속

근로·사업 소득세(차)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2008-2007	-2	0	-1	-1	0	-14	-14	-11	-24	-12	-8
2009-2008	0	0	1	0	-4	12	-5	-18	11	43	4
2009-2007	-2	-1	0	-1	-4	-3	-18	-29	-14	31	-4
부가가치 세(차)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2008-2007	9	6	4	5	12	13	24	17	44	25	16
2009-2008	-3	7	3	-3	-4	3	-1	4	-23	2	-1
2009-2007	7	13	6	3	9	16	23	21	21	27	15
교통세 (차)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2008-2007	1	3	1	2	0	4	3	1	3	3	2
2009-2008	2	0	0	-1	-1	-1	3	4	-3	-3	0
2009-2007	3	3	1	1	0	3	7	5	0	0	2
주세(차)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2008-2007	1	-1	-1	-2	-2	-1	-1	-1	-1	-9	-2
2009-2008	-1	1	1	-1	-1	0	-1	0	-2	2	0
2009-2007	-1	0	-1	-3	-3	-1	-2	-1	-3	-6	-2
담배세 (차)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2008-2007	-1	0	-2	-3	-2	-3	0	0	-1	-4	-2
2009-2008	2	-1	1	-1	1	0	-4	-2	-2	-1	-1
2009-2007	1	-1	-1	-4	-1	-3	-4	-2	-2	-5	-2

〈표 Ⅲ-10〉을 보면 2007~2008년 사이에 근로소득세가 감소(가구당 평균 37만 → 34만원) 하였던가 2008~2009년에는 다소 증가(34만 → 36만원) 하였다. 2007~2009년 동안 근로소득이 꾸준히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비대칭적인 결과가 나타난 것은 2007년의 소득세 제 개편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표 III-10〉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의 분포 및 실효세부담
(재정패널자료 횡단면 기준)

(단위: 만원, %)

근로소득세 (a)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2007	2	0	2	3	7	18	23	44	80	190	37
2008	0	0	1	2	5	9	17	36	69	203	34
2009	0	0	1	3	4	9	14	26	63	244	36
근로소득 (b)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2007	47	278	762	1218	1471	1961	2467	2998	3965	5935	2110
2008	34	223	660	1104	1438	1871	2331	3226	4101	6433	2142
2009	39	318	782	1189	1624	1957	2602	3168	4301	6843	2282
실효세율 (a/b, %)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2007	3.64	0.11	0.21	0.27	0.46	0.94	0.94	1.47	2.02	3.2	1.75
2008	0.52	0.07	0.11	0.16	0.34	0.46	0.72	1.1	1.68	3.15	1.59
2009	0.09	0.02	0.16	0.21	0.25	0.46	0.52	0.81	1.46	3.57	1.59
사업소득세 (c)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2007	8	13	16	22	23	22	23	22	19	21	19
2008	7	13	14	19	22	19	23	22	19	17	18
2009	9	12	15	18	22	19	19	20	17	16	17
사업소득 (d)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2007	39	201	309	421	684	740	870	1198	1378	2862	870
2008	37	178	288	474	615	736	978	863	1241	2059	747
2009	61	211	235	503	527	755	829	1055	1139	2513	783
실효세율 (c/d, %)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2007	0.66	0.48	0.27	0.49	0.59	0.77	1.71	1.34	1.59	1.68	1.32
2008	0.19	0.54	0.24	0.53	0.94	0.2	0.77	1.54	0.7	1.11	0.86
2009	0.17	0.28	0.38	0.43	0.53	1.66	0.74	0.49	2.24	0.98	1.03

나. 소득·자산·부채 결합분포(2007년 소득계층 기준, 패널기준)

본항에서는 2007년 소득계층을 기준으로 2007~2009년의 소득·자산·부채 결합분포를 추정하였다(〈표 Ⅲ-11〉~〈표 Ⅲ-19〉 참조). 대상 가구는 2007~2009년의 3년 모두 자료가 존재하는 4,112가구로 한정하였다. 매년 탈락가구가 발생하는데 가구탈락이 무작위(random)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2007년 소득순위에 기초한 패널기준 분포 특성의 경우에는 횡단면 특성과 다른 특성을 보일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2007년 소득순위를 기준으로 2007~2009년의 총소득 평균을 추정한 결과, 가구당 총소득 평균은 2007년 3,245만원에서 2008년에 3,254만원으로 0.3% 증가하였으며, 2009년에는 3,405만원으로 4.6% 증가하였다. 2007년의 소득평균은 3,254만원으로 2007년 횡단면의 3,307만원보다 53만원 적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2008~2009년 동안 발생하였던 가구 탈락이 2007년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가구의 탈락현상이 보다 두드러졌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패널기준에 의한 경우 2009년에 가구당 평균소득이 3,405만원으로 횡단면의 경우(3,427만원)에 비해 22만원으로 그 차이가 줄어든 것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차이는 일부지만 패널자료의 고령화 효과(aging effect)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고령화 효과란 생애주기효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소득상승기 연령대에 의한 소득증가현상의 상대적 크기가 소득하강기 연령대에 의한 소득감소현상의 상대적 크기보다 더 컸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대한 검증은 성명재·박기백(2009)의 연구방법 등을 이용하여 고령화 효과를 분리추정함으로써 분해할 수 있다.

〈표 Ⅲ-11〉을 보면, 총소득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저소득층의 평균소득은 상승하는 반면 고소득층의 평균소득은 두드러지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평균지향효과(mean reversion effect)가 나타났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횡단면분석의 경우에는 각 시점마다 소득순위를 재배열하기 때문에, 횡단면 특성이 유지되는 한 이런 현상이 잘 나타나지 않지만, 패널형식으로 소득순위를 특정 시점에 고정시키는 경우에는 두 시점 사이에 나타나는 소득이동성과 그에 기반한 평균지향효과로 인해 횡단면 분석결과와는 다른 현상이 나타난다.

횡단면 분석에 비해 패널기준은 전반적으로 소득과 자산의 평균값 증가율이 대체로 더 높다. 이는 패널 특성에 의한 고령화 효과가 크게 작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즉, 추정오차(estimation error)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그런 차이는 일종의 생애주기에 의한 고령화 효과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표 Ⅲ-11〉 총소득계층별 소득·소비·적자가구·자산·부채
분포(재정패널자료 패널 기준)

(단위: 만원, %)

소득	1분위 (A)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B)	평균	10분위 배수 (B/A)
2007	326	848	1,345	1,885	2,408	2,945	3,615	4,455	5,561	9,063	3,245	27.8
2008	795	1,041	1,601	2,105	2,614	3,043	3,592	4,301	5,409	8,037	3,254	10.1
2009	898	1,221	1,824	2,203	2,838	3,217	3,689	4,540	5,511	8,108	3,405	9.0
소비 지출	1분위 (A)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B)	평균	10분위 배수 (B/A)
2007	638	839	1,146	1,404	1,596	1,818	1,987	2,383	2,638	3,488	1,794	5.5
2008	776	1,015	1,350	1,686	1,905	2,093	2,492	2,795	3,227	3,952	2,129	5.1
2009	749	1,063	1,412	1,646	1,921	2,219	2,397	2,707	3,047	3,735	2,090	5.0
적자가 구비율	1분위 (A)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B)	평균	10분위 배수 (B/A)
2007	60.9	30.8	22.8	16.7	8.5	5.3	3.1	1.7	1.1	0.5	15.1	0.0
2008	45.6	40.9	29.0	28.6	23.0	15.4	16.3	13.9	9.5	7.5	23.0	0.2
2009	37.7	32.4	22.6	23.5	21.0	16.8	15.4	9.4	10.5	8.6	19.8	0.2

Ⅲ. 소득계층별 분포 분석결과 75

〈표 Ⅲ-11〉의 계속

총자산	1분위 (A)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B)	평균	10분위 배수 (B/A)
2007	8,631	10,410	10,769	10,975	16,310	15,143	21,110	25,132	29,231	56,240	20,395	6.5
2008	7,490	10,248	11,179	12,071	15,620	15,876	23,437	27,852	29,474	56,283	20,953	7.5
2009	8,467	10,995	12,725	12,194	15,974	18,187	23,466	29,734	33,654	55,753	22,115	6.6
부채	1분위 (A)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B)	평균	10분위 배수 (B/A)
2007	1,206	1,410	1,740	2,631	2,515	2,505	3,528	4,859	5,230	8,559	3,418	7.1
2008	1,133	1,402	1,842	2,221	3,388	2,989	4,153	5,312	5,123	9,574	3,714	8.5
2009	1,087	1,241	2,191	1,832	2,811	3,164	4,032	4,852	6,311	9,216	3,674	8.5
순자산	1분위 (A)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B)	평균	10분위 배수 (B/A)
2007	7,425	9,000	9,029	8,344	13,795	12,638	17,582	20,273	24,002	47,681	16,977	6.4
2008	6,357	8,846	9,337	9,850	12,231	12,887	19,284	22,540	24,351	46,709	17,239	7.3
2009	7,380	9,754	10,534	10,362	13,163	15,023	19,434	24,882	27,343	46,537	18,441	6.3

〈표 Ⅲ-11〉을 보면 2007~2008년 사이에 총소득은 1~6분위에서 증가한 반면 7~10분위에서는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논의한 평균지향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2007~2008년 사이에 적자가구의 비율이 최저소득층인 1분위에서 감소한 반면 그 외의 분위에서는 증가한 것과, 2008~2009년 사이에 대다수의 가구에서 적자가구 비율이 감소하는 가운데 최고 소득층인 10분위에서 적자가구 비율이 소폭이나마 상승한 것도 일종의 '평균지향효과'의 영향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표 III-12〉 총소득계층별 소득·소비·적자가구·자산·부채 점유비중
(재정패널자료 패널 기준)

(단위: %)

소득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계
2007	1.00	2.61	4.14	5.81	7.42	9.08	11.14	13.73	17.14	27.93	100
2008	2.44	3.20	4.92	6.47	8.03	9.35	11.04	13.22	16.62	24.70	100
2009	2.64	3.58	5.36	6.47	8.34	9.45	10.83	13.33	16.18	23.81	100
소비지출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계
2007	3.56	4.68	6.39	7.83	8.90	10.14	11.08	13.28	14.70	19.45	100
2008	3.65	4.77	6.34	7.92	8.95	9.83	11.70	13.13	15.16	18.56	100
2009	3.58	5.09	6.76	7.88	9.20	10.62	11.47	12.95	14.58	17.88	100
적자가구 비율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계
2007	40.22	20.37	15.07	11.05	5.60	3.47	2.06	1.12	0.75	0.31	100
2008	19.84	17.81	12.64	12.45	10.00	6.70	7.09	6.05	4.16	3.26	100
2009	19.05	16.37	11.43	11.85	10.62	8.48	7.77	4.75	5.31	4.37	100
총자산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계
2007	4.23	5.10	5.28	5.38	8.00	7.42	10.35	12.32	14.33	27.58	100
2008	3.57	4.89	5.34	5.76	7.45	7.58	11.19	13.29	14.07	26.86	100
2009	3.83	4.97	5.75	5.51	7.22	8.22	10.61	13.45	15.22	25.21	100
부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계
2007	3.53	4.13	5.09	7.70	7.36	7.33	10.32	14.22	15.30	25.04	100
2008	3.05	3.77	4.96	5.98	9.12	8.05	11.18	14.30	13.79	25.78	100
2009	2.96	3.38	5.96	4.99	7.65	8.61	10.98	13.21	17.18	25.09	100
순자산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계
2007	4.37	5.30	5.32	4.92	8.13	7.44	10.36	11.94	14.14	28.09	100
2008	3.69	5.13	5.42	5.71	7.10	7.48	11.19	13.08	14.13	27.09	100
2009	4.00	5.29	5.71	5.62	7.14	8.15	10.54	13.49	14.83	25.24	100

Ⅲ. 소득계층별 분포 분석결과 77

〈표 Ⅲ-13〉 총소득계층별 소득·소비·적자가구·자산·부채
변화(차)(재정패널자료 패널 기준)

(단위: 만원, %)

소득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2008-2007	468	193	257	220	206	98	-23	-154	-152	-1026	9
2009-2008	104	179	223	98	224	174	97	239	102	71	151
2009-2007	572	372	480	318	430	272	74	85	-50	-955	160
소비지출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2008-2007	138	176	204	282	309	275	505	413	590	464	336
2009-2008	-27	48	62	-40	16	126	-95	-89	-181	-217	-40
2009-2007	111	224	266	242	325	401	410	324	409	247	296
적자가구 비율(%)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2008-2007	-15.3	10.1	6.2	11.9	14.5	10.1	13.2	12.2	8.4	7	7.8
2009-2008	-7.9	-8.5	-6.4	-5.1	-2	1.4	-0.9	-4.5	1	1.2	-3.2
2009-2007	-23.2	1.6	-0.2	6.7	12.5	11.5	12.3	7.7	9.4	8.2	4.7
총자산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2008-2007	-1142	-162	410	1096	-690	733	2327	2719	243	42	558
2009-2008	977	747	1545	123	354	2312	29	1882	4180	-530	1162
2009-2007	-165	585	1955	1219	-336	3044	2356	4601	4423	-487	1720
부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2008-2007	-74	-8	102	-410	874	484	625	452	-107	1015	295
2009-2008	-45	-161	349	-389	-577	175	-121	-459	1188	-358	-40
2009-2007	-119	-170	450	-799	297	660	504	-7	1082	657	255
순자산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2008-2007	-1068	-153	308	1506	-1564	249	1702	2267	350	-972	262
2009-2008	1023	908	1197	512	931	2136	150	2341	2991	-172	1202
2009-2007	-46	755	1505	2017	-633	2385	1853	4608	3341	-1144	1464

〈표 III-14〉 총소득계층별 소득·자산·부채 전년대비 증감률
(재정패널자료 패널 기준)

(단위: %)

소득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2007	-	-	-	-	-	-	-	-	-	-	-
2008	143.6	22.7	19.1	11.7	8.6	3.3	-0.6	-3.5	-2.7	-11.3	0.3
2009	13.0	17.2	14.0	4.7	8.6	5.7	2.7	5.6	1.9	0.9	4.6
소비지출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2007	-	-	-	-	-	-	-	-	-	-	-
2008	21.7	21.0	17.8	20.1	19.4	15.1	25.4	17.3	22.4	13.3	18.7
2009	-3.5	4.8	4.6	-2.4	0.8	6.0	-3.8	-3.2	-5.6	-5.5	-1.9
총자산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2007	-	-	-	-	-	-	-	-	-	-	-
2008	-13.2	-1.6	3.8	10.0	-4.2	4.8	11.0	10.8	0.8	0.1	2.7
2009	13.0	7.3	13.8	1.0	2.3	14.6	0.1	6.8	14.2	-0.9	5.5
부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2007	-	-	-	-	-	-	-	-	-	-	-
2008	-6.1	-0.6	5.8	-15.6	34.8	19.3	17.7	9.3	-2.0	11.9	8.6
2009	-4.0	-11.5	18.9	-17.5	-17.0	5.9	-2.9	-8.6	23.2	-3.7	-1.1
순자산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2007	-	-	-	-	-	-	-	-	-	-	-
2008	-14.4	-1.7	3.4	18.0	-11.3	2.0	9.7	11.2	1.5	-2.0	1.5
2009	16.1	10.3	12.8	5.2	7.6	16.6	0.8	10.4	12.3	-0.4	7.0

〈표 III-15〉에서는 주요 소득항목별로 패널기준의 2007년 소득계층별 분포 및 변화 추이를 살펴본다. 시장소득, 즉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배당소득,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2007년 소득 순위를 기준으로 소득분위를 고정시켰을 경우, 거의 대부분 공통적으로 평균지향 효과, 즉 고소득층에서는 소득수준이 대체로 정체 또는 감소하는 반면, 저소득층에서는 이와 반대로 정체 또는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반면에 사회보험(공적보험)이나 민간보험 수입의 경우에는 그런 효과를 찾기 어려웠다. 즉, 이들 보험수입의 경우에는 계층별 변화가 불규칙적인 모습을 나타냈다.

III. 소득계층별 분포 분석결과 79

〈표 III-15〉 주요 소득종류별 분포와 차(재정패널자료 패널 기준)

(단위: 만원)

근로소득	1분위 (A)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B)	평균	10분위 배수(B/A)
2007	49	241	694	1148	1463	1989	2482	3044	3844	5618	2057	115.7
2008	246	368	816	1290	1555	2085	2431	2983	3957	5551	2128	22.6
2009	309	493	1000	1362	1705	2174	2508	3060	3987	5530	2213	17.9
사업소득	1분위 (A)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B)	평균	10분위 배수(B/A)
2007	42	213	344	467	687	696	867	1112	1389	2769	859	65.9
2008	132	278	423	512	716	665	865	977	1073	1876	752	14.2
2009	176	240	434	496	710	679	864	1127	1187	2105	802	11.9
부동산 임대소득	1분위 (A)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B)	평균	10분위 배수(B/A)
2007	11	33	50	33	39	23	42	61	58	203	55	18.3
2008	48	42	47	44	50	26	65	93	62	186	66	3.8
2009	42	59	59	45	127	55	74	87	84	152	78	3.6
이자·배당 소득	1분위 (A)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B)	평균	10분위 배수(B/A)
2007	4	8	11	7	19	4	12	30	22	91	21	25.5
2008	12	8	8	11	31	8	13	22	49	81	24	6.9
2009	10	8	10	30	2	19	10	34	53	50	22	5.1
기타소득	1분위 (A)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B)	평균	10분위 배수(B/A)
2007	196	309	184	157	121	156	121	121	190	221	178	1.1
2008	304	274	228	159	127	121	113	129	196	178	183	0.6
2009	316	352	246	174	157	177	139	125	102	99	189	0.3
공적보험	1분위 (A)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B)	평균	10분위 배수(B/A)
2007	23	40	52	70	76	74	81	71	50	121	66	5.3
2008	51	60	60	77	117	103	74	85	59	132	82	2.6
2009	45	62	69	83	121	98	67	100	78	131	86	3

〈표 III-15〉의 계속

민간보험	1분위 (A)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B)	평균	10분위 배수(B/A)
2007	2	4	8	4	2	3	9	16	8	40	10	20.5
2008	1	11	18	13	17	34	31	12	13	33	18	22.6
2009	1	6	7	13	16	15	25	7	20	41	15	40.4
근로소득(차)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2008-2007	197	127	122	142	92	96	-51	-60	113	-67	71	
2009-2008	63	125	183	72	149	89	77	77	30	-21	85	
2009-2008	261	253	306	215	242	185	26	16	143	-88	156	
사업소득(차)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2008-2007	90	65	78	45	29	-31	-2	-135	-316	-893	-107	
2009-2008	44	-39	11	-16	-6	13	0	150	114	229	50	
2009-2008	134	26	89	29	23	-18	-3	16	-202	-664	-57	
부동산 임대소득(차)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2008-2007	37	9	-3	11	12	4	23	32	4	-17	11	
2009-2008	-6	17	11	2	76	29	9	-7	22	-34	12	
2009-2008	31	27	8	12	88	32	32	25	26	-51	23	
이자·배당 소득(차)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2008-2007	8	0	-3	4	11	4	1	-9	27	-10	3	
2009-2008	-2	0	2	19	-29	11	-3	13	4	-32	-2	
2009-2008	6	0	-1	23	-17	14	-2	4	31	-42	2	
기타소득(차)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2008-2007	108	-35	44	1	6	-34	-9	8	6	-42	5	
2009-2008	11	78	18	15	30	55	27	-4	-94	-79	6	
2009-2008	120	43	62	17	36	21	18	3	-88	-122	11	
공적보험(차)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2008-2007	28	20	8	8	41	29	-7	14	9	11	16	
2009-2008	-6	2	10	5	4	-5	-7	15	19	-1	4	
2009-2008	22	22	17	13	45	24	-14	29	28	11	20	
민간보험(차)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2008-2007	0	7	10	9	15	31	22	-5	5	-7	9	
2009-2008	0	-5	-11	0	-1	-18	-6	-4	7	8	-3	
2009-2008	-1	2	-1	9	14	12	16	-9	12	1	6	

소득의 경우와 달리 자산이나 부채의 경우에는 소득계층을 2007년 기준으로 고정시켜 놓음에 따라, 변화 추이가 매우 불규칙적으로 나타나며, 평균지향효과도 찾기 어려웠다(〈표 III-16〉~〈표 III-17〉 참조).

Ⅲ. 소득계층별 분포 분석결과 81

〈표 Ⅲ-16〉 주요 자산종류별 분포와 차(재정패널자료 패널 기준)

(단위: 만원)

주목자산	1분위 (A)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B)	평균	10분위 배수(B/A)
2007	5605	7357	6784	6189	11523	9660	12824	17859	19435	36412	13365	6.5
2008	5221	6502	7428	7683	10868	10845	15165	19262	19933	34033	13694	6.5
2009	5508	6934	7255	7731	10918	11750	14772	19748	20221	32831	13767	6.0
부동산자산	1분위 (A)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B)	평균	10분위 배수(B/A)
2007	1430	1584	2118	2174	1871	1778	3187	2087	2931	7343	2650	5.1
2008	932	2091	1444	1511	1648	1381	3790	2814	2176	9444	2723	10.1
2009	1224	2037	2987	1514	1695	1767	3314	3567	5122	9544	3277	7.8
전세보증금	1분위 (A)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B)	평균	10분위 배수(B/A)
2007	702	679	1009	1146	1464	2089	2170	1981	2632	3755	1763	5.3
2008	697	768	1292	1527	1445	2009	1937	2291	3297	5307	2057	7.6
2009	1069	936	1263	1539	1776	2419	2418	2448	3763	5399	2303	5.1
회원권	1분위 (A)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B)	평균	10분위 배수(B/A)
2007	15	0	0	60	0	0	22	9	4	309	42	20.1
2008	0	0	0	2	0	0	0	12	12	305	33	n.a.
2009	5	0	0	4	0	0	8	4	0	36	6	7
기타자산	1분위 (A)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B)	평균	10분위 배수(B/A)
2007	23	13	23	122	11	6	632	100	509	1260	270	55.9
2008	67	33	50	25	51	134	173	181	291	252	126	3.8
2009	5	18	60	15	73	202	249	154	325	389	149	78.4
금융자산	1분위 (A)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B)	평균	10분위 배수(B/A)
2007	856	777	835	1284	1442	1611	2274	3096	3720	7161	2306	8.4
2008	572	855	966	1323	1607	1506	2373	3292	3765	6941	2320	12.1
2009	655	1069	1159	1390	1512	2049	2705	3814	4223	7554	2613	11.5

〈표 III-16〉의 계속

주택자산 (차)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2008-2007	-384	-855	644	1494	-655	1186	2341	1402	499	-2379	329
2009-2008	287	432	-173	48	50	904	-392	486	287	-1202	73
2009-2008	-97	-423	472	1542	-605	2090	1948	1888	786	-3581	402
부동산자산 (차)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2008-2007	-498	507	-674	-663	-223	-396	603	727	-756	2101	73
2009-2008	293	-54	1543	3	47	386	-476	752	2947	100	554
2009-2008	-206	453	869	-659	-176	-10	127	1480	2191	2201	627
전세보증금 (차)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2008-2007	-5	89	282	381	-18	-79	-233	310	665	1552	294
2009-2008	372	168	-29	12	331	410	481	157	466	93	246
2009-2008	367	257	253	393	312	331	248	467	1131	1645	540
회원권(차)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2008-2007	-15	0	0	-58	0	0	-22	3	8	-4	-9
2009-2008	5	0	0	2	0	0	8	-8	-12	-269	-27
2009-2008	-10	0	0	-57	0	0	-14	-5	-4	-273	-36
기타자산 (차)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2008-2007	45	20	26	-98	40	127	-460	81	-218	-1008	-144
2009-2008	-62	-15	11	-9	22	69	77	-27	35	136	24
2009-2008	-18	6	37	-107	62	196	-383	54	-184	-871	-121
금융자산 (차)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2008-2007	-284	78	131	39	165	-105	99	196	45	-220	14
2009-2008	83	215	193	67	-95	542	332	522	458	613	293
2009-2008	-201	292	324	107	70	438	431	718	502	393	307

III. 소득계층별 분포 분석결과 83

〈표 III-17〉 주요 부채종류별 분포와 차(재정패널자료 패널 기준)

(단위: 만원)

주채대출	1분위 (A)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B)	평균	10분위 배수(B/A)
2007	76	18	249	105	200	274	407	491	574	308	270	4.1
2008	98	111	247	165	452	216	817	546	589	560	380	5.7
2009	38	33	90	36	131	65	139	126	275	111	104	2.9
학자금 대출	1분위 (A)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B)	평균	10분위 배수(B/A)
2007	7	12	13	57	38	10	40	35	45	42	30	6.0
2008	19	29	34	25	36	25	44	52	77	75	42	4.0
2009	10	13	34	58	26	19	33	149	64	63	47	6.6
금융부채	1분위 (A)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B)	평균	10분위 배수(B/A)
2007	690	940	831	1723	1450	1414	2098	2892	3418	5243	2070	7.6
2008	589	895	908	1388	1819	1788	2094	2948	2824	5640	2089	9.6
2009	572	818	1273	1069	1579	2135	2786	3130	4037	6019	2342	10.5
전세 보증금	1분위 (A)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B)	평균	10분위 배수(B/A)
2007	278	266	422	598	707	695	893	1090	1043	2773	877	10.0
2008	405	345	623	604	1048	892	1144	1662	1580	3242	1155	8.0
2009	448	321	650	578	970	846	1035	1347	1811	2987	1099	6.7
기타부채	1분위 (A)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B)	평균	10분위 배수(B/A)
2007	156	173	225	148	120	112	90	351	150	193	172	1.2
2008	21	22	29	39	33	69	54	103	53	57	48	2.6
2009	20	55	144	92	105	100	40	100	124	37	82	1.8

〈표 III-17〉의 계속

주택대출 (차)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2008-2007	22	93	-2	60	252	-59	411	55	15	252	110	
2009-2008	-61	-78	-157	-129	-321	-151	-678	-420	-314	-450	-276	
2009-2008	-38	15	-159	-69	-69	-210	-268	-365	-299	-197	-166	
학자금 대출(차)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2008-2007	12	17	21	-32	-2	15	3	17	33	33	12	
2009-2008	-9	-16	0	33	-10	-6	-11	97	-13	-12	5	
2009-2008	3	0	21	0	-12	9	-8	114	20	21	17	
금융부채 (차)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2008-2007	-101	-45	77	-335	370	373	-4	56	-594	397	20	
2009-2008	-17	-77	365	-320	-240	347	691	182	1213	380	252	
2009-2008	-118	-122	442	-654	129	720	688	238	620	777	272	
전세 보증금(차)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2008-2007	127	79	201	6	341	197	251	572	536	469	278	
2009-2008	43	-24	26	-27	-78	-46	-109	-315	232	-256	-55	
2009-2008	170	55	228	-20	263	151	141	257	768	213	223	
기타부채 (차)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2008-2007	-134	-152	-196	-109	-87	-43	-36	-247	-97	-136	-124	
2009-2008	-1	34	115	54	73	31	-14	-3	71	-20	34	
2009-2008	-136	-118	-82	-55	-15	-12	-50	-251	-26	-157	-90	

〈표 III-18〉은 패널기준으로 소득세와 주요 소비세의 세부담 분포와 변화추이를 나타낸다. 횡단면 기준의 경우(〈표 III-9〉), 1분위의 소득세 부담은 사실상 0원에 가까웠다. 특히 2008~2009년의 경우에는 더

욱 그러하였다. 그러나 소득순위를 2007년을 기준으로 고정시켜 놓으면 2007년 소득1분위의 2008~2009년의 소득세부담은 가구당 평균 3만~4만원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다음 절에서 논의하는 소득이동성 추정결과를 볼 때 소득 1분위 가구 가운데 약 절반 정도에 가까운 가구가 그 다음해에 소득 1분위를 벗어남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소득이동성으로 인해 비록 2007년에는 소득 1분위에 귀속되었으나 2008~2009년에는 그 이상의 소득분위로 이동하였고 소득세 부담도 따라서 양(+)¹⁾의 값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소비세의 경우에는 소득세와 달리 과세대상 품목에 대한 소비지출에 따라 해당 세목의 소비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소득이동으로 인한 가구구성이 바뀌는지의 여부가 소득계층별 세부담 분포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는 소득세의 경우보다 훨씬 작다.

〈표 III-18〉 주요 세목별 분포와 차(재정패널자료 패널 기준)

(단위: 만원)

근로·사업 소득세	1분위 (A)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B)	평균	10분위 배수(B/A)
2007	1	1	3	5	12	25	38	60	100	215	46	207.4
2008	3	1	3	4	12	20	28	50	104	202	43	73.7
2009	4	2	5	6	9	21	45	49	87	196	42	49.5
부가 가치세	1분위 (A)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B)	평균	10분위 배수(B/A)
2007	29	43	61	82	96	111	123	149	168	230	109	8.0
2008	40	54	76	98	114	127	152	174	205	257	130	6.4
2009	39	57	80	96	114	134	147	169	193	242	127	6.2
교통세	1분위 (A)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B)	평균	10분위 배수(B/A)
2007	2	4	8	12	16	18	20	24	27	36	17	15.6
2008	3	5	12	14	17	20	26	26	33	42	20	13.0
2009	3	5	11	13	22	24	25	27	31	38	20	12.6

〈표 III-18〉의 계속

주세	1분위 (A)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B)	평균	10분위 배수(B/A)
2007	2	4	5	9	10	10	10	10	11	16	9	6.6
2008	2	4	5	9	9	8	9	8	9	10	7	5.2
2009	3	3	4	6	8	8	8	7	8	13	7	4.8
담배세	1분위 (A)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B)	평균	10분위 배수(B/A)
2007	8	13	15	21	23	22	22	23	18	22	18	2.7
2008	7	12	14	20	20	21	22	21	16	21	17	3.0
2009	7	11	15	20	20	21	20	19	17	18	17	2.7
근로·사업 소득세(차)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2008-2007	2	-1	0	-1	0	-5	-10	-11	4	-14	-4	
2009-2008	1	1	1	1	-3	1	17	-1	-18	-6	0	
2009-2008	3	0	2	0	-3	-4	7	-11	-13	-19	-4	
부가 가치세(차)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2008-2007	11	11	15	16	18	16	29	25	36	27	20	
2009-2008	-1	3	4	-2	1	7	-6	-5	-12	-15	-3	
2009-2008	10	14	19	14	18	23	24	20	24	12	18	
교통세(차)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2008-2007	1	2	4	2	1	3	6	2	6	6	3	
2009-2008	0	0	0	-1	5	4	-1	1	-2	-4	0	
2009-2008	1	2	4	1	6	6	5	3	4	2	3	
주세(차)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2008-2007	0	0	0	0	-1	-2	-1	-2	-2	-5	-1	
2009-2008	1	-1	-1	-3	-1	0	-1	-1	-1	2	-1	
2009-2008	0	-1	-1	-3	-1	-2	-2	-4	-3	-3	-2	
담배세(차)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2008-2007	-1	-1	0	-1	-2	-1	0	-2	-2	0	-1	
2009-2008	0	0	1	-1	-1	0	-2	-1	1	-3	-1	
2009-2007	-1	-1	0	-1	-3	-1	-2	-3	-1	-3	-2	

Ⅲ. 소득계층별 분포 분석결과 87

〈표 Ⅲ-19〉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의 분포 및 실효세부담
(재정패널자료 패널 기준)

(단위: 만원, %)

근로소득세 (A)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2007	1	0	2	3	7	20	26	45	80	167	35
2008	3	0	2	3	10	17	22	40	88	173	36
2009	3	1	3	3	7	14	22	35	69	179	34
근로소득(B)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2007	49	241	694	1148	1463	1989	2482	3044	3844	5618	2057
2008	246	368	816	1290	1555	2085	2431	2983	3957	5551	2128
2009	309	493	1000	1362	1705	2174	2508	3060	3987	5530	2213
실효세율 (A/B)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2007	2.05	0.15	0.23	0.28	0.49	1	1.06	1.47	2.09	2.98	1.71
2008	1.1	0.1	0.21	0.23	0.67	0.82	0.92	1.34	2.23	3.11	1.68
2009	0.99	0.2	0.3	0.23	0.42	0.66	0.87	1.14	1.72	3.23	1.52
사업소득세(C)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2007	0	1	1	2	5	5	12	16	20	48	11
2008	0	0	1	1	1	3	6	10	16	29	7
2009	1	1	2	3	2	6	23	14	18	17	9
사업소득(D)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2007	42	213	344	467	687	696	867	1112	1389	2769	859
2008	132	278	423	512	716	665	865	977	1073	1876	752
2009	176	240	434	496	710	679	864	1127	1187	2105	802
실효세율 (C/D)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2007	0.1	0.52	0.31	0.47	0.68	0.76	1.35	1.41	1.43	1.73	1.28
2008	0.02	0.16	0.33	0.26	0.2	0.43	0.66	0.99	1.49	1.54	0.9
2009	0.52	0.25	0.36	0.51	0.31	0.94	2.71	1.26	1.52	0.82	1.09

3. 연령별 분포: 횡단면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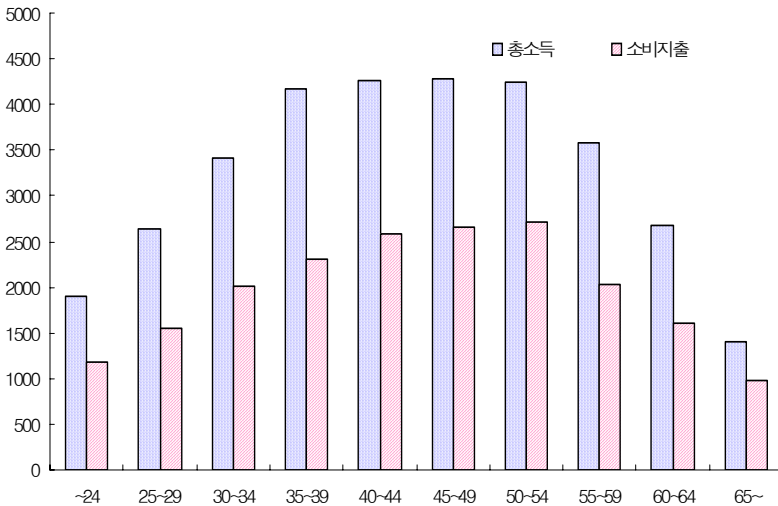
〈표 Ⅲ-20〉~〈표 Ⅲ-25〉는 가구주 연령을 기준으로 소득·소비지출·자산·부채 및 관련 세목의 세부담 분포를 추정한 결과를 나타낸다.

소득과 소비지출, 자산과 부채의 경우에는 대체로 40대 연령층을 정점으로 그 이하의 연령층과 그 이상의 연령층에서 해당 변수의 값이 작아지는 역U자형의 분포구조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그림 Ⅲ-8]과 [그림 Ⅲ-10] 참조). 다만 소득의 경우 정점을 형성하는 연령층이 30대 후반에서 50대 후반에 걸쳐 넓게 분포하는 데 비해 자산의 경우에는 50대 초반, 부채의 경우에는 40대 후반에 걸쳐 좁은 연령대에서 정점을 이루는 등 소득의 경우에 비해 다소의 차이를 보인다.

소비지출 수준이 총소득보다 큰 적자가구의 점유비율을 나타내는 곡선은 가구주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가속적으로 더 높아지는 우상향하는 패턴을 보이는 것이 특징적이다([그림 Ⅲ-8] 참조).

[그림 Ⅲ-8] 가구 연령별 총소득·소비지출 분포(재정패널자료 2009년 기준)

(단위: 만원)



III. 소득계층별 분포 분석결과 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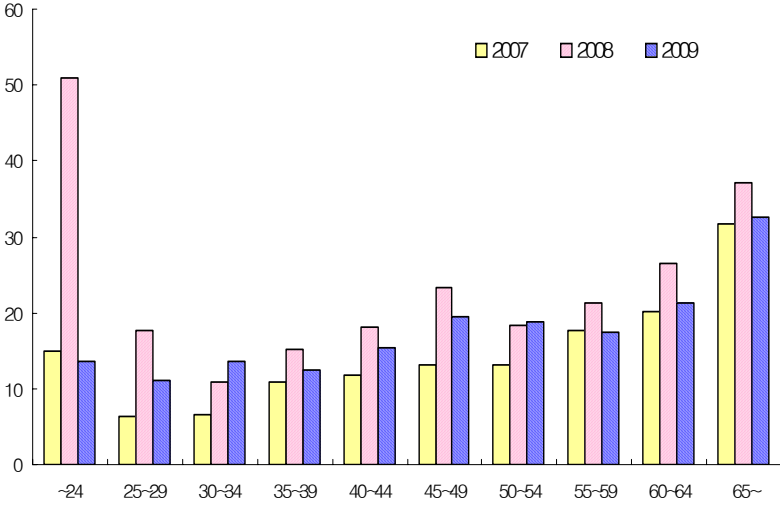
〈표 III-20〉 가구주 연령별 소득·소비지출·자산·부채 분포
(재정패널자료, 횡단면 기준)

(단위: 만원, %)

총소득	~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	평균
2007	1607	2711	3600	4011	4276	4116	3916	3329	2549	1297	3307
2008	1045	2581	3510	3902	4117	4031	4139	3154	2618	1317	3256
2009	1907	2647	3414	4177	4271	4288	4243	3577	2668	1394	3427
소비지출	~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	평균
2007	1066	1300	1764	2158	2367	2423	2183	1728	1417	877	1829
2008	1352	1618	2014	2366	2708	2739	2601	2033	1641	958	2093
2009	1187	1550	2018	2304	2588	2649	2721	2027	1598	984	2072
적자가구비율	~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	평균
2007	15	6.4	6.6	10.9	11.8	13.2	13.2	17.6	20.2	31.8	15.4
2008	51	17.6	10.8	15.2	18.2	23.4	18.3	21.2	26.4	37.2	22.1
2009	13.6	11.1	13.5	12.5	15.4	19.5	18.9	17.5	21.3	32.6	19
총자산	~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	평균
2007	3894	7646	14107	21070	24517	27495	27182	23883	26742	16206	21084
2008	2753	9331	13695	21597	23724	23567	28828	25177	25909	16050	20894
2009	4060	8719	14337	22658	22567	25804	29197	26590	23561	16423	21561
부채	~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	평균
2007	252	1122	2822	4420	4648	4330	3877	3929	4577	1408	3433
2008	403	1645	3135	4419	4508	4734	4404	4273	2992	1585	3561
2009	342	1693	3505	4426	4331	5094	4307	3843	3298	1300	3580
순자산	~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	평균
2007	3642	6523	11285	16650	19870	23164	23304	19953	22165	14798	17651
2008	2350	7686	10560	17178	19216	18833	24424	20903	22917	14465	17333
2009	3718	7026	10832	18232	18237	20709	24890	22747	20262	15123	17981

[그림 Ⅲ-9] 가구 연령별 적자기구비율 분포(재정패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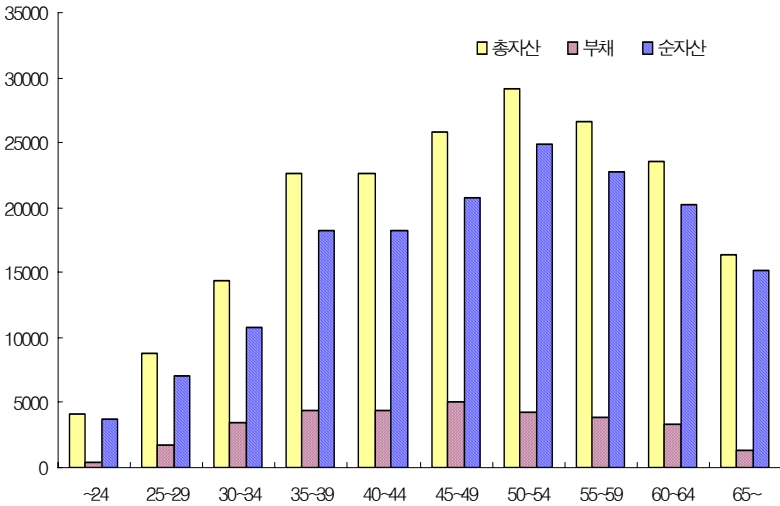
(단위: 만원)



[그림 Ⅲ-10] 가구 연령별 총자산·부채·순자산 분포

(재정패널자료 2009년 기준)

(단위: 만원)



〈표 Ⅲ-21〉~〈표 Ⅲ-23〉은 소득·자산·부채의 세부항목에 대해 가구주 연령별 상세분포를 보여준다.

〈표 Ⅲ-21〉에 의하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과 같이 주로 노동공급의 대가로 수취하는 소득의 경우에는 최고점을 나타내는 연령대가 주로 40대 후반~50대 초반에서 형성된다. 반면에 부동산임대소득이나 이자·배당소득 등은 연령이 상승할수록 평균적인 규모가 더 커져서 6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최고 수준을 나타낸다. 사회보험의 경우에도 최고 수준을 나타내는 연령대는 60대 초반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국민연금 등의 사회보험의 수령연령이 주로 60세 이후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쉽게 유추할 수 있다. 다만 65세 이상의 노인가구에 비해 60대 초반 가구의 사회보험수혜규모가 더 큰 것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적용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된 기간이 짧아 노인들 중에서 국민연금 등의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표 Ⅲ-21〉 가구주 연령별 주요 소득항목의 분포(재정패널자료, 횡단면 기준)

(단위: 만원)

근로소득	~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	평균
2007	956	2263	2828	2892	2814	2566	2454	1840	1127	363	2110
2008	793	2230	2847	2839	2887	2498	2681	1970	1307	339	2142
2009	1490	2316	2769	3186	2860	2912	2785	2138	1356	372	2282
사업소득	~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	평균
2007	267	288	609	986	1306	1307	1148	1007	703	290	870
2008	62	126	472	864	1023	1271	1126	701	559	261	747
2009	264	196	489	790	1148	1129	1163	1015	561	290	783
부동산임대소득	~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	평균
2007	0	1	9	29	34	93	58	83	190	88	61
2008	0	15	11	65	50	52	83	80	122	92	63
2009	0	29	10	67	54	48	99	90	134	122	74

〈표 III-21〉의 계속

이자배당소득	~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	평균
2007	0	1	22	15	20	44	13	27	17	23	21
2008	0	1	19	17	29	27	19	38	40	17	22
2009	0	0	5	23	6	21	16	41	40	30	20
기타소득	~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	평균
2007	383	149	115	76	72	81	178	262	294	353	174
2008	184	194	127	97	98	140	158	201	260	406	189
2009	144	79	117	86	151	140	134	157	235	380	176
사회보험	~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	평균
2007	0	7	7	8	22	14	59	82	200	173	61
2008	5	10	30	11	20	14	45	147	274	192	75
2009	8	17	11	14	37	25	41	101	313	184	76
민간보험	~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	평균
2007	1	2	9	5	8	11	6	28	17	6	9
2008	0	5	4	8	10	29	26	16	55	11	17
2009	0	9	13	12	14	12	6	34	29	16	15

자산유형별로 연령별 평균 자산보유액이 최고점을 나타내는 연령대는, 주택자산의 경우 50대 초반, 부동산자산의 경우에는 40대 후반,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50대 초반~50대 후반으로 비교적 연령대가 높다. 이에 반해 전세보증금의 경우에는 30대 후반으로 최고연령대가 낮다. 전세보증금의 경우에는 주택을 구입하기 직전 시기에 가장 자산규모가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는 그 이후의 연령대에 진입하면 주택을 구입하여 거주를 옮김에 따라 전세보증금 중 상당 부분이 주택자산으로 전환됨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표 III-22〉 참조).

Ⅲ. 소득계층별 분포 분석결과 93

〈표 Ⅲ-22〉 가구주 연령별 주요 자산 항목의 분포
(재정패널자료, 횡단면 기준)

(단위: 만원)

주택자산	~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	평균
2007	2463	3743	8648	13045	16378	18050	18243	17116	17161	11450	13894
2008	1526	4145	8425	13745	14711	15012	19730	17102	15949	11560	13567
2009	2195	3365	7612	12797	14263	14510	18873	17848	15286	11571	13292
부동산자산	~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	평균
2007	0	172	382	2311	1991	3629	3922	2999	6344	2863	2660
2008	0	1504	453	1610	2327	3383	3805	3754	6304	2187	2602
2009	0	1131	1297	2835	1845	4595	4409	3430	4198	2463	2946
전세보증금	~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	평균
2007	922	2357	3049	3033	2783	1895	1397	932	900	439	1871
2008	893	2481	3071	3478	3817	2324	2028	1201	986	682	2266
2009	1269	2928	3544	3961	3461	3332	2068	1489	1203	712	2536
회원권	~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	평균
2007	0	0	0	31	2	169	42	67	99	27	48
2008	0	0	0	25	10	71	53	92	9	42	35
2009	0	0	0	2	10	3	9	13	35	5	7
기타자산	~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	평균
2007	0	5	137	121	228	1059	514	96	254	13	288
2008	1	6	91	200	65	93	106	187	168	90	110
2009	10	9	24	143	47	188	276	304	164	48	133
금융자산	~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	평균
2007	508	1369	1891	2528	3136	2693	3063	2673	1984	1412	2322
2008	332	1195	1655	2538	2794	2684	3105	2840	2492	1488	2312
2009	586	1285	1860	2921	2941	3176	3562	3504	2675	1625	2648

부채는 대부분 금융부채가 차지하고 있다. 금융부채의 경우 40대 후반에서 부채규모가 가장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상환하여야 할 전세보증금은 50대 후반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주택이나 상가를 임대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을 가진 주된 연령대가 50대 후반임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주택대출금의 경우에는 주로 30대 후반에서 정점을 이루는데 이는 주택을 주로 구입하기 시작하는 주된 연령대가 30대 후반부터 시작되는 것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학자금대출은 40대 후반~50대 후반에 걸쳐 대출금 수준이 가장 높다. 이는 이들 연령대의 가구에서 대학생 자녀 비율이 높고, 따라서 등록금 부담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이상 <표 Ⅲ-23> 참조).

<표 Ⅲ-23> 가구주 연령별 주요 부채 항목의 분포(재정패널자료, 횡단면 기준)

(단위: 만원)

주택대출	~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	평균
2007	0	136	402	565	432	329	161	257	139	106	294
2008	64	340	436	470	576	423	373	254	173	95	352
2009	0	98	190	233	119	110	47	37	142	34	111
학자금대출	~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	평균
2007	62	16	4	2	7	51	98	34	35	9	28
2008	123	55	8	6	8	78	141	57	28	3	41
2009	33	46	16	0	8	85	121	184	5	1	47
금융부채	~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	평균
2007	181	617	1794	2561	2972	2710	2362	2660	2772	715	2102
2008	139	660	1930	2314	2655	2971	2150	2461	1738	830	1995
2009	308	969	2535	2784	2988	3310	2678	2024	2094	655	2265
전세보증금	~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	평균
2007	0	280	538	1049	945	966	1101	937	1435	521	845
2008	72	588	717	1553	1231	1156	1693	1479	983	640	1124
2009	0	579	705	1327	1060	1444	1337	1496	1041	597	1073
기타부채	~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	평균
2007	8	74	84	242	291	274	155	41	195	56	165
2008	5	2	45	77	39	106	47	22	71	16	49
2009	1	1	58	82	156	145	124	101	17	13	84

Ⅲ. 소득계층별 분포 분석결과 95

소비세의 연령별 부담 분포는 <표 Ⅲ-20>의 소비지출 분포와 상당히 유사하다. 소득세의 연령별 부담 분포는 소득분포와 유사하지만 우리나라 소득세의 면세자 비율이 상당히 높고 누진소득세율 체계를 지니고 있는 만큼 소득 분포에 비해 역U자 형태가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이상 <표 Ⅲ-24>~<표 Ⅲ-25> 참조).

<표 Ⅲ-24> 가구주 연령별 주요 세목의 세부담 분포
(재정패널자료, 횡단면 기준)

(단위: 만원)

근로·사업 소득세	~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	평균
2007	4	29	40	73	89	66	56	36	23	6	48
2008	5	16	31	56	63	61	65	34	19	3	40
2009	6	18	28	66	57	76	68	45	16	4	44
부가가치세	~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	평균
2007	60	78	108	134	147	150	135	104	84	48	111
2008	70	96	124	146	168	169	162	123	98	53	128
2009	68	91	123	142	160	163	169	124	95	54	126
교통세	~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	평균
2007	5	13	18	22	23	22	22	16	12	4	17
2008	4	13	21	23	26	27	26	18	13	4	19
2009	4	14	21	23	24	26	24	22	15	4	19
주세	~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	평균
2007	8	14	15	11	10	9	9	7	7	4	9
2008	7	11	11	10	7	8	7	5	6	3	7
2009	2	8	9	9	8	8	7	6	5	3	7
담배세	~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	평균
2007	12	18	23	22	22	23	21	21	16	9	19
2008	13	19	20	20	20	22	19	20	13	8	18
2009	14	15	18	21	19	19	20	20	14	7	17

〈표 III-25〉 가구주 연령별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의 상세 분포
(재정패널자료, 횡단면 기준)

(단위: 만원)

근로소득세	~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	평균
2007	3	28	36	57	63	47	43	31	17	3	37
2008	5	16	29	51	50	49	52	32	16	2	34
2009	5	16	26	46	50	66	56	38	13	2	36
근로소득	~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	평균
2007	956	2263	2828	2892	2814	2566	2454	1840	1127	363	2110
2008	793	2230	2847	2839	2887	2498	2681	1970	1307	339	2142
2009	1490	2316	2769	3186	2860	2912	2785	2138	1356	372	2282
실효근로 소득세율	~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	평균
2007	0.35	1.25	1.27	1.96	2.25	1.83	1.76	1.71	1.55	0.73	1.75
2008	0.57	0.73	1.03	1.79	1.72	1.95	1.94	1.61	1.2	0.53	1.59
2009	0.32	0.67	0.94	1.45	1.76	2.27	2	1.79	0.96	0.43	1.59
사업소득세	~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	평균
2007	1	1	4	17	26	19	13	4	5	3	11
2008	0	0	1	5	13	13	13	2	3	1	6
2009	1	3	2	19	7	10	12	7	3	3	8
사업소득	~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	평균
2007	267	288	609	986	1306	1307	1148	1007	703	290	870
2008	62	126	472	864	1023	1271	1126	701	559	261	747
2009	264	196	489	790	1148	1129	1163	1015	561	290	783
실효사업 소득세율	~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	평균
2007	0.41	0.39	0.63	1.71	1.96	1.48	1.11	0.43	0.76	1.11	1.32
2008	0.36	0.07	0.31	0.6	1.25	1	1.11	0.35	0.52	0.56	0.86
2009	0.32	1.37	0.35	2.44	0.63	0.86	1.04	0.7	0.49	0.9	1.03

4. 자산분위 · 소득분위의 결합분포

자산과 소득은 분포구조상 정(+)의 상관관계¹¹⁾를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지만 자산분배구조의 결정요인과 소득분배구조의 결정요인은 서로 상이한 것이 일반적이다. <표 IV-26>과 <표 IV-27>은 각각 총자산분위와 총소득분위, 순자산분위와 총소득분위의 결합분포를 나타낸다.

이들 두 표는 X축을 총소득을 기준으로 분류한 10분위, Y축을 총자산 또는 순자산을 기준으로 분류한 10분위로 설정하여 각 연도별로 총 100개의 셀을 대상으로 구성비중을 추정하였다. 자산분위별로 가장 점유비중이 높은 소득분위를 선택하거나 또는 이와 반대로 소득분위별로 가장 점유비중이 높은 자산분위를 선택하면 거의 대부분 대각원소이거나 또는 대각원소에 매우 근접한 셀을 나타낸다. 이는 기간이나 자산의 종류에 관계없이 비슷하다.

한 가지 특징적인 점을 찾자면 다음과 같다. 자산순위가 낮은 자산분위 가운데 고소득분위에 속하는 확률보다, 소득순위가 낮은 소득분위 가운데 자산순위가 높은 자산분위에 속하는 확률이 대체로 상당히 더 높다. <표 IV-26>에서 2007년의 경우를 예를 들어 살펴보자. 총자산 1분위의 가구이면서 소득분위가 가장 높은 소득10분위에 속하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0.1%(또는 총자산 1분위 가구들 가운데에서는 1.0%)에 불과하지만, 이와 반대로 총소득 1분위의 가구이면서 총자산 분위가 가장 높은 총자산 10분위에 속하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0.31%(또는 소득 1분위 가구들 가운데에서는 3.1%)로, 후자가 전자의 약 3배 수준이다. 이를 좀 더 확장하면, 2007년 현재 소득 1분위 가구 가운데 총자산이 상위 30%에 속하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1.07%(=0.37%+0.39%+0.31%) 또는 소득 1분위 가구 가운데 10.7%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비록 소득수준은 최하위 10%에 불과하지만 자산규모로는 상위

11) 상관관계에 대한 상세한 추정결과는 제IV장 제1절을 참조하기 바란다.

30% 안에 속하는 고액자산가가 소득 최하위 10가구 중에서 1가구 정도의 비율로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시사한다. 이런 패턴은 2008~2009년에도 대동소이하다. 즉, 2008~2009년 동안 총소득 1분위 가구 가운데 총자산이 상위 30%에 속하는 가구의 비율은 각각 13.1%와 10.2%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런 관계는 다른 연도에도 비슷하며 순자산과 총소득 사이의 결합 분포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이는 총자산(또는 순자산의 경우도 마찬가지)과 총소득 사이에 정(+의 상관관계가 있지만, 상대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저소득층에서는 고자산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에서 보듯이 소득 기준으로 저소득층이라고 하더라도 자산 기준으로는 고자산 분위에 속하는 가구의 비율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저소득층 가운데에는 생산성이 낮거나 실직·질병 등의 이유로 인해 저소득층에 속하게 된 경우도 있지만, 생애주기상 은퇴 후의 연령기에 속한 가구들도 상당수 저소득층에 포함되어 있다. <표 IV-1>에서 보듯이 총소득 1~2분위 가구 가운데 고령자 가구의 비중이 다른 분위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것이 이를 방증한다. 은퇴 이전에 고소득을 획득하고 자산도 상당한 정도 축적하였던 가구 중에서는 은퇴로 인해 경상소득만 급격히 줄어든 가구들도 많다. <표 III-26> 또는 <표 III-27>에서 보듯이, 경상소득 기준의 총소득으로는 1분위에 귀속되지만 자산기준으로는 고자산분위에 속하는 가구가 여기에 해당된다.

5. 소득이동성

가. 소득이동성에 대한 기존 연구

소득이동성(income mobility)에 대한 연구의 역사는 매우 오래 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연구로는 Shorrocks(1978)를 들 수 있다. 그는 두 기간 사이의 소득그룹 이동확률을 나타내는 이행행렬(transition matrix)을 고안하여, 상이한 시점 사이에 나타나는 이동성을 연구하고 그에 따른 이동계수를 제안하였다. Shorrocks의 소득이동성 지표는 계산의 편의성과 이해의 용이성 등의 측면에서 장점이 뛰어나다. 다만 지표 추정결과가 소그룹 또는 구간의 선택에 따라 달라진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그룹 내에서의 큰 소득이동은 지표 추정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반면, 그룹 사이에 나타나는 조그만 소득이동은 지표를 변화시킨다는 점이 커다란 단점으로 지적된다.

이런 문제를 제거하고자 Fields & Ok(1996, 1999)은 두 시점 사이의 로그소득 차분값의 합을 지표로 하는 소득이동성 지표를 개발하였다. 이 지표는 Shorrocks(1978) 소득이동성의 구간의존성(interval dependency)을 극복하였다는 점에서 장점을 지닌다. 그러나 Fields & Ok의 소득이동성 지표는 두 시점 사이의 소득증감률 수준에 따라 소득이동성 지표의 값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순수하게 소득이동성 수준을 포착하기 어렵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Sung(2011)는 가구소득의 자연대수정규분포 특성을 이용하여 두 시점 사이의 소득 상호간 소득이동성 지표를 개발하였다. 그의 지표는 Shorrocks 또는 Fields & Ok의 소득이동성 지표가 지니는 단점을 100% 극복하고, 소득이동성 변화에 대한 구조 변화까지 검정(testing)할 수 있는 이론적·실증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기여도를 찾을 수 있다. 다만 그의 소득이동성 지표는 소득분포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만큼 그의 지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소득

분포의 자연대수정규분포 특성에 대한 사전적 검정이 필요하다¹²⁾.

나. 추정결과

〈표 III-28〉은 Shorrocks의 소득이행행렬(소득이행확률)의 추정결과를 나타낸다. 대각원소(diagonal elements)는 두 연도 사이에 소득분위의 변화가 없는 것을 나타내며, 대각원소의 위쪽에 위치한 것은 이전 기간에 비해 소득분위가 상승한 경우, 대각원소 아래에 위치한 것은 이전 기간에 비해 소득분위가 하락한 경우의 이행확률을 나타낸다.

먼저 2007/2008년의 소득이행행렬을 살펴보자. 최저소득층인 소득 1분위의 경우 2008년에도 1분위에 잔존할 확률은 0.55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소득분위가 상승할수록 그 다음 연도에도 해당 분위에 잔존할 확률은 점차 하락한다. 이런 추이는 5분위의 경우 0.25에 이를 때까지 지속된다. 그 이상의 소득분위에서는 다시 잔존확률이 상승한다. 10분위의 경우에는 잔존확률이 0.66에 이르러 전체 표본가구의 약 3분의 2가 계속 10분위에 머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어떤 소득분위에서 인접한 소득분위로 이행하는 확률은, 소득분위의 변화가 없는 경우의 이행확률보다는 작지만 거리가 먼 소득분위로 이행하는 경우보다는 이행확률이 높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1분위와 10분위의 경우 분위 잔존확률이 다른 분위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것이다. 이는 이들 소득분위가 다른 분위와 달리 소득분위의 범위에서 하한 또는 상한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끝점효과(endpoint effect) 때문이다. [그림 III-1]의 가구주 연령별 분포에서 65세 이상 노인가구의 비중이 부근의 다른 연령층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값을 가지는데 이 역시 끝점효과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은 재정패널자료에서만 특이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

12) 재정패널자료에 대해서는 아직 자연대수정규분포 특성에 대한 실증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본 항에서는 Shorrocks(1978)의 소득이행행렬 추정결과를 토대로 소득이동성을 논의한다.

니며 일반적인 현상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소의 절대수준 차이만 있을 뿐 소득이행확률의 추정결과는 2008/2009년에도 대동소이하다. 다만 대각원소를 나타내는 각 소득분위별 잔존확률은 소폭이지만, 전년(2007/2008년)에 비해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그만큼 소득분위의 이동이 이전 기간에 비해 적어졌음을 시사한다. 이런 결과는 Sung(2011)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한국 노동패널자료(KLIPS)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소득이동성이 구조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한다. 다만 재정패널자료는 자료가 축적된 기간이 3개연도에 불과하여 소득이동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은 2007/2008년과 2008/2009년의 두 차례에 불과하다. 시계열이 짧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의 구조적 변화 여부에 대해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

〈표 III-28〉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점은 평균지향효과(mean reversion effect)이다. 평균지향효과란, 확률변수의 통계적 분포가 시계열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두 연도 사이에 나타나는 순위변동의 특징을 나타내는 일반적 원칙, 또는 경험적 관찰 결과 정립된 현상 중 하나로서, 평균치 이상의 관측치는 그 다음 기에 상대 순위(rank)가 낮은 방향으로 실현될 확률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크고, 반대로 평균치보다 작은 값을 시현한 관측치는 다음 기에 보다 상대순위가 더 높은 방향으로 실현될 확률이 더 크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 일종의 구심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평균지향효과는 재정패널자료에서도 관찰된다. 〈표 III-28〉에서 보듯이 대각원소를 경계로 하여 좌측의 확률 합은 다음 기의 소득분위가 현재 기의 소득분위보다 낮아지는 경우의 확률을 나타내고, 우측의 확률 합은 다음 기의 소득분위가 현재 기보다 높아지는 경우의 확률을 나타낸다. 아래의 〈표 III-28〉에서 보듯이 현재 기의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대각원소의 우측의 확률합이 좌측의 확률합보다 크고, 그런 경향은 현재 기의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다가 7분위

부근에서 균형을 이루었다가 8~9분위에서 역전되는 현상을 보인다. 이것이 일종의 평균지향효과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특징 중 하나이다. 평균지향효과는 재정패널자료 3개연도 사이에서 모두 관찰된다.

〈표 Ⅲ-28〉 소득 10분위별 소득이행확률의 추정결과(재정패널자료 기준)

2007/2008	1	2	3	4	5	6	7	8	9	10	계
1	0.55	0.27	0.08	0.04	0.02	0.01	0.01	0.01	0.01	0.01	1
2	0.19	0.38	0.24	0.08	0.06	0.03	0.01	0.01	0	0	1
3	0.06	0.13	0.33	0.23	0.13	0.06	0.03	0.01	0.01	0	1
4	0.06	0.08	0.15	0.25	0.22	0.11	0.07	0.02	0.01	0.02	1
5	0.06	0.04	0.07	0.14	0.25	0.23	0.09	0.07	0.04	0.03	1
6	0.02	0.02	0.03	0.11	0.13	0.26	0.25	0.11	0.05	0.01	1
7	0.02	0.03	0.03	0.04	0.07	0.14	0.27	0.3	0.07	0.03	1
8	0.01	0.03	0.02	0.04	0.04	0.08	0.14	0.3	0.28	0.07	1
9	0.01	0	0.02	0.02	0.04	0.04	0.09	0.14	0.4	0.22	1
10	0	0.01	0.01	0.01	0.02	0.03	0.04	0.06	0.17	0.66	1
계	0.99	0.99	0.97	0.97	0.98	0.99	1	1.01	1.04	1.05	-
2007/2009	1	2	3	4	5	6	7	8	9	10	계
1	0.55	0.24	0.1	0.05	0.02	0.02	0.01	0	0	0.01	1
2	0.2	0.38	0.21	0.11	0.04	0.04	0.01	0.01	0	0	1
3	0.07	0.16	0.29	0.2	0.12	0.07	0.05	0.03	0	0	1
4	0.06	0.09	0.13	0.24	0.21	0.12	0.06	0.06	0.01	0	1
5	0.03	0.05	0.11	0.15	0.21	0.19	0.11	0.05	0.05	0.03	1
6	0.04	0.03	0.07	0.09	0.15	0.19	0.23	0.13	0.07	0.01	1
7	0.03	0.02	0.02	0.05	0.12	0.16	0.26	0.21	0.1	0.04	1
8	0.02	0.02	0.01	0.04	0.05	0.1	0.16	0.25	0.26	0.09	1
9	0.02	0.01	0.03	0.01	0.04	0.05	0.08	0.16	0.34	0.25	1
10	0.01	0.01	0.01	0.02	0.02	0.04	0.03	0.1	0.17	0.59	1
계	1.03	1.01	0.99	0.96	0.98	0.98	0.97	1.01	1.03	1.03	-
2008/2009	1	2	3	4	5	6	7	8	9	10	계
1	0.57	0.21	0.08	0.05	0.04	0.02	0.01	0.01	0	0	1
2	0.26	0.43	0.15	0.08	0.03	0.02	0.01	0.01	0	0.01	1
3	0.07	0.21	0.31	0.21	0.1	0.05	0.02	0.03	0.01	0	1
4	0.03	0.07	0.23	0.29	0.22	0.06	0.05	0.03	0.01	0.01	1
5	0.05	0.05	0.11	0.2	0.25	0.18	0.1	0.04	0.02	0.01	1
6	0.03	0.03	0.05	0.07	0.21	0.29	0.17	0.08	0.04	0.02	1
7	0.01	0.01	0.03	0.05	0.08	0.21	0.3	0.19	0.08	0.04	1
8	0.01	0	0.02	0.02	0.03	0.11	0.21	0.36	0.19	0.04	1
9	0	0	0.02	0.02	0.03	0.03	0.08	0.18	0.46	0.18	1
10	0	0.02	0.01	0	0.01	0.02	0.03	0.06	0.19	0.67	1
계	1.04	1.03	1.01	1	0.99	0.99	0.98	0.99	0.99	0.98	-

주: 종축은 전년도, 횡축은 익년도의 소득 10분위를 나타냄.

IV. 상관분석 · 소득재분배 효과 및 정책시사점

본장에서는 소득 · 소비 · 자산 · 부채 · 세부담의 결합분포를 토대로 분배 불평등도와 소득이동성, 단기소득 및 생애소득의 불평등도 관계 등을 분석하고 정책시사점을 도출한다.

1. 집중도 · 불평등도 · 상관계수

가. 집중도 · 불평등도

본절에서 소득 · 자산 · 부채 및 각종 세부담의 집중도 또는 불평등도는 지니계수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표 IV-1>은 소득 · 소비지출 · 자산 · 부채에 대한 지니계수 추정결과를 보여준다. 지니계수를 추정함에 있어 횡축의 순위를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와, 각 변수의 자체 순위를 기준으로 재배열하는 두 가지 경우를 상정하여 산출하였다. 전자의 경우에는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는 준지니계수(quasi-gini)라고도 불린다¹³⁾.

13) 지니계수는 45도선 이하의 삼각형 면적 중에서 45도선과 로렌즈 곡선 사이의 면적의 상대비로 정의된다. 로렌즈 곡선은 X축을 최저소득자에서 최고소득자의 순서로 재배열하고 Y축은 해당 소득자들에 대한 소득의 누적비를 나타내는 것으로 정의된다. 이와 같이 로렌즈 곡선을 정의하면 로렌즈 곡선은 항상 아래로 준볼록(quasi-conconvex)한 형태를 나타낸다. 즉, X축을 따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경우 로렌즈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는 단조증가 또는 비감소(nodecreasing)한다. 불평등도 지수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X축의 순서에 따라 그 값이 영향을 받는다. 세금부담액을 차감하거나 또는 이전소득을 합산함에 따라 소득순

추정결과를 보면 총소득 순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소득지니계수는 0.4를 조금 초과하는 수준을 나타낸다. 가계동향조사자료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약 0.35 근방으로 추정되는 것에 비해 다소 높은 값을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된다. 소비지출이나 자산, 부채의 경우 지니계수는 소득지니에 비해 상당히 작은 값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이는 소득순위를 기준으로 추정된 것인 만큼 별다른 의미를 지니지는 않는다.

자기 순위를 기준으로 지니계수를 재추정한 결과, 소비지출은 총소득에 비해 지니계수가 조금 작은 0.3 중반대의 수준으로 추정되었다. 한계소비성향 체감의 법칙에 따라 상대소비지출 격차가 총소득의 경우보다 작게 나타났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총자산의 경우에는 지니계수가 0.6 초반대, 부채의 경우에는 그보다 높은 0.8 내외,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경우에는 0.66~0.70 수준을 나타냈다. 자산이나 부채의 상대분포 불평등도가 소득이나 소비지출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난 이유는, 주로 자산이나 부채의 소유 여부 편중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소유자의 소유 편중도도 높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성명재·김현숙(2006)에 의하면 일부 자산의 지니계수는 0.9 또는 그 이상의 값을 가질 정도로 매우 높은 값을 시현하였다. 이는 개별 자산으로 분석의 초점을 좁힘에 따라 소유 여부의 집중도가 매우 높게

위의 변화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때 소득재분배 효과를 논하는 경우에는 소득순서를 바꾸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약 세금차감 후 또는 이전소득 합산 후 소득의 순서가 뒤바뀌는 것을 전제로 매번 소득순위를 바꾸어 로렌즈 곡선을 구하고 그에 대응되는 지니계수를 계산하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재분배 효과를 보기 어렵다. 따라서 소득재분배의 관점에서 볼 때는 X축의 순서를 특정한 변수(일반적으로는 총소득이나 가처분소득 등)를 기준으로 고정한 상태에서 로렌즈 곡선을 도출하여 지니계수를 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때 로렌즈 곡선은 아래로 볼록하지 않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 이와 달리 각 변수 자체의 집중도 또는 분포의 불평등도를 보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변수 자체의 순서로 X축을 재배열하여 지니계수를 산출한다.

나타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도 자산을 주택자산, 기타 부동산자산, 예적금, 전월세 보증금 등 세부항목으로 나누면 각각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이보다 훨씬 더 큰 값을 가진다.

〈표 IV-1〉 소득·지출·자산·부채의 불평등지수
(재정패널자료, 지니계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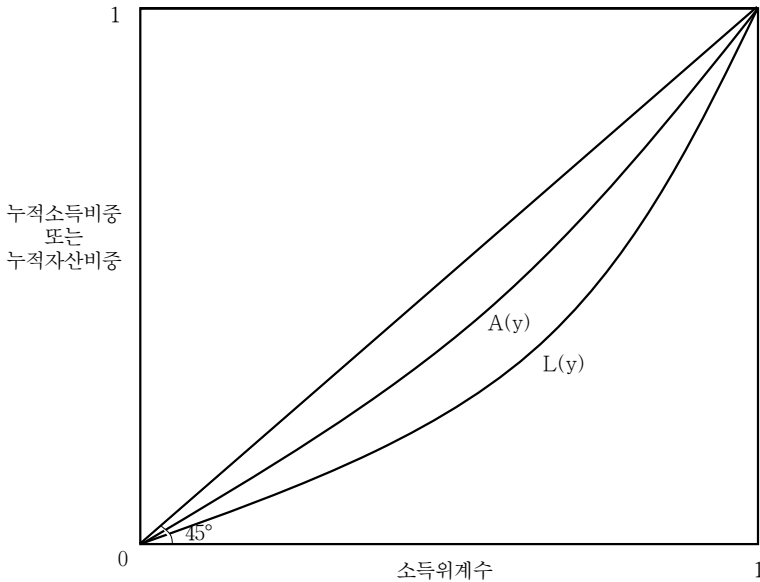
지니계수		총소득순위 기준	자기순위 기준
가구소득	2007	0.42340	0.42340
	2008	0.43705	0.43705
	2009	0.42544	0.42544
소비지출	2007	0.25966	0.36740
	2008	0.26323	0.35677
	2009	0.25454	0.35645
총자산	2007	0.33405	0.63948
	2008	0.33465	0.62114
	2009	0.32920	0.62214
부채	2007	0.33019	0.80816
	2008	0.32056	0.80171
	2009	0.32815	0.79663
순자산	2007	0.33480	0.70082
	2008	0.33755	0.66807
	2009	0.32941	0.65988

총자산분포를 총소득 순위를 기준으로 재배열한 경우의 분포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0.33 내외의 수준으로 총소득 지니(0.43 내외)에 비해 훨씬 작다. 이는 비록 총자산 자체의 순위를 기준으로 한 자산분포의 집중도가 매우 높지만, 소득기준으로 재배열하면 소득계층

간 자산분배구조의 상대격차가 상대소득격차보다 작아짐을 의미한다.

이는 [그림 IV-1]에서 보듯이 소득기준의 자산집중도를 나타내는 곡선, 즉 자산 로렌즈 곡선($A(y)$)이 소득 로렌즈 곡선보다 상방에 위치함을 의미한다. 물론 자산에 대한 x 축의 기준을 자산 순위로 바꾸면 자산 로렌즈 곡선은 소득 로렌즈 곡선보다 훨씬 아래에 위치하겠지만, 횡축의 기준을 모두 총소득으로 통일하는 경우에는 [그림 IV-1]과 같은 모습을 얻게 된다¹⁴⁾.

[그림 IV-1] 소득기준 소득과 자산의 로렌즈 곡선



14) 정의상 로렌즈 곡선은 아래로 볼록한 모습을 가진다. 그러나 소득순위를 기준으로 자산분포를 재배열한 상태에서 로렌즈 곡선을 그리면, 그것이 반드시 아래로 볼록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그림 IV-1]은 일반적으로 자산 로렌즈 곡선이 소득 로렌즈 곡선의 상방에 위치함을 나타낸 것일 뿐, 자산 로렌즈 곡선이 반드시 아래로 볼록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나. 상관관계 분석: 상관계수

상관관계 분석은 크게 상관계수를 추정하는 것과 상호 간의 사후적 상관관계 추정을 목적으로 하는 회귀분석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본 항에서는 전자를 분석한다.

두 변수에 대한 상관계수를 추정한 결과는 <표 IV-2>~<표 IV-4>에서 보는 바와 같다. 횡단면 기준과 패널 기준의 두 가지에 대해 추정하였다. 양자 간의 차이는 크지 않은 편이다.

추정결과를 보면 소비지출·자산·부채를 망라하고 소득과의 상관계수는 2007~2008년에 비해 2009년의 값이 크게 낮아진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측정오차(measurement error)의 가능성이 의심된다.

각 연도별 소득 상호간의 상관계수는 0.73~0.80으로 매우 높다(<표 IV-2> 참조). 이는 각 가구별로 직종이나 학력, 생산성, 건강상태, 가구 규모 등과 같은 인적 특성의 차이가 장기적으로도 지속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 IV-3>과 <표 IV-4>에서는 저축(총소득-지출)과 자산·부채·순자산 간의 상관계수를 추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자산 변동과 저축 사이에는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양자 사이의 상관관계는 별로 높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아마도 자산가치의 변동에 있어 저축을 통한 자산가치의 변동보다는 자산가격의 변화에 의한 자본이득/손실이나 상속·증여 등에 의한 자산 규모 자체의 변동에 의한 영향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물론 그 밖에 부분적으로는 자료 측정시 측정오차(measurement error)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¹⁵⁾.

15) 면접조사원들에게 문의한 결과, 실제 자산의 보유구조의 변동은 없었으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면접조사원들과의 친밀도가 높아져 자산의 과소보고 정도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산 평균이 높아지는 이유 중 보고율의 변화에 기인하는 부분도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IV-2〉 소득·지출·자산·부채의 상관계수(재정패널자료)

상관계수		횡단면자료 기준	1~3차연도 모두 자료가 존 재하는 표본 기준
소득·소비지출	2007	0.65060	0.65203
	2008	0.65140	0.67775
	2009	0.60691	0.65318
소득·총자산	2007	0.46278	0.44660
	2008	0.43445	0.42063
	2009	0.34742	0.35778
소득·부채	2007	0.26858	0.24580
	2008	0.24029	0.22766
	2009	0.25775	0.25600
소득·순자산	2007	0.42799	0.41646
	2008	0.40415	0.38911
	2009	0.31847	0.33006
저축(=소득-지출)·소득	2007	0.89358	0.89196
	2008	0.87905	0.87816
	2009	0.90070	0.89336
저축(=소득-지출)·소비	2007	0.24047	0.23880
	2008	0.21089	0.24343
	2009	0.20137	0.24328
저축(=소득-지출)·총자산	2007	0.34800	0.33046
	2008	0.28290	0.27699
	2009	0.23259	0.24890
저축(=소득-지출)·부채	2007	0.17945	0.15928
	2008	0.15651	0.14431
	2009	0.17587	0.17320
저축(=소득-지출)·순자산	2007	0.32767	0.31414
	2008	0.26316	0.25802
	2009	0.21243	0.23075
2007년 소득·2008년 소득		-	0.75905
2007년 소득·2009년 소득		-	0.68502
2008년 소득·2009년 소득		-	0.75040

〈표 IV-3〉 저축과 자산·부채의 상관계수(재정패널자료)

	상관계수
저축(=소득-지출) 2007·총자산 2008	0.33595
저축(=소득-지출) 2007·부채 2008	0.16445
저축(=소득-지출) 2007·순자산 2008	0.31450
저축(=소득-지출) 2008·총자산 2008	0.27699
저축(=소득-지출) 2008·부채 2008	0.14431
저축(=소득-지출) 2008·순자산 2008	0.25802
저축(=소득-지출) 2008·총자산 2009	0.21993
저축(=소득-지출) 2008·부채 2009	0.17630
저축(=소득-지출) 2008·순자산 2009	0.19835
저축(=소득-지출) 2009·총자산 2009	0.24890
저축(=소득-지출) 2009·부채 2009	0.17320
저축(=소득-지출) 2009·순자산 2009	0.23075

〈표 IV-4〉 저축과 자산·부채 증감의 상관계수(재정패널자료)

	상관계수
저축(=소득-지출) 2007·총자산 증감 2008	-0.02682
저축(=소득-지출) 2007·부채 증감 2008	0.02898
저축(=소득-지출) 2007·순자산 증감 2008	-0.03631
저축(=소득-지출) 2008·총자산 증감 2008	-0.08363
저축(=소득-지출) 2008·부채 증감 2008	0.05519
저축(=소득-지출) 2008·순자산 증감 2008	-0.10135
저축(=소득-지출) 2008·총자산 증감 2009	-0.02017
저축(=소득-지출) 2008·부채 증감 2009	0.01224
저축(=소득-지출) 2008·순자산 증감 2009	-0.02331
저축(=소득-지출) 2009·총자산 증감 2009	0.02427
저축(=소득-지출) 2009·부채 증감 2009	0.03070
저축(=소득-지출) 2009·순자산 증감 2009	0.01598

2. 인정소득을 고려한 경우의 소득불평등도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한 총소득 지니계수는 0.42 내외의 수준으로 추정된다. 자산 중 일부는 잠재적인 소비능력을 나타낸다. 실질적 의미에서의 소득은 현금 형태의 소득뿐만 아니라 상기 유형의 자산으로부터 잠재적으로 수취할 수 있는 인정소득(imputed rent)도 실질적 의미에서의 소득의 한 종류로 볼 수 있다. 성명재·김현숙(2006)의 연구를 비롯하여 많은 연구에서도 인정소득을 포함한 총체적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불평등도를 추정하고 있다.

본절에서는 주택자산과 부동산자산 등의 유형고정자산에 한정하여 인정소득을 추정하여 합산하였다. 금융자산 등의 경우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또는 자본이득 등의 소득을 획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종류의 소득은 이미 현금 형태의 소득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금융자산 등은 인정소득의 원천에서 제외한다.

본절에서 인정소득을 현금 형태의 가구 총소득에 합산하여 추정된 결과, 소득불평등도는 다소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소득순위를 기준으로 할 때 소득계층별 자산분포의 불평등도가 소득불평등도보다 작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인정소득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이미 임대소득 등을 충분히 창출하고 있는 유형고정자산의 경우에도 금융자산과 마찬가지로 모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그러나 재정패널자료에서는 자산의 가치와 임대소득 발생 여부 등을 연결시킨 정보가 없다. 따라서 개념상 상기 유형의 고정자산도 금융자산과 마찬가지로 취급하여야 하지만 정보 부족으로 인해 인정소득 산정 시 모수에 포함되었다. 그러므로 <표 IV-5>에서 인정소득을 포함하였을 경우의 지니계수 하락 정도는 상기 유형의 유형고정자산을 제외시킨 경우에 비해 다소 과다하게 추정되었을 수 있다.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인정소득은 지역별·업종별·자산유형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런 부분까지 세분화하기에는 현재 이용 가능한 재정패널자료의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인정소득 추정 시 자산 유형별로 적용이자율을 차등화하는 작업은 수행하지 못하였다¹⁶⁾.

〈표 IV-5〉 인정소득을 고려한 지니계수(재정패널자료)

	2007	2008	2009
총소득	0.42340	0.41956	0.42764
총소득 + 인정소득 (4% 적용시)	0.40666	0.41946	0.40965
총소득 + 인정소득 (5% 적용시)	0.40331	0.41594	0.40646
총소득 + 인정소득 (6% 적용시)	0.40022	0.41568	0.40351

주: 인정소득은 주택자산 및 부동산자산을 대상으로 이자율(4%, 5%, 6% 가정)을 적용하여 총소득에 합산하여 지니계수를 추정하였음.

3. 생애소득 경로

본절에서는 재정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각 연령대별로 동일연령대 내에서의 소득백분위수를 추정하고 동일 백분위별로 모든 연령대에 걸쳐 연결하여 각 소득백분위별로 소득경로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는 [그림 IV-2]~[그림 IV-4]와 같다.

본절에서는 생애소득 경로(life-cycle income paths)를 추정함에 있어 코호트 분석이나 패널 기준의 추적조사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다. 이는 재정패널자료가 3개년밖에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코호트 분

16) 재정패널자료에서 거주자의 지역 정보에 대한 정보는 있지만 그들이 보유한 유형고정자산에 위치한 지역에 대한 정보가 없어 인정소득의 지역별 차등화가 용이하지 않다. 이런 사례는 다른 서베이 자료에서도 대동소이하다.

석이나 패널기준의 추적조사를 통한 생애소득 경로의 추정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에 대한 대안적 방법으로, 평균적으로 어떤 연령 집단 내에서의 기대소득순위(expected income ranks)가 시계열적으로 안정적이라는 것을 가정한 상태에서 횡단면적 관점에서 각 연령별 소득경로를 동일한 소득순위로 묶어 연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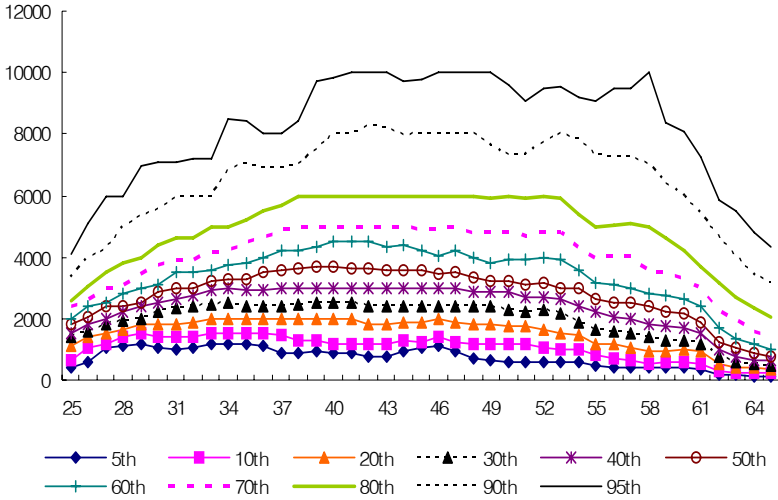
그러한 방법을 이용하여 도출한 생애소득 경로는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 연도마다 다소의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거의 모든 소득백분위수의 연령별 경로의 궤적이 역U자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각 연령대별 소득순위에 의거한 소득분위수별 경로의 특징적인 점은, 연령이 증가하여 중년층(대체로 40~50대 전후)으로 이행할수록 소득백분위곡선이 우상향하였다가 50대를 넘어서면서부터 하락추세로 반전된다는 것이다. 소득백분위수가 높을수록, 즉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즉 p 의 값이 1에 가까워질수록 소득백분위수의 소득경로는 저소득층의 소득경로에 비해 소득확장기가 길어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즉, 고소득층일수록 소득상승기가 소득하강기보다 점점 더 길어진다. 이는 반대로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소득확장기가 짧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고소득층일수록 생애주기에서 소득확장기가 차지하는 기간이 더 길어지고 소득수축기가 짧아지는 반면에, 저소득층일수록 소득확장기는 조기에 마감되고 소득수축기가 점점 더 길어지는 분포적 특성을 나타낸다.

최저소득층(예: 5백분위)과 최고소득층(예: 95백분위)에서는 표본의 수가 적기 때문에 소득분위 경로에 대한 추정곡선의 모습이 다소 불규칙적이다. 5백분위와 95백분위 경로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분위 경로를 보면 처음에는 우상향하다가 일정 연령대 이후부터는 빠르게 하향추세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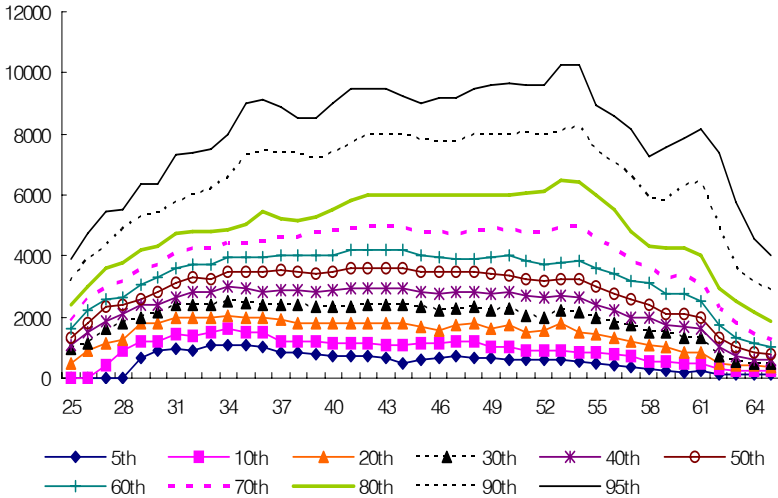
[그림 IV-2] 연령별 총소득 백분위수(재정패널조사자료 2007년 기준)

(단위: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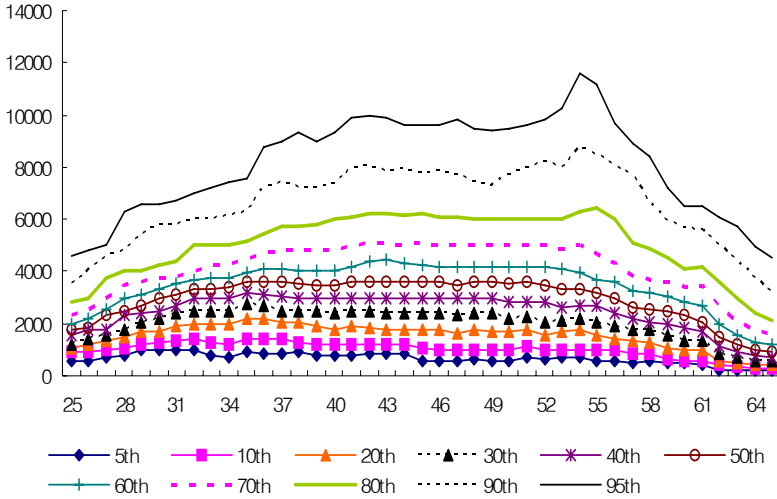
[그림 IV-3] 연령별 총소득 백분위수(재정패널조사자료 2008년 기준)

(단위: 만원)



[그림 IV-4] 연령별 총소득 백분위수(재정패널조사자료 2009년 기준)

(단위: 만원)



4. 3개년 합산 기준의 분포

2007년 소비자물가지수 104.8을 기준으로 2008~2009년의 소비자물가지수(각각 109.7, 112.8)의 상대비를 각각 2008~2009년의 재정패널 자료에 적용하여 2007년 가격으로 할인하고 그 값들을 모두 합산하는 방법으로 각종 소득·소비지출·자산·부채·소득세·소비세 부담의 3개년 합산가치를 추정하였다. 물론 물가수준의 차이에 의한 위와 같은 조정 외에도 시점의 차이에 따른 시간할인 요인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수 있으나 분석대상 기간이 3개년으로 매우 짧다는 점과 논의의 단순화를 고려하여 본절에서는 시간할인 요소는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3개년도 패널자료를 소비자물가지수로 할인하여 2007년 가격으로 합산하여, 합산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순위를 재배열하여 소득분위별 분포를 추정한 결과는 <표 IV-6>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III-2〉에서 보았듯이 가구 총소득의 10분위배수는 연도에 따라 28.3~38.1에 이를 정도로 격차가 크다. 그런데 〈표 IV-6〉에서 보듯이 3개연도 소득을 합산한 경우의 10분위 배수는 2.7 정도로 대폭 상대격차가 축소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설명하였듯이 3개년 동안 평균지향효과로 인해 장기소득의 상대적 불평등도가 연간소득의 경우보다 훨씬 작아짐을 보여준다.

이는 소득계층별 생애소득 경로의 비대칭성, 즉 소득계층별로 소득확장기와 소득수축기의 상대적 길이가 비대칭적으로 나타남으로써 장기소득불평등도가 단기소득불평등도보다 커지게 되는 요인과, 전반적으로 소득이동성이 저하됨에 따라 나타나는 장기소득불평등도의 상승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횡단면에서 나타나는 생애주기의 연령적 차이로 인한 부분이 3개연도 자료를 합산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희석됨에 따른 장기소득의 불평등도 하락 요인이 훨씬 더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IV-7〉에서는 총소득, 소비지출, 총자산, 부채, 순자산의 다섯 가지에 대해 3개년 합산치의 지니계수를 추정하였다. 다섯 가지 변수 모두에서 지니계수가 연간치의 경우보다 훨씬 낮은 수치를 보였다.

〈표 IV-6〉 소비자물가로 할인한 3개년 합산자료의 분포(재정패널자료)

	1분위 (A)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B)	평균	B/A (배)
총소득	8,814	11,530	13,220	14,552	15,360	16,290	17,154	18,086	19,504	24,022	15,849	2.73
소비지출	6,580	7,452	7,783	8,143	8,502	8,324	8,948	9,148	9,829	10,818	8,551	1.64
총자산	77,223	90,526	71,271	59,263	74,837	81,971	84,184	105,021	100,152	142,005	88,656	1.84
부채	21,292	17,743	10,942	7,927	17,195	17,920	13,651	18,381	11,226	23,366	15,988	1.10
순자산	55,931	72,782	60,329	51,335	57,641	64,051	70,533	86,641	88,926	118,639	72,668	2.12
근로소득	3,186	5,617	7,409	10,369	11,793	13,837	14,894	13,851	15,946	16,390	11,329	5.14

〈표 IV-6〉의 계속

	1분위 (A)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B)	평균	B/A (배)
사업소득	4,135	5,097	4,277	3,024	3,254	1,657	1,931	3,531	2,729	5,548	3,516	1.34
부동산임대소득	67	68	297	54	130	404	145	297	51	434	195	6.47
이자배당소득	377	52	64	67	7	35	21	97	220	240	118	0.64
기타소득	798	399	429	797	114	244	131	227	218	1,383	473	1.73
사회보험	235	292	640	221	55	93	26	38	174	23	179	0.10
민간보험	16	5	104	20	6	20	7	44	167	4	39	0.27
주택자산	49,706	53,556	52,014	37,775	47,075	49,534	60,498	72,353	71,484	78,810	57,264	1.59
부동산자산	7,221	21,058	6,615	4,345	4,933	7,343	4,034	6,366	3,624	32,061	9,769	4.44
전세보증금	5,559	6,115	4,482	7,954	13,136	12,248	8,266	12,770	7,618	14,480	9,278	2.61
회원권	0	5	0	0	0	49	0	0	0	96	15	n.a.
기타자산	5,657	1,250	598	56	2,238	20	0	54	125	869	1,089	0.15
금융자산	9,080	8,542	7,561	9,133	7,454	12,777	11,386	13,478	17,301	15,689	11,240	1.73
주택대출금	944	1,800	976	748	1,375	1,371	958	1,761	1,425	2,544	1,392	2.69
학자금대출금	2	102	31	288	52	65	202	619	240	185	178	97.93
금융부채	14,152	10,053	7,791	4,928	10,926	12,514	7,182	10,415	6,614	13,935	9,866	0.98
전세보증금	5,040	5,583	2,072	1,748	4,656	3,789	5,246	5,536	2,474	6,140	4,235	1.22
기타부채	1,154	206	72	216	187	180	64	50	474	562	316	0.49
소득세	100	54	117	250	220	278	356	380	465	589	280	5.89
부가가치세	385	461	489	516	541	532	573	589	639	707	543	1.84
교통세	103	90	61	100	86	76	62	104	95	103	88	1.01
주세	27	24	35	31	23	26	23	28	24	26	27	0.99
담배세	81	40	57	53	67	29	45	41	43	36	49	0.44
소비세	595	615	641	700	717	663	703	762	801	873	707	1.47
소득세+소비세	695	668	758	950	936	941	1,059	1,142	1,266	1,462	987	2.10
근로소득세	18	16	82	206	164	247	342	333	432	448	229	25.19
사업소득세	82	38	35	44	56	31	14	47	32	141	52	1.72

〈표 IV-7〉 소비자물가로 할인한 3개년 합산자료 기준의 지니계수 추정결과(재정패널자료)

	지니계수
총소득	0.14505
소비지출	0.07577
총자산	0.09999
부채	0.01497
순자산	0.11869

5. 소득재분배 효과

본절에서는 세전·세후소득 지니계수의 변화율을 기준으로 조세 및 공적부조(사회보험수혜)에 의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논의한다.

〈표 IV-8〉은 재정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조세 및 공적보험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추정한 결과이다. 〈표 IV-9〉는 소비자물가지수로 할인한 상태에서 2007~2009년의 소득을 합산한 경우의 장기소득에 대한 지니계수 및 각종 세금 및 사회보험수혜 합산·공제 전후의 지니계수와 지니계수 변화율을 나타낸 것이다. 〈표 IV-8〉과 〈표 IV-9〉에서는 지니계수의 변화율이 양(+)이면 소득분배격차가 커졌음을 의미하므로 소득재분배 효과는 음(-)의 값을 가지며, 지니계수 변화율이 음(-)이면 소득분배격차가 축소되었음을 의미하므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양(+)임에 유의하기 바란다.

먼저 소득세의 경우 연간 총소득 기준 지니계수에 비해 소득세 차감 후 소득의 지니계수가 대체로 0.8~1.0% 정도 작게 추정되었다. 성명재(2011)에서 가계동향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근로·종합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2009년 기준으로 3.0%인 점에 비추어볼 때 그 효과가 약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그런데 〈표 III-9〉 등에서 보듯

이 근로·종합소득세 부담이 실제보다 약 3분의 1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재정패널자료에서 소득세 부담의 과소보고 정도가 크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득세 부담률(또는 부담 수준)과 소득재분배 효과 사이에 반드시 선형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정패널자료와 가계동향조사자료를 분석한 경우의 근로·종합소득세의 세부담 수준과 소득재분배 효과가 공히 약 3배 차이를 나타낸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회보험수입(또는 사회보험수혜; 공공부문으로부터의 현금수혜)에 의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2007~2008년이 약 1.2%, 2009년에는 1.5%로 추정되며, 정(+의 소득재분배 효과, 즉 지니계수를 낮추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역시 가계동향조사자료를 분석한 성명재(2011)에 비해 그 크기가 작다.

부가가치세, 교통세, 주세, 담배세 등의 소비세는 모두 부(-)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총소득으로부터 이들 소비세를 모두 차감할 경우 세후소득지니계수는 1.7%(2007년)~2.0%(2008년) 정도 상대소득격차를 확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성명재(2011)에서는 부가가치세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사실상 거의 0에 가깝게 나타난 반면, 본 연구에서는 1~1.2% 정도 상대소득격차를 확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양자 사이에 큰 차이를 보인다. 다만 가계동향조사자료와 달리 재정패널자료의 경우 소비지출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활필수품과 의료·보건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서의 소비비중이 높은 면세부문에 대한 소비지출 정보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그런 차이가 나타났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사회보험의 경우 가구당 평균 수혜액이 61만~71만원(〈표 III-6〉 참조)으로 근로·종합소득세에 비해 20~50% 정도 규모가 크다. 소득재분배 효과도 1.2~1.5%로, 소득세 부담액 대비 사회보험수혜액의 상대비와 비슷하다.

소득세·소비세 부담과 사회보험수혜를 아우른 공공부문에 의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모두 합산하면, 미미하게나마 정(+)의 소득재분배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007년의 경우 재분배 전 소득의 지니계수는 0.42857(총소득-사회보험수혜)이고 재분배 후 소득의 지니계수는 0.42666으로 앞의 경우보다 작다. 재분배를 통해 지니계수가 0.00191지니p 감소하였다. 2008년과 2009년에도 각각 0.0245지니p(0.44241 → 0.44196)와 0.00285지니p(0.43184 → 0.42899)에 이르러 모두 정(+)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내었다.

소득세·소비세 등의 각종 조세나 각종 사회보험료 및 사회보장수혜 등은 대부분 연간소득을 기준으로 각종 부담·수혜규모가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¹⁷⁾. 이들은 대부분 연간소득을 기준으로 재분배 또는 수직적 형평성의 관점에서 제도가 설계된다. 따라서 연단위보다 긴 기간을 대상으로 한 재분배 효과 또는 수직적 형평성 관점에서에서의 제도 설계는 정보 부족으로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소득세 등이 연간단위의 소득을 기준으로 재분배 기능을 수행하지만 장기적으로 어떤 효과가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아래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짚어본다.

위의 제4절에서 살펴보았듯이 3개연도 소득과 각종 세목의 세부담을 합산할 경우 소비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다소 약화되지만 소득세와 사회보험수혜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크게 확대됨을 알 수 있다. [그림 IV-5]에서 보듯이 3개연도 합산소득 및 합산소득세를 기준으로 세전·세후소득의 지니계수 변화율을 추정해 보면, 지니계수 변화율이 약 2.2%로 연간소득에 의한 1.0% 내외 수준을 두 배 이상 상회한다. 사회보험수혜의 경우에도 연간소득을 기준으로 한 경우의 소득재분배 효과(1.2~1.5%)보다 훨씬 큰 3.8%에 이른다. 소비세의 경우에는 연간소득에 비해 3년 장기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부(-)의 소

17) 소비세의 경우에는 연간소득보다는 해당 과세품목에 대한 소비지출을 통해 세부담이 결정되므로 그런 논리에서는 예외적이다.

득재분배 효과(즉, 지니계수 증가율)가 조금 더 커진다. 장기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소득세와 사회보험수혜의 정(+)의 소득재분배 효과 증가폭이 소비세의 부(-)의 소득재분배 효과의 증가폭보다 더 크다. 따라서 연간소득에 비해 장기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소득재분배 효과는 좀 더 커진다. 일례로 2009년을 예로 들면 소득세와 소비세를 통틀어 0.8%p의 상대소득불평등도가 확대되었으나 사회보험수혜를 통해 1.5%p만큼 소득분배격차가 개선되었으므로, 전체적으로는 소득세·소비세·사회보험수혜를 통해 0.7%p만큼 상대소득분배격차가 축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3년 장기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와 소비세를 통해 0.4%p만큼 상대소득격차가 확대되었으나 사회보험수혜를 통해 3.8%p만큼 상대소득격차가 축소되어 전체적으로는 3.4%p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단기소득(연간소득)의 경우에 비해 장기소득을 기준으로 한 경우에 소득세·소비세·사회보험수혜를 통한 소득재분배가 약 4~5배 수준으로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IV-8〉 소득·자산·부채의 지니계수 및 소득세·소비세의 소득재분배 효과(재정패널자료)

(단위: %[변화율])

	변수	지니계수	총소득 지니 대비 변화율
2007	총소득	0.42340	-
	총소득-소득세	0.41956	-0.91
	총소득-부가가치세	0.42764	1.00
	총소득-교통세	0.42379	0.09
	총소득-주세	0.42392	0.12
	총소득-담배세	0.42526	0.44
	총소득-소비세	0.43058	1.70
	총소득-소득세-소비세	0.42666	0.77
	총소득-사회보험수혜	0.42857	-1.22*

<표 IV-8>의 계속

	변수	지니계수	총소득 지니 대비 변화율
2008	총소득	0.43705	-
	총소득-소득세	0.43344	-0.83
	총소득-부가가치세	0.44239	1.22
	총소득-교통세	0.43774	0.16
	총소득-주세	0.43762	0.13
	총소득-담배세	0.43884	0.41
	총소득-소비세	0.44566	1.97
	총소득-소득세-소비세	0.44196	1.12
	총소득-사회보험수입	0.44241	-1.23*
2009	총소득	0.42544	-
	총소득-소득세	0.42113	-1.01
	총소득-부가가치세	0.43031	1.14
	총소득-교통세	0.42616	0.17
	총소득-주세	0.42588	0.10
	총소득-담배세	0.42718	0.41
	총소득-소비세	0.43341	1.87
	총소득-소득세-소비세	0.42899	0.83
	총소득-사회보험수입	0.43184	-1.50*
소비지출	2007	0.25966	
	2008	0.26323	
	2009	0.25454	
총자산	2007	0.33405	
	2008	0.33465	
	2009	0.3292	
총부채	2007	0.33019	
	2008	0.32056	
	2009	0.32815	
순자산	2007	0.3348	
	2008	0.33755	
	2009	0.32941	

주: * 표시한 것은 사회보험 수급 전 소득 대비 수급 후 지니계수의 감소율을 나타낸 것으로서, 정(+)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표시하기 위해 음(-)의 값으로 표현하였음.

〈표 IV-9〉 소득·자산·부채의 지니계수 및 소득세·소비세의 소득재분배 효과(3년치 합산 장기소득 및 세부담 기준, 재정패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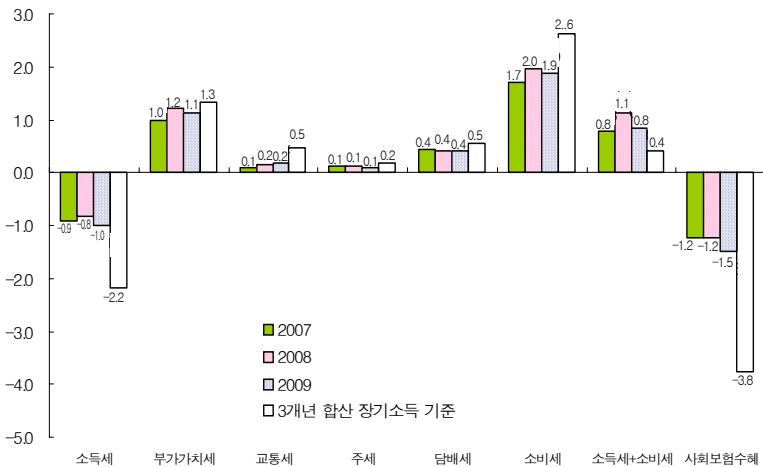
(단위: %[변화율])

	변수	지니계수	총소득 지니 대비 변화율
2007~2009년 합산소득 및 세부담 기준	총소득	0.14505	-
	총소득-소득세	0.14190	-2.17
	총소득-부가가치세	0.14700	1.34
	총소득-교통세	0.14575	0.48
	총소득-주세	0.14533	0.19
	총소득-담배세	0.14585	0.55
	총소득-소비세	0.14887	2.63
	총소득-소득세-소비세	0.14564	0.40
	총소득-사회보험수입	0.15052	-3.77*

주: * 표시한 것은 사회보험 수급전 소득 대비 수급후 지니계수의 감소율을 나타낸 것으로서, 정(+)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표시하기 위해 음(-)의 값으로 표현하였음.

[그림 IV-5] 소득세·소비세·사회보험수혜의 소득재분배 효과 (세전·세후소득 지니계수 변화율)

(단위: %)



6. 모의실험: 소득세를 중심으로

제Ⅲ장 제2절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재정패널자료에 나타난 근로·종합소득세의 세부담(결정세액 기준)은 국세통계연보에 나타난 신고실적의 약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재정패널자료의 표본구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적인 표본추출오차에 의한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피조사자들의 과소보고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소득세 부담의 과소보고는 소득세를 부담하면서도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는 경우와 소득세를 부담한다고 답변한 경우 소득세 부담액을 실제보다 축소하여 보고한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¹⁸⁾.

2007년의 경우 재정패널자료 조사대상 5,014가구 가운데 근로·종합소득세 부담이 양(+)이라고 응답한 가구는 1,678가구(전체의 33.5%)이다. 최근 국세통계연보를 기준으로 할 때 개인 기준의 근로소득세 과세자 비율은 60% 수준,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70% 수준에 육박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재정패널자료의 경우 최소한 보고 누락한 가구가 다수 존재함을 시사한다. 다만 그것만으로 소득세 부담의 과소보고를 모두 설명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근로·종합소득세를 통한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고된 소득세 부담을 실제 부담에 가깝게 복원(gross-up)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보고 누락 가구의 복원과 과소보고 가구의 세부담 조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가운데 전자의 경우에는 재정패널자료가 지닌 정보의 한계로 인해 작업이 여의치 않다. 우리나라 소득세의 특성상 지출과 관련된 소득공제의 항목이 많을 뿐만 아니라 소득세 과세·면세 여부 및 소득공제 수준을 결정하는 데 있어 영향이 매우 크지만, 재정패널자료에는 그런 정보를 뒷받침해 줄

18) 경우에 따라서는 소득세를 실제보다 과다보고한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서베이 자료에서 그런 경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여기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만한 지출 관련 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부담 복원 작업은 불가피하게 후자의 경우에 대해서만 수행하기로 한다.

이런 방법을 통한 소득세 소득재분배 효과에 대한 작업은 일종의 모의실험이라고 할 수 있으며, 소득세 부담의 조정이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표 IV-10>과 [그림 IV-6]에서는 재정패널자료에 보고된 근로·종합소득세 부담액을 가상적으로 2배 또는 3배 수준으로 확대하였을 경우의 소득재분배 효과의 변화를 나타낸다.

연도별로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대한 추정결과가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질적인 측면에서 대동소이하므로 2009년의 경우를 대상으로 설명한다. <표 IV-10>과 [그림 IV-6]에서 보듯이 2009년 현재 재정패널자료에 나타난 근로·종합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세전·세후소득 지니계수의 변화율을 기준으로 할 때, 1.01%로 추정된다. 가상적으로 근로·종합소득세의 부담액을 2배 또는 3배로 복원(조정)하였을 경우 소득재분배 효과는 각각 2.05%와 3.12%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우선적으로 근로·종합소득세의 세부담을 실제와 비슷한 수준으로 복원하였다면 근로·종합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1% 수준이 아니라 그보다 2~3배 수준으로 확대되었을 것이고, 이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소비세 전반에 걸쳐 부(-)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모두 상쇄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양(+)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내었을 것임을 시사한다.

그 밖에 상기의 모의실험 결과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소득세 부담을 증대시킬 경우 조세정책적으로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확대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Sung&Park(2011)에서 지적하였듯이, 우리나라는 조세(대부분의 경우 근로·종합소득세가 대상)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3.0% 수준에 불과한 반면 캐나다,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우리나라의 2~3배 수준에 이를 정도로 크다. 이는

국민소득 대비 또는 총조세수입 대비 소득세의 비중이 선진국보다 훨씬 작다는 데에서 근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표 IV-10〉 모의실험을 통한 근로·종합소득세 부담 조정 시 소득재분배 효과의 변화(재정패널자료 횡단면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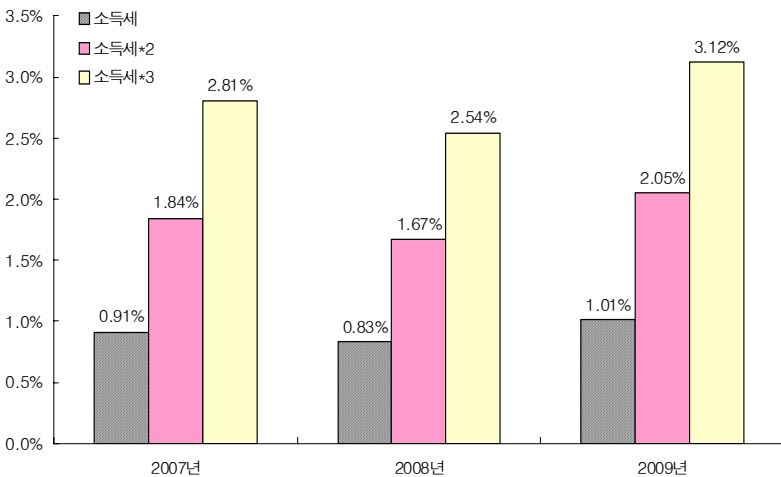
(단위: %)

소득	2007년		2008년		2009년	
	지니	A 대비 변화율	지니	A 대비 변화율	지니	A 대비 변화율
총소득	0.42340	-	0.43705	-	0.42544	-
총소득 - 소득세	0.41956	-0.91%	0.43344	-0.83%	0.42113	-1.01%
총소득 - 소득세*2	0.41560	-1.84%	0.42973	-1.67%	0.41671	-2.05%
총소득 - 소득세*3	0.41152	-2.81%	0.42593	-2.54%	0.41217	-3.12%

주: 소득세는 근로·종합소득세를 지칭함. 소득세*2 또는 소득세*3은 재정패널자료에 보고된 소득세 부담액이 가상적으로 2배 또는 3배 수준으로 조정되었을 경우를 지칭함. 이에 대한 근거는 제Ⅲ장 제2절에서 논의하였듯이 총세수규모로 환산하였을 때 재정패널자료에 보고된 근로·종합소득세가 전체의 약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여 과소보고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데 근거를 두고 있음.

[그림 IV-6] 모의실험을 통한 근로·종합소득세 부담 조정 시 소득재분배 효과의 변화(재정패널자료 횡단면 기준)

(단위: %)



7. 정책시사점

가. 분배론적 관점에서의 시사점

앞의 분석결과를 종합해 볼 때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한 소득불평등도보다는 잠재적인 경제적 능력을 구성하는 자산, 특히 명시적으로 이자소득 등을 발생시키지 않는 주택자산이나 부동산자산 등과 같은 유형고정자산으로부터 암묵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기회비용적 차원의 잠재적 소득흐름, 즉 인정소득(imputed rent)을 고려하면,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값이 축소되어 불평등도가 다소 완화된다. 이는 비록 상대자산분배격차가 상대소득분배격차보다 더 크다고 하더라도 양자의 결정요인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소득순위만을 기준으로 양자를 결합하여 나타낸 결합분포의 결과를 보면, 자산순위로 하였을 경우의 상대자산불평등도에 비해 상대자산불평등도가 크게 축소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생애소득경로에 대한 소득계층별 변화패턴의 비대칭성과, 시계열적 소득이동성의 저하 가능성(Sung, 2011) 등은 그와 반대로 생애소득 불평등도를 가속화하는 효과가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장·단기소득의 불평등도의 대소 관계가 상반되게 나타날 수 있다.

2011년 현재 재정패널자료의 경우 이용 가능한 자료구축기간이 2007~2009년의 3개연도에 불과하지만, 이들 기간을 대상으로 소비자물가를 적용하여 할인하여 합산한 결과, 3개년 소득의 불평등도가 연간소득의 불평등도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위에서 설명한 상반된 요인 가운데 생애소득 경로에 대한 소득계층별 변화패턴의 비대칭성과, 시계열적 소득이동성의 저하 가능성에 따른 장기소득 불평등도의 상승효과보다, 횡단면에서의 생애주기의 연령적 차이로 인한 장기소득의 불평등도 하락효과가 훨씬 더 크게 작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장기소득에 대한 불평등도 연

구가 많지 않다. 1990년대 말 이후 경제위기로 인해 소득불평등도가 급속히 상승하였고, 지속적으로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인구고령화 현상 등으로 인해 연간소득 불평등도가 향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소득불평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방안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위에서 보듯이 장기소득불평등도가 연간소득불평등도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값을 가지는 것을 볼 때, 그리고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의 수립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연간소득 기준의 단기소득불평등도 변화추이뿐만 아니라 생애주기 효과도 함께 고려한 장기소득분배구조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기초연구가 절실하게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조세정책적 관점에서의 시사점

본 항에서는 소득재분배의 관점에서 주로 조세정책의 효과성에 대해 논의하면서 시사점을 찾아본다.

조세정책은 세원에 따라 크게 소득과세, 소비과세, 재산과세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소득과세는 대체로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로 대변된다. 이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개인소득세의 경우만을 논의한다. 소비과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와 주요 개별소비세 세목에 대해 논의한다. 재산과세의 경우는 재정패널자료에 관련 세목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효과 분석을 통한 정책시사점을 논할 수는 없지만 자산·소득의 결합분포 및 부동산 자산으로부터 추정된 인정소득(imputed rent)의 분배효과 등으로부터 재산과세의 형평화 효과를 간접적으로 유추하여 논의한다.

가계동향조사자료 등을 분석한 연구(예: 성명재, 2011)에서와 마찬가지로 (근로·종합)소득세와 사회보험수혜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인다. 비록 재정패널자료에 보고된 소득세나 사회보험수혜의 크기가 실제보다 많이 과소하게 보고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을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 역시 실제보다 과소하게 추정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소득세나 사회보험수혜의 규모를 증가시킬 경우 소득재분배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임은 분명하다. 특히 앞의 제6절에서 근로·종합소득세 부담을 가상적으로 증대했을 때 소득재분배 효과 역시 부담의 증가분과 비슷한 크기로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재정패널에 보고된 근로·종합소득세 부담액이 전체의 약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실제 수준으로 복원하면, 소비세를 통한 부(-)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완전히 상쇄하고도 추가적으로 양(+)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낼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소비세의 역진성에도 불구하고 조세 전체적으로 소득재분배 효과는 양(+)의 값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재정패널에 나타난 소비세 부담의 경우에는 소비지출 총액과 개별 소비세 세목의 주요 과세대상에 대한 지출액으로부터 세부담을 추정하였으며, 과소보고 등으로 인한 세부담의 과소현상은 별로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제5절에서 보았듯이 소비세의 경우에는 약 2% 가까이 상대소득분배격차를 확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가계 동향조사자료를 분석한 기존 연구(예: 성명재, 2011; 성명재·박기백, 2009; Sung & Park, 2011 등)에서 소비세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부(-)의 값을 가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절대값은 거의 0에 가깝다고 한 것과 다소 차이를 보인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를 통한 정(+)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압도하지는 못하는 수준인 것으로 분석된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에서는 부가가치세 부담의 역진성이 뚜렷하다. 상기의 기존 연구에서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사실상 비례적인 모습에 가깝다고 하였으나 재정패널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세부담 구조가 다소 역진적이며, 따라서 부(-)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낸다. 흔히 소비세 부담의 역진성을 들어 증세의 수단으로 소비세는 적절하지 않으며, 복지재원 확충을 위한 추가재원으로 부가가치세는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을 접하게 된다. 그런데 복지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대부

분의 서유럽국가들이 복지재원 확충 등을 위해 부가가치세율을 인상 하였던 것을 보면 위의 주장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아마도 우리나라의 조세부담구조와 조세부담률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선진국에 비해 소득세 비중이 현저하게 낮다는 점에 주목하여 소득세 증세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부가가치세보다 소득세를 지목한 것으로 추측된다. 타당한 주장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볼 때 소득세는 누진세율체계 등으로 인해 자원배분을 왜곡하는 대표적인 세목이기 때문에, 소득세를 과도하게 증세할 경우 부작용이 순작용을 초과하므로 소득세의 증세에도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 더욱이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급격히 진행되는 가운데 소득과세에 지나치게 치중하면, 전반적으로 세원이 빠르게 좁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세의 부담이 장기적으로 적정 수준보다 과중해짐으로써 오히려 국민경제적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재 시점에서 볼 때, 아직 소득세는 실효부담이 낮은 만큼 소득세 부담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소득세 부담이 지나치게 과도해지는 데 따른 부작용이 순작용(예: 소득재분배 효과 등)을 압도하지 않도록 부가가치세 세율인상 등을 통한 재원확충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비록 부가가치세는 세부담이 역진적이지만, 세수규모에 비추어볼 때 부(-)의 소득재분배 효과의 절대치가 크지 않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율은 10%로 부가가치세 시행 국가들 가운데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세율인상 초기에 다소의 물가상승이 우려되기는 하지만 세율인상의 여력이 있으며, 또한 복지 확대에 의한 재분배 효과를 논함에 있어 부가가치세 부담 확대에 의한 부(-)의 효과와 복지지출 확대에 의한 정(+)의 효과를 합산한 총체적 의미에서의 재분배 효과를 보아야만 올바르게 정책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복지재원 확충을 위한 세목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구 선진국에서 복지재원 확충 및 국가 재정구조 개선을 위한 재원 확충을 위해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한 것도 모두 이러

한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

향후 재원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될 때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또는 기타 세목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기존의 과세자에 대한 부담 증가 뿐만 아니라 면세범위의 축소 또는 탈세 축소를 통한 세원발굴 등의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¹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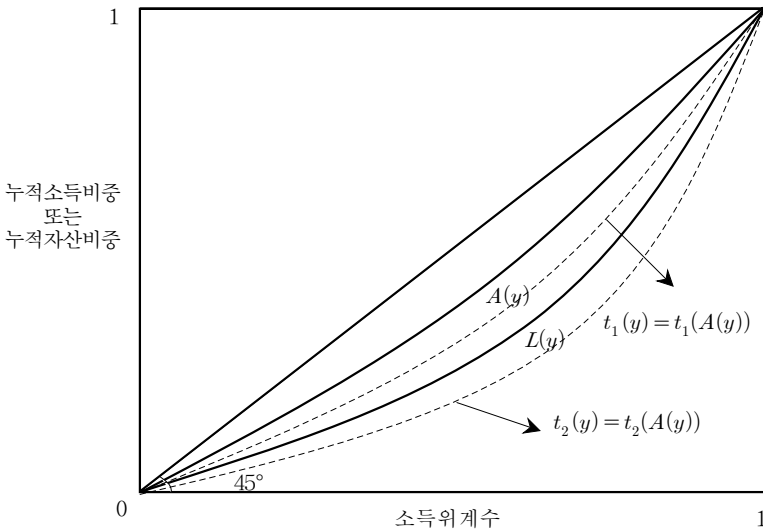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직접세는 정(+)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널리 인식되어 있다. 따라서 소득과세의 경우와 더불어 재산과세도 정(+)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하기 쉽다. 그러나 일반적인 기대·인식과 달리 재산과세는 부(-)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재산세는 누진과세 체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재산세의 부담곡선(일명 재산세 로렌즈 곡선)은 자산 로렌즈 곡선보다 하방에 위치하게 된다. 만약 재산세의 누진도가 작다면 [그림 IV-7]의 t_1 곡선, 반대로 누진도가 매우 높다면 t_2 곡선이 재산세 부담 곡선이 될 것이다. t_1 곡선과 t_2 곡선은 모두 A 곡선보다 하방에 위치하기 때문에 재산세 과세는 정(+)의 자산재분배 효과를 나타낼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소득재분배 효과와 관련해서는 재분배 효과의 부호를 가늠하기 쉽지 않다. 만약 t_2 곡선의 경우처럼 재산세 로렌즈 곡선이 소득 로렌즈 곡선 $L(y)$ 보다 하방에 위치한다면 정(+)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t_1 의 경우처럼 소득 로렌즈 곡선보다 상방에 위치하게 된다면 부(-)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다. 따라서 재산세의 경우 소득재분배 효과의 부호는 자산 로렌즈 곡선과 소득 로렌즈 곡선 사이의 거리(즉, 소득·자산 결합분포에서의 순위 교차 정도)와 자산 로렌즈 곡선과 재산세 로렌즈 곡선 사이의 거리(즉, 재산세의 누진구조)에 의존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재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대한 검증은 실증분석을 통해 밝혀져야 하는 문제임을 알 수 있다.

19)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세의 탈세는 부가가치세의 탈세와 긴밀한 관계가 있다.

다만 <표 III-2>에서 보듯이 총소득과 자산의 소득계층별 상대비(10분위 배율)를 비교해보면, 재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의 부호가 음(-)의 값, 즉 부(-)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가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즉, 총소득의 경우에는 10분위 배율이 28.2~38.1로 상당히 큰 반면 소득순위를 기준으로 재배열한 총자산의 10분위 배율도 6.0~6.5(순자산의 경우에는 6.1~6.4)로 양자 간의 격차가 상당히 크다. 이는 [그림 IV-7]에서 보듯이 소득순위 기준의 자산 로렌즈 곡선 $A(y)$ 와 소득 로렌즈 곡선 $L(y)$ 사이의 거리가 상당히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재산세 로렌즈 곡선도 $L(y)$ 의 상방에 위치한 가능성이 그만큼 더 크다. 만약 재산세 과세체계의 누진도를 매우 크게 한다면 재산세 로렌즈 곡선이 소득 로렌즈 곡선 아래에 위치할 수도 있지만 재분배적 관점에서 재산과세 제도의 누진도를 높이는 데에도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재산세 로렌즈 곡선의 위치가 $t_2(y)$ 보다는 $t_1(y)$ 의 위치를 접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림 IV-7] 소득기준 소득·자산 로렌즈 곡선 및 재산세부담 집중곡선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재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의 부호는 선형적으로 예단하기 매우 어려우며 사후적 관점에서 실증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1~3차연도 재정패널자료에는 재산세와 관련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재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대해 직접 추정·분석하기 곤란하므로 아래에서는 기존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재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해 본다.

재산과세의 경우 일반적인 인식은 소득재분배 효과가 상당히 클 것이라는 것이다.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본 바로는 재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거의 기대하기 어렵거나 있더라도 매우 미미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연구결과이다. 재정패널자료의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정보가 없기 때문에 재산과세에 대한 시사점을 논하기에 앞서 자산·소득의 결합분포의 특성에 대해 먼저 논의한다.

성명재·김현숙(2006)의 연구에서는 소득·자산의 결합분포를 볼 때, 양자 사이에 정(+)의 상관관계가 있지만, 그 정도는 매우 미약하며, 소득계층별 부동산, 특히 토지자산의 분포는 매우 불규칙적으로 일정한 패턴 없이 등락을 반복하는 형태를 나타내었다. 이에 반해 본 연구에서는 양자 사이의 상관관계도 상대적으로 크게 추정되었다. 뿐만 아니라 소득계층별 주택자산과 부동산자산의 분포 모습도,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성명재·김현숙(2006)에서 관찰되었던 불규칙성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재정패널자료에서는 소득과 자산을 공통적으로 조사하였다. 반면에 성명재·김현숙(2006)에서는 재산세·종합토지세의 과세자료와 가계동향조사자료를 서로 결합하는 과정에서 일부의 경우지만 무작위 결합(random matching)이 나타나고 그로 인해 편의(bias)가 발생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만약 무작위 결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득과 자산 사이에 일정한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무작위성(randomness)만 남기 때문에 양자 간의 상관관계가 사실상 사라지고, 따라서 재산과세의 소득재분배 효과 또는 소득과세의

자산재분배 효과 등은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만약 그런 차이가 존재한다면 성명재·김현숙(2006)에서는 재산과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다소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만약 그런 결과가 일부지만 무작위 결합에 의한 편의로 인해 발생한 것일 뿐, 본 연구에서처럼 무작위 결합의 가능성이 없는 재정패널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 보듯이 소득과 자산 사이에 유의미한 정도로 정(+)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면, 재산과세를 통해서도 일정 부분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다만 불행히도 재정패널자료에서는 재산세 관련 정보가 원천적으로 누락되어 있고, 또한 재산세 부담을 추정할 수 있을 만한 기초정보도 부족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그러한 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아울러 전체 세수규모를 놓고 볼 때, 재산세의 비중·규모가 작다는 점은, 재산세 분포 자체의 누진성 여부에 관계없이 재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미미하게 만드는 결정적 요인이 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산과 소득 사이에 정(+)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정(+)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정(+)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소득계층별 소득의 증가속도보다 세부담의 증가속도가 더 높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표 III-2> 등을 비롯하여 제III장의 여러 표에 나타난 재정패널자료 분석결과에서 보듯이 총자산이나 순자산은 물론이고 세부 자산항목별 분포 추정 결과를 볼 때 상대분포를 나타내는 10분위 배수의 값이 소득보다 자산이 작은 값을 가진다. 이는 자산과 소득 사이에 정(+)의 상관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소득격차의 변화를 나타내는 소득재분배 효과는 부(-)의 값을 가질 수도 있음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다만 소득세보다는 덜하지만 우리나라의 재산세 구조 역시 누진세율 체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자산분포의 10분위 배수(2007~2009년 총자산 기준 6.0~6.5)가 소득(2007~2009년의 경우 28.2~38.1)보다 작은 것을 어느 정도는 보정(cover)해준다(<표 III-2> 참조). 그러나 10분위배수의 차이

를 매우면서도 정(+)¹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만큼 누진적이지는 않다. 따라서 비록 재산세의 과세를 통해 소득재분배 효과로도 모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재산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앞의 제2절에서 주택 및 부동산자산 등으로부터의 인정소득을 합산하는 경우를 역(逆)으로 되돌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인정소득을 합산하면 상대소득격차가 축소된다는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와 반대로 재산세를 부과하면 상대소득격차는 오히려 소폭이나마 확대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저소득층 가운데에서 고자산가의 비중이 절대적으로는 작지만 상대적으로는 큰 편이라는 점과도 무관하지 않다.

그런데 재산세 과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의 크기는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작을 것으로 추측된다. 인정소득 합산에 따른 소득재분배 효과를 통해 간접적으로 그 효과를 추정해 보자. <표 IV-5>에서 보듯이 인정소득을 주택·부동산자산 가치의 4~6% 정도로 보았을 때 인정소득의 합산에 따른 지니계수 감소율은 2009년의 경우 4.2~5.6% 정도이다. 만약 재산세의 실효세부담률이 최대 해당 자산가치의 1%에 훨씬 못 미친다고 보면, 재산세 과세를 통한 소득재분배의 절대값은, 인정소득의 소득재분배 효과의 100분의 1보다 작을 것으로 보이며, 다만 부호는 인정소득과 반대일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곧 재산세 과세를 통한 소득재분배는 부(-)의 효과를 가진다고 볼 수 있지만, 절대값이 거의 0에 가까운 만큼 사실상 0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이는 가계동향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재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한 기존 연구결과에서도 재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거의 없거나 미미하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그러므로 재정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소득재분배의 관점에서 조세정책적 시사점을 요약하면, 소득과세를 강화하면 정(+)¹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강화할 수 있으며, 소비과세의 경우에는 부(-)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예상되나 그 정도는 크지 않고, 재산과세의 경우에는, 자산과 소득 사이에 정(+)¹의 상관관계가 있음에

IV. 상관분석·소득재분배 효과 및 정책시사점 137

도 불구하고, 소득계층별 자산분포의 상대격차가 상대소득격차보다 작기 때문에 부(-)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으나 절대값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다고 할 수 있다.

V. 요약 및 맺음말

본 연구에서는 재정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소득·자산·부채 및 소득세·소비세와 사회보험수혜 등의 결합분포를 추정하고, 분배적 특성과 소득분배적 관점에서 소득재분배 효과를 검토하였다.

소득 결정요인과 자산·부채의 결정요인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각각의 분포 불평등도보다, 소득 기준의 결합분포, 즉 소득순위를 기준으로 분포를 재배열하여 결합분포로 나타내었을 경우 자산과 부채의 분포 불평등도가 크게 축소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산으로부터의 인정소득(imputed rent)의 흐름을 감안하여 잠재적 소득의 불평등도를 추정한 결과, 상대소득불평등도가 다소 축소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근로·종합소득세와 사회보험수혜는 공히 상당히 큰 정(+)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비세의 경우에는 세부담 분포가 역진적이며 따라서 부(-)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소비세의 세수규모에 비해 그 정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재산세의 경우에는 정보의 제약으로 인해 분포와 소득재분배 효과 등을 명시적으로 분석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소득·자산 사이의 정(+)의 상관관계를 감안할 때 일견 재산과세의 경우도 정(+)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낼 잠재적인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가계동향조사자료에 보고된 재산과세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약하다는 성명재(2011)의 연구결과와 성명재·김현숙(2006)의 연구결과 등을 종합해볼 때, 재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기존 연구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요망된다. 그런데 재정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소득-자산의 결합분포를 보면 소득과 자산 사이에 정(+)의 상관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세는 부(-)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왜냐하면 자산 기준으로는 재산세 역시 누진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산세를 부과하면 정(+)의 자산재분배 효과를 나타낼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순위의 기준이 자산이 아니라 소득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재산세가 반드시 정(+)의 소득재분배 효과도 보장해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소득과 자산 사이에 정(+)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은, 소득과 재산세 부담 사이에 정(+)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시사하지만, 그것 자체가 소득순위를 기준으로 할 때 재산세 부담구조의 누진성을 보장해 주지는 않기 때문이다. 즉, 소득에 대해 재산세 부담구조가 누진적이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에서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소득증가율보다 재산세증가율이 더 높아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자산의 10분위배수가 소득 10분위배수의 5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재산세 부담이 누진적일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 밖에 우리나라의 경우 재산과세의 세수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은 재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의 절대값을 작게 하는 요인이 된다. 그러므로 재산세를 통한 총체적인 소득재분배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소득·자산·부채 및 주요 세목의 결합분포 분석을 통해 분배구조와 정부 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으나 자료 부족으로 인해 재산세 등의 분포는 직접 추정하지 못하였으며, 재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소득-자산의 결합분포 등으로부터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재정패널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나 자료 자체가 3개연도밖에 축적되어 있지 않아 생애소득 분포와 생애소득불평등도를 분석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현재 이용가능한 재정패널자료 3개년도의 합산자료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장기소득의 불평등도가 연간소득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낮은 값을 시현하였다. 생애소득 경로의 소득계층별 비대칭성과 소득이동성의 저하 등으로 인해 장기소득의 불평등도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장기소득의 경우 연간소득에 비해 현저하게 소득불평등도가 낮아진 것은 다행스럽다. 그러나 비록 연간소득불평등도에 비해 장기소득불평등도가 현저하게 작은 값을 가지더라도 생애소득 경로의 소득계층별 비대칭성과 소득이동성의 저하 등으로 인해 장기소득불평등도도 장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그런 경우 소득재분배를 위한 재정소요가 증대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도 연간소득 분배구조뿐만 아니라 장기소득 분배구조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추적조사가 요망된다.

인정소득과 소득이동성의 하락 현상과 소득계층별 생애소득 경로의 비대칭성은 상호간에 횡단면 소득불평등도와 생애소득 불평등도 사이의 상반된 작용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지만 이를 분석할 수 있을 만큼 재정패널자료가 충분히 구축되어 있지 않다. 또한 그러한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 등은, 본 연구에서 수행하지 못한 분석의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향후에 재정패널자료가 더 축적되고 분석에 필요한 정보가 확충되어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

우리나라의 조세체계의 특성상 조세는 현금으로만 부담하고, 세금은 대부분 현금유동성을 기초로 납부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세금을 통한 자산분포의 재분배 효과에 대해서는 분석할 수 없었다. 향후에 재산세 관련 정보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패널자료가 확충되어 면밀하게 분석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석훈, 『우리나라 가구의 금융자산 보유실태 종합분석』, 1996 가구소
비실태조사 종합분석사업 보고서 (5-1), 통계청, 1998.
- 김경아·강성호, 「우리나라 중·고령자가구의 자산 및 소득불평등도
분해에 관한 연구」, 『재정학연구』, 제1권, 제3호(통권 제58호),
2008, pp. 21~52.
- 김우영·김현정, 「가계부채의 결정요인 분석」, 『국제경제연구』, 제16
권 제1호, 2010, pp. 39~78.
- 김정호, 「가계부채규모의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사회과학논총』, 제
19집 제2호, 2004, pp. 1~16.
- 김종면·성명재, 「소득분포의 특성을 사용한 세대별 연령-소득 곡선
(Cohort-Income Profile)의 도출」, 『한국경제의 분석』, 제9권 제
3호, 한국경제의 분석패널·한국금융연구원, 2003.
- 김진영, 「대우패널 자료를 통해 본 1990년대 가계의 자산구성 변화」,
『재정논집』, 제17권 제1호,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02, pp.
47~74.
- 김진영·박창균, 『가계의 자산구성 변화와 조세정책에 대한 함의』, 연
구보고서 01-08, 한국조세연구원, 2001.
- 김학주, 「가구주의 취업형태에 따른 가계의 부채부담 연구」, 『사회복
지정책』, 제20권, 2004, pp. 109~131.
- _____, 「소득계층별 가계의 부채부담 연구」, 『사회보장연구』, 제21
권, 제1호, 2005, pp. 119~147.
- 김현숙, 「우리나라 공동주택 거주가구의 소득과 주택자산 소유분포 비
교」, 『재정포럼』, 2005년 8월호, 한국조세연구원, 2005.

- 남상섭, 「한국 가계자산의 분배와 불평등 요인분해」, 『경제연구』, 제27권, 제2호, 2009, pp. 59~86.
- 남상호, 「우리나라 가구의 자산분포 현황과 시사점」, 2007 경제학공동 학술대회 재정학회 분과 발표자료, 2007.
- _____, 「가계자산 분포와 불평등도의 요인별 분해 노동패널 자료를 중심으로」, 『제9차 한국노동패널학술대회발표 자료집』, 2008, pp. 527~556.
- 노영훈, 『토지세 강화정책의 경제적 효과: 종합토지세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04-11, 한국조세연구원, 2004.
- _____, 「다주택보유 재산세 강화에 따른 세부담 측정과 예상효과 분석」, 『재정금융연구』, 제2권 제1호, 1995, pp. 27~57.
- 노영훈·김현숙, 『소득과 주택자산 소유분포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05-06, 한국조세연구원, 2005.
- 문숙재·정순희·여윤경, 「가계순자산 규모의 결정요인」, 『소비자학 연구』, 제13권, 제3호, 한국소비자학회, 2002, pp. 169~188.
- 박기백·성명재·김종면·김진, 『사회분야 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현물급여 및 간접세 포함』, 연구보고서 06-01, 한국조세연구원, 2006.
- 성명재, 「소비세에 대한 도·농별 소득계층별 세부담 및 역진도 실태 분석에 관한 연구」, 『재정논집』, 제8집, 1993, pp. 61~91.
- _____, 「우리나라 도시가구의 계층별·연령별 소비세 부담 분포에 관한 연구」, 『재정금융연구』, 제3권, 제1호, 1996, pp. 1~45.
- _____, 『특별소비세 부담 분포 추정 및 과세체계 정비방안』, 정책보고서 99-04, 한국조세연구원, 1999.
- _____, 『외환위기 발생후 2년간의 소득·소비패턴 및 개인세부담의 변화 분석』, 연구보고서 00-02, 한국조세연구원, 2000.
- _____, 「세법개정효과 및 소득·소비패턴 변화에 따른 세부담 효과의 분리 추정에 관한 연구」, 『재정연구』, 제7권, 제2호, 2001(A),

- pp. 1~48.
- _____, 『소득분배 변화추이와 결정요인 분석: 도시가구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01-01, 한국조세연구원, 2001(B).
- _____, 『우리나라 빈곤율의 변화추이와 정책방향: 소득분포 특성 고찰과 가상패널 구축을 통해 살펴본 빈곤추이와 정책시사점』, 연구보고서 05-01, 한국조세연구원, 2005.
- _____, 「소득계층별 조세·이전지출 분포와 소득재분배」, 『응용경제』, 제8권, 제2호, 2006, pp. 5~45.
- _____, 「근로·종합소득세의 세제지원 효과 연구」, 『세무학연구』, 제24권, 제4호, 2007, pp. 295~336.
- _____, 「우리나라 소득분배 구조 변천 및 관련 조세·재정정책 효과 분석」, 미발표자료, 한국조세연구원, 2011.
- 성명재·김현숙, 『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조세정책방향: 소득·부동산 자산 결합분포 및 관련 세부담 분포분석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06-02, 한국조세연구원, 2006.
- 성명재·박기백, 「조세·재정지출의 재분배 효과: 소비세 및 현물급여 포함」, 『재정학연구』, 제1권, 제1호 (통산 제56호), 2008, pp. 63~94.
- _____. _____, 「인구구조 변화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경제학연구』, 제57집, 제4호, 2009, pp. 5~37.
- 성명재·송헌재·전병목, 『조세·재정모의실험모형: KIPFSIM10 모형의 구축』, 연구보고서, 한국조세연구원, 2010.
- 성명재·이명현, 『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추정에 관한 연구: 지니계수의 국제비교를 중심으로』, 용역보고서, 한국조세연구원, 2001.
- 성명재·전영준, 『경제위기 1년간 소득세·소비세 부담분포의 변화와 조세정책방향』, 연구보고서 99-03, 한국조세연구원, 1999.
- _____. _____, 『소득세 공제체계 개편의 형평·과표양성화 효과분석』, 연구보고서 09-02, 한국조세연구원, 2009.

- 성영애, 「가계부채의 용도별 보유현황 및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제21권, 제3호, 2010, pp. 29~52.
- 성영애·양세정, 「가계의 부채부담과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 가정관리학회지』, 제13권, 제1호, 한국가정관리학회, 1995, pp. 207~219.
- 양세정, 「맞벌이 가구의 부채보유행태에 관한 분석」, 『사회과학연구』, 제13호, 상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00, pp. 1~18.
- 양세정·이영호, 「가계저축규모의 결정요인」, 『대한가정학회지』, 제34권, 제2호, 대한가정학회, 1996, pp. 201~215.
- 여윤경·주소현, 「가계의 순자산과 자산배분에 관한 연구」, 『산업경제연구』, 제22권, 제5호, 2009, pp. 2109~2129.
- 이성림, 「과소비·부채가계의 가계경제구조 분석: 과소비·부채가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제16권, 제1호, 2005, pp. 73~93.
- 이정우·이성림, 「한국 가계자산 불평등의 최근 추이」, 『노동정책연구』, 창간호, 2001, pp. 39~51.
- 이항용, 「주택가격 변동과 부의 효과」, 『금융경제연구』, 제181호, 2004.
- 임경묵, 『한국가계금융자산 구성의 결정요인 분석: 주식보유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 2002.
- 전승훈·임병인, 「2000년 이후 가계의 자산 및 부채보유 실태의 변화 분석」, 『재정학연구』, 제1권 제2호, 2008, pp. 133~162.
- _____. 『가계자산의 보유실태 및 가계 부실화 가능성의 변화 분석』, 한국재정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 2011.
- 주학중, 「가계자산분포와 소득재분배」, 『한국개발연구』, 1980, pp. 48~68.
- Avery et al, "Measuring Wealth with Survey Data: An Evaluation of the 1983 Survey of Consumer Finances," *Review of Income*

- and Wealth*, Series 34, 1988, No. 4.
- Chawly, "The Distribution of Wealth in Canada and the United States," *Perspectives of Labour and Income*, Vol. 2, No. 1, Article No. 3, 1990.
- Domeij and Klein, "Inequality of Income and Wealth in Swede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Studies*, Stockholm University, 1998.
- Fields, G. and E. A. Ok, "The Meaning and Measurement of Income Mobility," *Journal of Economic Theory*, Vol. 71, 1996, pp. 349~377.
- _____ and _____, "Measuring Movement of Incomes," *Economica*, Vol. 66, No. 264, 1999, pp. 455~471.
- Harris, Tim, "The Effects of Taxes and Benefits on Household Income, 1998-99," *Economic Trends* No. 557, (UK)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April 2000, pp. 45~83.
- Hur, Seok-kyun and Taeyoon Sung, "The Impact of Lifting Liquidity Constraints on the Distributions of Consumption, Assets, and Debts," *KDI Policy Study 2003-03*, Korea Development Institute, 2003.
- Jenkins, "How Much Inequality Can We Explain? A Methodology and An Application to the United States," *The Economic Journal*, No. 105, 1995, pp. 421~430.
- Jappelli, "The Age-Wealth Profile and the Life-Cycle Hypothesis: a Cohort Analysis with a Time Series of Cross-Sections of Italian Households," *Review of Income and Wealth*, 1999.
- Jones Jr., Arthur F. and Daniel H. Weinberg, "The Changing Shape of the Nation's Income Distribution 1947-1998," *Economics and Statistics Administration, the Census Bureau*, U.S. Department

of Commerce, June 2000.

Lakin, Caroline, "The Effects of Taxes and Benefits on Household Income, 1999-2000," *Economic Trends* No. 569, (UK)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April 2001, pp. 35~79.

_____, "The Effects of Taxes and Benefits on Household Income, 2000-2001," (UK)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02.

_____, "The Effects of Taxes and Benefits on Household Income, 2001-2002," (UK)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03.

Lambert, Peter J., *True Distribution and Redistribution of Income: A Mathematical Analysis*, Basil Blackwell, 1989.

Lars Bager-Sjogren and N. Anders Klevmarken, "Inequality and Mobility of Wealth in Sweden 1983/84-1992/93," *Review of Income and Wealth*, Series 44, Number 4, December 1998.

Milanovic, Branko, "True World Income Distribution, 1988 and 1993: First Calculation Based on Household Surveys Alone," World Bank, 1999.

Shorrocks, A. F. "The Measurement of Mobility," *Econometrica*, Vol. 46, No. 5, 1978, pp. 1013-1024.

Siddiq and Beach, "Characterising Life-cycle Wealth Distribution using Statistical Inference and Dominance Criteria," *Empirical Economics*, Vol. 20, No. 4, 1995, pp. 551~575.

Sung, Myung Jae, "Measurement of Income Mobility and Its Structural Changes in Korea," unpublished manuscript, 2011.

Sung, Myung Jae, Byung Mok Jeon, and Byung-hill Jun, "Distributional Effects of Taxes and Benefits in Korea," *Korean Journal of Policy Studies*, Vol. 24, No. 1, 2009, pp. 59~80.

Sung, Myung Jae and Ki-baeg Park, "Effects of Taxes and Benefits

on Income Distribution in Korea,” *Review of Income and Wealth*, forthcoming, 2011.

Statistics Canada, *Income in Canada*, 1998.

Statistics New Zealand, *New Zealand Now Incomes*, 1999.

US Census Bureau, *Money Income in the United States*, 각 연도.

부 록

〈부표 1〉 가계조사자료를 이용한 소득분위별 부가가치세 ·
총소득 · 소비지출 분포(2009년 가계동향조사자료 기준)

(단위: 원, %)

분위	부가가치세	소비지출	총소득	소비지출 대비 비율	총소득 대비 비율
1분위	254,899	5,617,554	8,961,017	4.54	2.84
2분위	511,219	9,963,768	15,990,101	5.13	3.20
3분위	697,950	13,092,662	21,597,335	5.33	3.23
4분위	983,309	16,832,907	27,116,923	5.84	3.63
5분위	1,194,410	19,864,738	32,752,146	6.01	3.65
6분위	1,428,818	23,413,546	38,411,550	6.10	3.72
7분위	1,615,516	26,043,708	44,738,938	6.20	3.61
8분위	1,848,222	29,496,458	52,345,009	6.27	3.53
9분위	2,272,486	35,566,396	62,566,782	6.39	3.63
10분위	2,994,726	45,267,824	91,699,899	6.62	3.27
평균	1,380,156	22,515,956	39,617,970	6.13	3.48

〈부표 2〉 가계조사자료를 이용한 주요 소비지출 항목별 부가가치세 및
지출 분포(2009년 가계동향조사자료 기준)

(단위: 원, %)

	세부담	지출	총소득 대비 비율		소비지출 대비 비율	
			세부담	지출	세부담	지출
식음료품 및 비주류음료	89,740	3,199,723	0.23	8.08	0.40	14.21
주류 및 담배	44,508	289,890	0.11	0.73	0.20	1.29
의류 및 신발	124,744	1,372,183	0.31	3.46	0.55	6.09
주거 및 수도광열	134,587	2,370,041	0.34	5.98	0.60	10.53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61,340	786,715	0.15	1.99	0.27	3.49
보건	0	1,534,257	0.00	3.87	0.00	6.81
교통	219,208	2,798,074	0.55	7.06	0.97	12.43
통신	124,962	1,376,439	0.32	3.47	0.56	6.11
오락 · 문화	73,963	1,168,080	0.19	2.95	0.33	5.19
교육	167,567	2,804,430	0.42	7.08	0.74	12.46
음식 · 숙박	261,895	2,880,841	0.66	7.27	1.16	12.80
기타 상품 및 서비스	95,690	1,933,642	0.24	4.88	0.43	8.59
계	1,398,204	22,514,315	3.53	56.83	6.21	100

〈부표 3〉 가계조사자료를 이용한 개별소비세 주요 과세대상별 세부담 및 지출분포(2009년 가계동향조사자료 기준)

(단위: 원, %)

	세부담	지출	총소득 대비 비율		소비지출 대비 비율	
			세부담	지출	세부담	지출
등유	4,982	66,090	0.01	0.17	0.02	0.29
도시가스	43,574	377,642	0.11	0.95	0.19	1.68
LPG(프로판)	372	41,363	0.00	0.10	0.00	0.18
LPG(부탄)	40,461	141,133	0.10	0.36	0.18	0.63
승용자동차	46,293	697,607	0.12	1.76	0.21	3.10
고급가구	0	100,421	0.00	0.25	0.00	0.45
고급시계, 사진기, 보석류	399	53,020	0.00	0.13	0.00	0.24
계	136,081	1,477,276	0.34	3.73	0.60	6.56

〈부표 4〉 가계조사자료를 이용한 주세 주요 과세대상별 세부담 및 지출분포(2009년 가계동향조사자료 기준)

(단위: 원, %)

	세부담	지출	총소득 대비 비율		소비지출 대비 비율	
			세부담	지출	세부담	지출
소주	10,095	28,711	0.03	0.07	0.04	0.13
맥주	13,736	39,066	0.03	0.10	0.06	0.17
위스키 등	1,819	5,173	0.00	0.01	0.01	0.02
기타	2,500	17,239	0.01	0.04	0.01	0.08
계	28,150	90,189	0.07	0.23	0.13	0.40

〈부표 5〉 가계조사자료를 이용한 교통세 주요 과세대상별 세부담 및 지출분포(2009년 가계동향조사자료 기준)

(단위: 원, %)

	세부담	지출	총소득 대비 비율		소비지출 대비 비율	
			세부담	지출	세부담	지출
휘발유	72,223	679,816	0.18	1.72	0.32	3.02
경유	27,096	320,980	0.07	0.81	0.12	1.43
계	99,319	1,000,796	0.25	2.53	0.44	4.45

<국문요약>

소득·자산·부채 결합분포 분석 및 정책적 함의 연구

성명재

본 연구는 재정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소득·자산·부채 및 소득세·소비세와 사회보험수혜 등의 결합분포를 분석하고, 각종 조세 및 재정지출 정책의 장·단기효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재분배의 관점에서 정부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와 함께 정책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자산이나 부채의 경우 분포 불평등도가 소득보다 월등히 높다. 다만 소득 순위를 기준으로 해당 분포를 재배열하여 소득·소비·자산 등의 결합분포를 추정하면 자산과 부채의 분포 불평등도가 크게 축소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런 차이는 소득 결정요인과 자산·부채의 결정요인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이다. 자산으로부터의 인정소득(imputed rent)을 감안하여 잠재적 소득불평등도를 추정한 결과, 불평등도가 다소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종합소득세와 사회보험수혜는 공히 상당히 큰 정(+)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에 소비세는, 절대값은 크지 않지만, 부(-)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재산세의 경우에는 소득재분배 효과를 명시적으로 분석하지는 못하였으나 소득·자산 사이의 결합분포 구조와 기존 연구결과를 참조할 때, 일반적 인식과 달리, 부(-)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낼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재정패널자료 3개연도의 합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기소득의 불평등도가 연간소득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낮은 값을 시현하는 것으로 추정

되었다. 생애소득 경로의 소득계층별 비대칭성과 소득이동성의 저하 등으로 인해 장기소득불평등도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있지만, 장기소득의 불평등도는 연간소득보다 현저하게 낮게 추정되었다. 이는 장기소득의 경우 연령 차이에 의한 불평등도가 대폭 희석되기 때문이다. 연간소득보다 장기소득의 불평등도가 현저하게 작은 값을 가지더라도 소득계층별 생애소득 경로의 비대칭성과 소득이동성의 저하 등으로 인해 향후 장기소득 불평등도가 상승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 경우 소득재분배를 위한 재정소요의 증대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속적인 추적조사가 요망된다.

<Abstract>

Joint Distributions of Income, Assets, and Debt and Their Policy Implications

Myung Jae Sung

This report estimates the joint distributions of income, consumption and assets using the National Survey of Taxes and Benefits (NaSTaB) compiled for the years 2007 through 2009, and analyzes short- and long-term effects of taxes and benefits. Distributional inequalities of assets and debts are much larger than that of income, although their inequalities shrink significantly if their orders are rearranged in line with that of income. This comes from the differences in the determinants of income versus assets/debts. It turns out that inclusion of imputed rents for assets reduces overall income inequality slightly. Personal income tax for wage and salary income and business income turns out to have positive income redistributive effect. On the contrary, consumption taxes have negative redistributive effects, although their absolute sizes are quite small in general. Due to the lack of necessary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NaSTaB, the distributional effect of property tax is not explicitly analyzed. However, it may not have negative effect, according to the findings of past studies. The relative inequality of long-run income derived by summing up incomes of three years is estimated to be much lower than that of annual income; the long-run income is less dispersed than the short-run income mainly due to the dilution of short-run income inequality caused by age differences or different

location in a life-cycle. However, because there exist the asymmetry of life-cycle income paths for each income percentile and, also, because the income mobility declines over time, it is quite possible for the relative inequality of long-run income to increase in the very long run.

〈著者略歷〉

성명재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국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경제학 석·박사

현,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자료 수집 및 정리

박소희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원

研究報告書 11-03

소득·자산·부채 결합분포 분석 및 정책적 함의 연구

2011년 12월 23일 인쇄

2011년 12월 30일 발행

저 자 성명재

발행인 조원동

발행처 한국조세연구원

1338-7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9-6

전화 : 2186-2114(대), www.kipf.re.kr

등록 1993년 7월 15일 제21-466호

조판및 일지사

인쇄

© 한국조세연구원 2011

ISBN 978-89-8191-552-0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값 6,000원